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484-08

ISSN 1975-3446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 I

2016년 4월 ~ 2016년 9월

# 상 표 판 례

( 통 권 제45호 )

2016. 12.



**특허심판원**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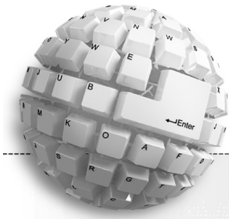
특허심판원

## >>> 일러두기



1.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6년 4월 ~ 2016년 9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 의하여 판례번호 중 “후”자는 특허상고사건을, “허”자는 특허법원사건을, 심판사무취급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당”자는 특허심판원사건 중 당사자사건을, “원”자는 특허심판원사건 중 거절결정불복사건을 표시한 것입니다.
4. 아무쪼록 본 책자가 심판업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CONTENTS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I. 거절결정불복 · 1

1. 2015허8189 거절결정(8-1) ..... 3

이 사건 출원상표	선출원 상표 1	선출원 상표 2
<b>Excitex</b> 엑시텍스	<b>-AXITEC</b>	<b>AXITEC</b>
제19류의 비금속제 건축 및 건축 전용재료 등	제19류의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등	좌 동

-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과 한글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한글부분인 ‘엑시텍스’로 호칭될 수 있다. 선출원상표들은 일반적인 영어음운법칙에 따라 전체적으로 볼 때 ‘악시텍’ 또는 ‘엑시텍(혹은 엑시텍)’으로 호칭될 것이다.
- ▶ 선출원상표들이 ‘액(엑)시텍’으로 호칭될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3음절과 4음절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앞부분의 3음절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3번째 음절인 ‘텍’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강하게 청음되는 부분이어서 그 뒤의 4번째 마지막 음절 ‘스’는 앞 음절의 영향을 받아 약하게 청음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들과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유사하다.

2. 2015허6619 거절결정(6-1-7, 7-1-11) ..... 1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b>군대리아</b>	제35류 의류 판매대행업, 신발 판매대행업 등

-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군대리아**’ 부분이 군인들이 입는 군복에 사용되는 무늬와 유사한 무늬가 적용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군대리아 니트’, ‘군대리아 남성 슬립온’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광고문구의 게시 일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군대리아’가 이 사건 심결 시에 군대와 관련된 일반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군대리아’가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특식으로 나오는 버거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버거류와 관계없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소비자들이 ‘군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2016허502 거절결정(6-1-4) ..... 21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제10류의 접속 및 안내용 도노관

-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소피아 또는 그 영문 표기인 “Sofia”를 검색해 보면,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설명, 여행 안내 등은 물론, 불가리아 등지를 다녀온 국내 관광객들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한 소피아의 관광 명소 사진과 여행 후기 등을 손쉽게 확인되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평소 잘 알고 있던 불가리아의 수도 “Sofia”를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II. 권리범위확인 · 29

### 1. 2015허3535 권리범위확인(적극) ..... 3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b>봉구네</b>	<b>봉구비에</b>
제43류 간이식당업, 바(bar)서비스업, 스낵바업, 카페업 등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생맥주전문점 운영업

-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에’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2. 2016허915 권리범위확인(소극, 51-1-2) ..... 39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b>호간보</b>	
제29류의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인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등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 형태의 제품

- ▶ 확인대상표장의 ‘護肝’은 그 자체가 명시적·직접적으로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위 각 한자는 모두 고등학교 교육용 한자이자 인명용 한자로서 비교적 쉬운 한자에 해당하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95% 내외이고,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 중 중국어 선택 비율이 36.03%로 다른 제2외국어 교과보다 비교적 높은 점,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으로서 ‘애국(愛國)’, ‘독서(讀書)’, ‘식목(植木)’, 소화(消火)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도 위 어순을 취한 한자단어가 다수 존재하는 등 위 한문 어순에 비교적 익숙할 뿐만 아니라, ‘호신술(護身術)’, ‘호민관(護民官)’, ‘호국(護國)’, ‘호법(護法)’, ‘호상(護喪)’, ‘호헌(護憲)’ 등과 같이 ‘호(護)’ 자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어순을 취하는 한자단어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헛개나무가 예로부터 주독 해소나 간 질환에 효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護肝’이 비록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관계자에게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쉽게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寶’ 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관계자에게 ‘귀한 물건’이나 ‘귀한 영양제’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요소 중 ‘護肝寶’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 III. 무효 · 47

1. 2015허2310 등록무효(7-1-7) ..... 49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제29류의 건강보조식품 등 제32류의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등	제05류의 강장제, 약제, 자양강장변 질제	강장제, 미네랄보충식품,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비타민정제

- ▶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 중 ‘강장제, 미네랄보충식품,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비타민정제’는 모두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중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 엑기스’는 ‘기능성’을 가진 ‘꿀 또는 인삼’을 성분으로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가공된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양 지정상품은 유사하다.

2. 2015허6800 등록무효(7-1-7, 7-1-12) ..... 67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2	선사용상표 1,2
<b>아리파이</b> <b>Aripy</b>	<b>아빌리파이</b> , <b>ABILIFY</b>	좌 동
제5류의 항정신병 약제, 비타민제, 해열제, 진통제 등	제5류의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	항정신병약제

- ▶ 선등록상표 등은 표준어법에 맞는 발음에 의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아리파이’ 또는 ‘아(브)리파이’로 호칭된다고 할 수 없고, 5음절인 ‘아빌리파이’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두 번째 음절인 ‘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호칭이 서로 상이하어, 설령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상표를 대하는 수요자가 그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2015허7803 등록무효(6-2, 7-1-11) ..... 7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제43류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여부 결정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을 대규모로 영위함으로써,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관한 출처 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서비스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서비스표를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취득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서비스표를 사용한 서비스업’으로 한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등록 여부 결정 당시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2015허8622 등록무효(6-1-3, 71-1-5) ..... 92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p style="text-align: center;"><b>GINSENG BERRY</b> <b>진 생 베 리</b></p>	<p>제30류의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등</p>

▶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2008. 3. 24.) 이전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진생베리(GINSENG BERRY)’를 식품, 음료 등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인삼열매’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2008. 5. 13.) 이후에는 그 표장인 ‘진생베리(GINSENG BERRY)’가 네이버 백과사전에 ‘인삼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각종 인터넷 게시글, 뉴스보도기사, 방송 등에서 ‘진생베리(GINSENG BERRY)’가 ‘인삼열매’를 뜻하는 용어로 다수 사용되었으며, 상표권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산·판매자들에 의하여 진생베리(인삼열매)를 성분으로 하는 식품, 음료 등이 생산·광고·판매되는 등

‘진생베리(인삼열매)’가 식품, 음료 등의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이후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진생베리(GINSENG BERRY)’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과 같은 식품, 음료 등의 원재료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이 된 후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 부분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5. 2016허267 등록무효(7-1-7) ..... 102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BLINK LASH CARE	Blinc
제3류의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마스크(Beauty masks), 화장용 면봉, 화장용 장식전사화(裝飾轉寫畫),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탈지면	제3류의 마스크라, 아이 라이너, 매니큐어, 파운데이션크림 등

-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눈을 깜짝이다’라는 의미의 ‘BLINK’와 ‘속눈썹’을 나타내는 ‘LASH’ 및 ‘돌보다, 관리하다’의 의미로 흔하게 쓰이는 ‘CARE’가 결합된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 ‘LASH CARE’는 ‘속눈썹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인식되므로 지정상품 ‘인조속눈썹’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용도 등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앞부분 ‘BLINK’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어단어 ‘BLINK’의 발음에 따라 ‘블링크’로 호칭이 되고, ‘눈을 깜짝이다’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

- ▶ 선등록상표 ‘Blinc’는 사전상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 표상이고, 그 호칭은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블링크’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상은 그 호칭이 ‘블링크’로 동일하다. 또한 양 상품들은 모두 화장이나 미용과 관련되는 제

품으로서 그 용도가 유사하고, 화장이나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유통망을 통하여 함께 판매·유통되고, 그 수요자도 주로 여성이므로,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6. 2016허816 등록무효(6-1-3) ..... 109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p>제29류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p>

- ▶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① 화살표 모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리본 형태로 도형화 되어 있고, ② 화살표 내의 녹색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으로 볼 수 없으며, ③ 화살표 도형 내부에 'HDL+', '-LDL'을 배치하여 구성상의 독창성이 있고, ④ 영문자와 결합된 숫자부호인 '+, -'도 영문자의 앞과 뒤로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으며, ⑤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모양이 붉은 색의 하트 도형 내부를 관통하는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⑥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그 구성 부분이 갖는 관념에 의하여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낮추어 심장질환을 막는 심장이 건강한 건강보조식품' 등의 의미가 연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⑦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LDL', 'HDL+'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위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LDL', 'HD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라고 볼 수 있다.

7. 2016허2508 등록무효(6-1-3, 6-2) ..... 121

-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공기살균기'는 그 자체가 공기에

있는 균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공기살균기’에 사용할 경우 ‘공기 중의 균 또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죽이는 기기’로 직감된다. 한편, 거래통념상 공기살균기는 공기청정기의 범주에 포함되고, 다만 그 중에서 공기살균기능이 특히 강화된 제품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기살균기’ 명칭의 제품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기청정기 제품을 포함하는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공기살균기’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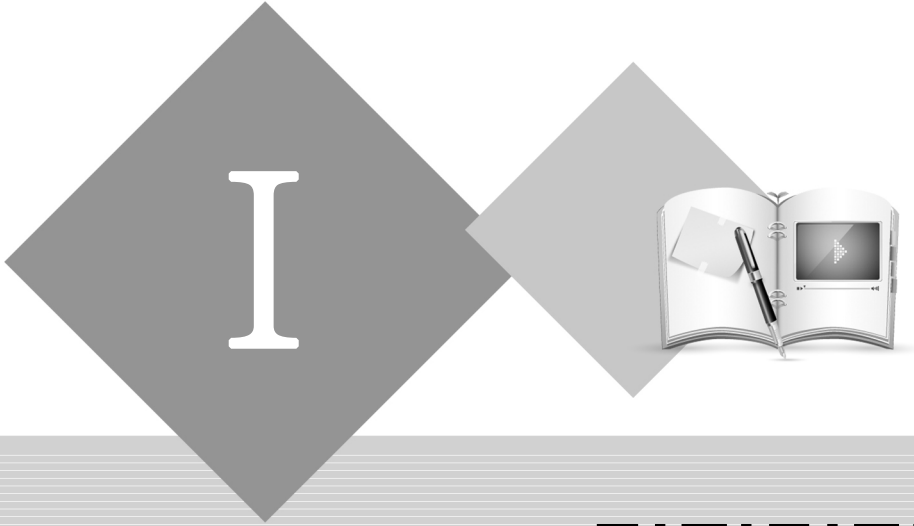
#### IV. 취소 • 133

1. 2015허6978 등록취소(73-1-2) ..... 135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서비스표
<b>소녀시대</b>		 등
제25류의 의류, 제35류의 도소매업 및 제44류의 미용업 등	의류(TOP, SKIRTS, PANTS), 가방(BAG), 신발(SHOES), 액세서리(ACC)	음반, 음원,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① 대상상표서비스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인식 정도는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②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로부터 상당한 변형이 가해진 것으로서 구성 문자가 2단으로 배열되고 일부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나 동일한 문자로 구성된 대상상표서비스표와 그 전체적인 표장이 매우 유사한 점, ③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과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피고의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과 사이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거절결정불복

1. 2015허8189 거절결정(8-1)
2. 2015허6619 거절결정(6-1-7, 7-1-11)
3. 2016허502 거절결정(6-1-4)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허8189  거절결정(상)  
원      고                   한국유에스지보랄  주식회사  
                              여수시  낙포단지길  45(낙포동)  
                              공동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염숙인,  
                              미합중국인  폴스텐턴몬젤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오리진  담당변리사  김주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5. 11. 13. 2014원556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1) 출원일/ 출원번호: 2013. 7. 22./ 제40-2013-49079호

2) 구성: **Excitex**  
**엑시텍스**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유리, 안전유리, 건축용 단열유리,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 석고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석회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아스팔트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플라스틱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합성수지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단열재,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시멘트제는 제외},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 나. 선출원상표들

1) 선출원 국제등록 상표/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 19./ 2013. 9. 2./ 국제상표  
1080093

나) 구성: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 Axitec Markenrechts GmbH

2) 선출원 국제등록 상표/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 19./ 2014. 6. 9./ 국제상표  
1080369

나) 구성: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Axitec Markenrechts GmbH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22.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였다.

2) 원고는 2014. 9. 1. 상표법 제70조의2에 따라 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5566호로 심리한 후, 2015. 11. 1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악시텍’으로 호칭되는 선출원상표들과 호칭이 달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3.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가. 표장의 유사 여부

#### 1) 관련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 2) 구체적인 판단

###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Excitex** 엑시텍스’는 외관에 있어서 영어와 한글로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출원 국제등록 상표/서비스표 1 ‘**AXITEC**’은 영문 대문자 6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자의 좌측 중앙부분에서 우측으로 날카로운 창모양의 붉은색 띠로 구성되어 있고, 선출원 국제등록 상표/서비스표 2 ‘**AXITEC**’은 영문 대문자 6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양 표장은 외관이 다르다.

### 나)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들은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표장으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 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과 한글로 결합된 표장으로서 한글부분인 ‘엑시텍스’로 호칭될 수 있다. 선출원상표들은 일반적인 영어음운법칙에 따라 전체적으로 볼 때 ‘악시텍’ 또는 ‘엑시텍(혹은 엑시텍)’으로 호칭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출원상표들은 그 등록권리자가 독일 법인으로서 독일어 발음법칙에 따라 ‘악시텍’이라고만 호칭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출원상표들 자체만으로 독일어로 된 문자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독일어 발음법칙에 따라서만 호칭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선출원상표들이 ‘액(엑)시텍’으로 호칭될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3음절과 4음절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앞부분의 3음절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3번째 음절인 ‘텍’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비교적 강하게 청음되는 부분이어서 그 뒤의 4번째 마지막 음절 ‘스’는 앞 음절의 영향을 받아 약하게 청음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들과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유사하다.

**라) 대비결과 종합**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들과 외관이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나,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건축용 비금속제 단열재, 비금속제 타일’ 등은 선출원상표들과 상품의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동일·유사하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선출원상표들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_____
	판사	김부한	_____
	판사	나상훈	_____

[별지 1]

### 선출원 국제등록 상표/서비스표 1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04류의 Industrial oils and greases, lubricants, dust absorbing, wetting and binding compositions, fuels (including motor spirit) and lighting fuels, electrical energy, candles and wicks for lighting

- 상품류 구분 제06류의 Common metals and their alloys, building materials of metal, aluminium profiles, rotary metal structures for solar panels, solar modules and roof constructions, fixing material of metal, namely latches of metal, crampons of metal [cramps], screws of metal, screw rings of metal, metal screws, nuts of metal, rivets of metal, pins [hardware], bolts of metal, pegs of metal, washers of metal, chains of metal, nails of metal, materials of metal for scaffolds, metal racks, metal poles, stakes and masts of metal, metal building profiles and frames, transportable buildings of metal, materials of metal for railway tracks, non-electric cables and wires of common metal (not for electric purpose), ironmongery, small items of metal hardware, namely hooks [metal hardware], locks of metal [other than electric], anvils, vice claws of metal, tiles of metal, stretchers for metal bands [tension links], foundry molds [moulds] of metal, jets of metal, cable thimbles of metal, machine belt fasteners of metal, junctions of metal for pipes, bindings of metal, wire of common metal, pipes and tubes of metal, safes of metal, goods of common metal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namely buckles of common metal [hardware], boxes of common metal, ores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Weathering testers, digital signal processors, measures, weigh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cinema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photographic apparatus and instruments, surveying instruments, distillation apparatus for scientific purposes, naut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opt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life saving apparatus and equipment, electric controlling devices, electric regulating apparatus, electric converters, electric conductors, solar modules for power generation, electric inverters, electric controll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electric regulat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electric monitoring apparatus and instruments, electric accumulators, solar panels, magnetic data carriers, data processing apparatus and computers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Light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heating installations, steam generating installations, industrial electric cooking ovens, refrigerating apparatus and machines, dry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and apparatus, water conduits installations, solar collectors and solar modules for the heat generation and systems consisting thereof, solar roof installations and open-air installations, solar collectors

-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pipes for building, building profile ledges (non-metallic), asphalt, pitch and bitumen, no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non-metallic roofs incorporating solar cells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Advertising,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functions, professional business and organizational planning of systems and plants for regenerative energy generation, professional business and organization consultancy for systems and plants for regenerative energy generation, business project management, in particular for systems and plant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arranging of contracts for others for the buying and selling of power supplies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Construction of photovoltaic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power, repair, namely, repair services of individual components in the field of photovoltaic and solar thermal energy, installa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s, construction,

cleaning, repair and maintenance of systems and plant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scaffolding, roofing services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Transport,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arranging of tours (travel), electricity supplying, distribution of electricity, heat supplying [distribution], district heating supplying, distribution of district heating, transmission and transport of gas or water, delivery of gas or water for supply to customers, delivery and distribution of energy

- 서비스업류 구분 제40류의 Treatment of hazardous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energy, namely, treatment of crystalline materials, namely, semi-precious stones, articles of stone, metals and glass materials, generation of energy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Techn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 desig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 industrial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technical analysis and preparation of technical certificates for assessment of projects and project partners, technical planning, technical projects and technical coordination of systems and plant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quality testing of products for certification purposes, design, planning and engineering of as well as development services for third partie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research

[별지 2]

## 선출원 국제등록 상표/서비스표 2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04류의 Industrial oils and greases, lubricants, dust absorbing, wetting and binding compositions, fuels (including motor spirit) and lighting fuels, electrical energy, candles and wicks for lighting

- 상품류 구분 제06류의 Common metals and their alloys, building materials of metal, aluminium profiles, rotary metal structures for solar panels, solar modules and roof constructions, fixing material of metal, namely latches of metal, crampons of metal [cramps], screws of metal, screw rings of metal, metal screws, nuts of metal, rivets of metal, pins [hardware], bolts of metal, pegs of metal, washers of metal, chains of metal, nails of metal, materials of metal for scaffolds, metal racks, metal poles, stakes and masts of metal, metal building profiles and frames, transportable buildings of metal, materials of metal for railway tracks, non-electric cables and wires of common metal (not for electric purpose), ironmongery, small items of metal hardware, namely hooks [metal hardware], locks of metal [other than electric], anvils, vice claws of metal, tiles of metal, stretchers for metal bands [tension links], foundry molds [moulds] of metal, jets of metal, cable thimbles of metal, machine belt fasteners of metal, junctions of metal for pipes, bindings of metal, wire of common metal, pipes and tubes of metal, safes of metal, goods of common metal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namely buckles of common metal [hardware], boxes of common metal, ores, all the aforesaid goods exclusively for the mounting of photovoltaic systems and their parts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Cinematographic machines and apparatus, photographic apparatus and instruments, optical apparatus and instruments, life saving apparatus and equipment, electric conductors,

solar modules for power generation, electric accumulators, solar panels, all the aforesaid goods exclusively for the mounting of photovoltaic systems and their parts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Light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heating installations, steam generating installations, industrial electric cooking ovens, refrigerating apparatus and machines, dry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installations and apparatus, water conduits installations, all aforementioned goods related to solar technology, solar collectors and solar modules for the heat generation and systems consisting thereof, solar roof installations and open-air installations, solar collectors

-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Building materials (non-metallic), non-metallic pipes for building, building profile ledges (non-metallic), asphalt, pitch and bitumen, non-metallic transportable buildings, monuments, not of metal, non-metallic roofs incorporating solar cells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Advertising,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functions, professional business and organizational planning of systems and plants for regenerative energy generation, professional business and organization consultancy for systems and plants for regenerative energy generation, business project management, in particular for systems and plant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arranging of contracts for others for the buying and selling of power supplies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Construction of photovoltaic installations for generating power, repair, namely, repair services of individual components in the field of photovoltaic and solar thermal energy, installa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s, construction, cleaning, repair and maintenance of systems and plant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scaffolding, roofing services

-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Transport, packaging and storage of goods,

arranging of tours (travel), electricity supplying, distribution of electricity, heat supplying [distribution], district heating supplying, distribution of district heating, transmission and transport of gas or water, delivery of electricity, thermal heat, gas or water for supply to customers, delivery and distribution of energy

- 서비스업류 구분 제40류의 Treatment of hazardous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energy, namely, treatment of crystalline materials, namely, semi-precious stones, articles of stone, metals and glass materials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rvices and research and design relating thereto in the field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 industrial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in the field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stallation, design and development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technical analysis and preparation of technical certificates for assessment of projects and project partners, technical planning, technical projects and technical coordination of systems and plant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quality testing of products for certification purposes, design, planning and engineering of as well as development services for third parties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research

끝.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허6619  거절결정(상)  
원      고                   최○○  
                                서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56-2  301호(양재동,  
                                은성빌딩)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일신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이중열

변   론   종   결                   2016.  4.  12.  
판   결   선   고                   2016.  6.  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8. 26. 2014원30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1) 출원일/ 출원번호: 2012. 3. 19./ 제41-0009266호

2) 구성: **군대리아**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 의류 판매대행업, 신발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외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이의결정 및 거절결정

가)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는 2013. 6. 1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 서비스업 중 과일 및 야채 판매대행업 등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고,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판매대행업, 신발판매대행업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의결정을 하고(을 제1호증),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해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4호증).

2) 이 사건 심결

가) 원고는 2014. 5. 23.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2014원3068호).

나) 심판 계속 중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의 주요부인 ‘**군대리아**’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으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갑 제3호증).

다) 특허심판원은 2015. 8. 26.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주요부인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나오는 특식이라는 관념을 넘어 군대와 관련된 일반명칭으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공익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

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 가. 판단기준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경쟁업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그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인정사실

1) 네이버 오픈 사전에는 ‘군대리아’에 대해 “군대에서 일부일에 1~2번 나오는 특식”, “어원은 군대+롯데리아”, “메뉴 구성은 햄버거빵 2개, 샐러드, 옥수수 스프, 소스, 잼, 스테이크, 치즈, 콜라로 구성된다”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2)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로 ‘군대리아’를 입력하면 다수의 게시글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특정 버거류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가장 먹고 싶은 군대 음식 군대리아”(을 제5호증)

② “군대리아 햄버거 재료 중 고기를 다져 동글납작하게 구운 패티, 샐러드, 소스 3가지를 납품한다”(을 제6호증)

③ “군대에서 지급되는 햄버거인 일명 군대리아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제공되는 수제 버거로 햄버거 빵에 패티, 샐러드, 딸기잼 등을 넣어 먹는 음식이다”(을 제7호증)

④ “올해부터 군 장병들이 먹는 햄버거인 일명 군대리아(군대+롯데리아)의 맛이 개선되고 크기도 커진다”(을 제10호증)

⑤ “최근 밥버거 전문점인 밀크밥버거가 군대리아 밥버거를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을 제15호증)

⑥ “이날 방송에서 현역 군인들은 삼동이 곁에서 다양한 레시피의 군대리아를 만들어 건네며 삼동이를 놀라게 했다”(을 제16호증)

⑦ “고성군의 인근 부대를 타깃으로 이벤트 상품을 개발해 군대리아 햄버거, 건빵 튀김 등과 같은 군대 생활 속 추억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다”(을 제17호증)

3) 2013. 9. 20. 및 2014. 6. 1. 유명 TV 프로그램인 ‘일밤-진짜 사나이’에 출연자들이 일명 ‘군대리아’ 햄버거를 먹는 장면이 방영되었다(을 제8, 1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 ‘**군대리아**’와 도형 ‘’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특식으로 나오는 버거류 또는 그 조리법에 따라 조리한 버거류”를 나타내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도형 ‘’ 부분은 색깔과 크기가 다른 4개의 선이 적층되어 있는 형상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도형이 ‘군대 계급장’ 모양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심결 당시 이미 ‘군대’(등록번호: 40-0842123호), ‘군대야 놀자’(등록번호: 제41-0296029호) 등 ‘군대’를 포함하는 상표가 등록된 바 있다.

3)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전체로서 통상 상품·서비스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사용을 원하는 표장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군대리아**’ 부분이 군대와 관련된 일반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군인들이 입는 군복에 사용되는 무늬와 유사한 무늬가 적용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군대리아 니트', '군대리아 남성 슬립온'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광고문구의 게시 일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군대리아'가 이 사건 심결 시에 군대와 관련된 일반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대법원 2007.06.01. 선고 2007후555 판결 참조). 또한 같은 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특식으로 나오는 버거류 또는 그 조리법에 따라 조리한 버거류"를 나타내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심결 시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물품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군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출원서비스표의 일부인 ‘군대리아’가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특식으로 나오는 버거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버거류와 관계없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소비자들이 ‘군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_____
	판사	최종선	_____
	판사	장현진	_____

[별지]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 의류 판매대행업, 스포츠전용 의류 판매대행업, 한복 판매대행업, 신발 판매대행업, 모자 판매대행업, 가방/지갑 판매대행업, 의류용벨트 판매대행업, 넥타이/스카프/양말/스타킹/장갑 판매대행업, 우산/지팡이 판매대행업, 액세서리 판매대행업, 주방용품 판매대행업, 가구 판매대행업, 낚시용구 판매대행업, 담배 판매대행업, 도자기 판매대행업, 마구/승마용구 판매대행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벽지 판매대행업, 변기/비데 판매대행업, 사진기기 판매대행업,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판매대행업, 서적 판매대행업, 시계 판매대행업, 식기 판매대행업, 악기 구매대행업, 안경 판매알선업, 완구 도매업, 완구판매대행업, 육조/샤워기 소매업, 자동판매(전자식은 제외) 중개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전기음향영상기기 판매알선업, 전기조명기구 소매업, 전기통신기기 중개업, 전선/전기케이블/광섬유 판매대행업, 직물 중개업, 침구 판매알선업, 타이어/튜브 소매업, 애완동물용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광고물작성업, 상품권본배포업, 마케팅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직업소개업, 취업정보제공업, 조화 판매대행업, 직물제 수건 판매대행업. 끝.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6허502 거절결정(상)		
원	고	마이크로벤션, 인코포레이티드(MicroVention, Inc.)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시 발렌시아 애비뉴 1311 (1311 Valencia Avenue, Tustin, California 92780, U.S.A.) 대표자 브루스 캔터(Bruce Canter)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김진희, 신정건, 임서영, 송승필, 나영환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미정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장인욱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5. 12. 10. 2015원58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1호증)

1) 국제등록일/ 우선권주장일/ 국제등록번호  
: 2013. 10. 4./ 2013. 4. 23./ 제1182084호

2) 구 성 : **SOFIA**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접속 및 안내용 도뇨관(Access and guiding catheters)<sup>1)</sup>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상표 ‘SOFIA’는, 원고가 미국 특허청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이하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2013. 10. 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것이다. 그런데 위 국제출원서에는 우리나라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 통지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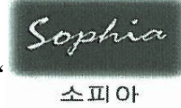
2) 그 결과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5. 위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불가리아의 수도 “SOFIA(Sof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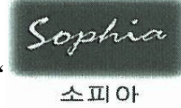
---

1) '접속 및 안내용 도뇨관(Acess and guiding catheters)'은 늑막강, 복막강 등 체강이나 소화관, 방광 등 관상(管狀) 및 낭상(囊狀) 기관의 내용액의 배출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무 또는 금속제의 가는 관으로서, 심혈관, 비뇨기, 위장, 신경혈관 등 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기구이다.

2) 상표법 제86조의14 제1항에 의하면 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일은 국제등록일인 2013. 10. 4.이 된다.

만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우선권주장일보다 앞선 2007. 4. 17.



등록번호 제706886호로 등록된 국내 선등록상표 ‘’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직권가거절 결정 통지(갑2호증)를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4. 7. 21.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11. 「원고의 의견서에 의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는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갑3호증)을 하였다.

4) 그러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년 580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12. 10.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불가리아의 수도 “Sofia”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갑4호증)을 하였다.

##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SOFI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여자 이름 중 하나이고, 영어 사전에도 ‘여자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는 국내 일반 소비자가 “SOFIA(Sofia)”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언론에 자주 노출되지도 않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동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불가리아의 수도’를 직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낮

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였으니 위법하다.

####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 ‘SOFIA’를 보고 평소 잘 알고 있던 불가리아의 수도 “Sofia”를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이 사건 출원상표 ‘SOFIA’는 다섯 개의 알파벳 대문자 ‘S’, ‘O’, ‘F’, ‘I’, ‘A’가 나란히 배열된 영문 표장으로서,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София)’의 영문 표기 “SOFIA(Sofia)”와 같다.

2) 그런데 소피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의 하나이자, 불가리아 최대의 도시로서,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인데다가, 성 소피아 성당을 비롯한 역사적인 유적지와 관광 명소가 다수 위치하여, 최근 해외여행의 증가와 여행지의 다양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불가리아와 그 수도인 소피아가 널리 소개되어 왔다.

3) 그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소피아 또는 그 영문 표기인 “Sofia”를 검색해 보면,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설명, 여행 안내 등은 물론, 불가리아 등지를 다녀온 국내 관광객들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한 소피아의 관광 명소 사진과 여행 후기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을 3~13호중).

4) 한편, 갑6, 12~14호중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지적과 같이 “Sofia” 또는 “Sophia”가 전 세계에 걸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영문 여자 이름

인 사실은 인정되나, 여자 이름 “Sofia”의 존재가 이 사건 출원상표 ‘SOFIA’를 접하는 국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불가리아의 수도인 “Sofia”를 직감할 수 없도록 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불가리아 수도의 영문 표기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이상,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 다.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Sofia)’는 원래 불가리아어로는 “София”로 표기되고, 발음 또한 “소피야”로 읽히는 등 이 사건 출원상표 ‘SOFIA’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불가리아의 수도를 직감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SOFIA(Sofi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불가리아의 수도에 대한 영문 표기이고, 국내에서 불가리아어의 표기나 발음 자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로 인식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 ‘SOFIA’의 경우 그 지정상품인 ‘접속 및 안내용 도뇨관(Access and guiding catheters)’과 관련하여 출원인인 원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이고,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이 전문 의료기구에 표기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것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가리아의 수도로 직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그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면 족한 것이지,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불가리아의 수도 “Sofia”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해당하는 이상,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 ‘SOFIA’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_____
	판사	이호산	_____
	판사	김기수	_____

## 〈참고판례〉

◆특허법원 2002.03.28자 2001허5350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표장 : **프랑세스 베이커리**)

‘프랑세스’는 3음절어인 ‘프랑스’에 ‘세’라는 음절이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프랑스인의, 프랑스어의’라는 뜻을 가지는 불어 ‘fran aise’의 발음을 한글로 옮겨 적은 ‘프랑세즈’와 매우 흡사하고, ‘프랑스의’라는 뜻을 지닌 영어는 통상 ‘french’라 할 것이나 소유격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France’s’라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 바, 그 발음을 한글로 옮겨 적은 ‘프랑스즈’ 역시 ‘프랑세스’와 발음이 유사하며, 갑 7호증에 의하면 국내의 제과점 상호 중에는 ‘영국, 불란서, 뉴욕, 독일, 빠리 등 서구의 나라나 도시이름이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등록상표와 발음이 유사한 ‘프랑세즈’ 또한 상당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위 ‘프랑세스’는 수요자나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국가명인 ‘프랑스’ 또는 ‘프랑스의, 프랑스식의’라는 관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프랑스의 국가명과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프랑스로 인식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며, 나아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품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4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각 해당한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6후54,61 판결

(표장 : 핀란드어, FINLANDIA)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핀란드의 영문 국가명 "FINLAND"에 로마자 "IA"를 부가하여 구성된 것(등록 제251618호)이거나, 한글로 "핀란드어"라고 표기한 것(등록 제251619호)으로서, 이는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로 인식될 것이므로, 원심이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후4687 판결

영문자 “**EMIRATES**”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제 2004-26320호)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중동에 있는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s)’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

# II



## 권리범위확인

1. 2015허3535 권리범위확인(적극)
2. 2016허915 권리범위확인(소극, 51-1-2)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원	건 고	2015허3535 권리범위확인(상) 주식회사 용감한사람들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47, 11층 (부전동, 인창빌딩)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0, 6층 (역삼동, 쓰리엠타워) 대표자 사내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종백, 이시훈, 이상진 특허법인 하나 담당변리사 홍장원 특허법인 대아 담당변리사 이소정, 정병직
피 고	고	이○○ 김포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이금호 특허법인 남앤드남 담당변리사 남상선, 차현숙 변리사 권두상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변 론 종 결	결 선 고	2016. 7. 7. 2016. 8.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1. 2014당28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0. 22./ 2013. 9. 24./ 제269253호

2) 구성: **봉구네**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한식점경영업, 관광숙박업

####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봉구비에**

2) 사용서비스업: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생맥주전문점 운영업

####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1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892호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인 ‘봉구’를 공유하고 있어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

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1)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3음절로 된 표장으로 전체적으로 호칭될 것인데, 확인대상표장은 상표 전체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로서 수요자들에게 ‘봉구비어’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달라 그 출처의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2) 피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요부인 ‘봉구’ 부분이 동일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사용)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sup>3)</sup> 이하에서는 표장의 유사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

---

3) 2015. 10. 22.자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포장의 유사 여부

###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봉구네**’는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네’라는 대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봉구’는 사람의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25호증 참조,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네’는 이름 다음에 ‘○○네’와 같이 사용되어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 또는 ‘그 사람이 속한 무리’를 의미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적 짧은 3음절의 한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봉구’로 약칭할 수 있다거나 실제로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봉구’로만 호칭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봉구네’로 인식된다.

### 2) 확인대상표장이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박정균의 수요자 서비스 출처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국내 수요자들이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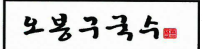
인대상표장 ‘**봉구비에**’를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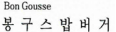
① 확인대상표장은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비에’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비교적 짧은 4음절의 한글문자가 독특한 글씨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beer’의 한글 음역으로 사용 서비스업인 생맥주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봉구’ 또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③ ‘비어’는 ‘맥주’라는 의미 외에 ‘맥주를 파는 곳’ 또는 ‘호프집’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데, 그 자체로 사용되기 보다는 ‘광수비어’, ‘용구비어’ ‘영클비어’, ‘봉쥬비어’, ‘몽구비어’, ‘달봉비어’, ‘달구비어’, ‘굿비어’, ‘굿스비어’, ‘할리비어’ 등과 같이 ‘비어’라는 단어 앞에 수 많은 이름을 붙여 ‘맥주집 이름’을 나타내는 어구로 사용된다(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대상표장의 경우에도 ‘봉구’와 ‘비어’라는 두 단어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맥주집’이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 이미 ‘ 봉구자식당’(갑 제12호증의 3), ‘ 오봉구국소’

(갑 제12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5), ‘봉구스 쉐프 밥버거’(갑 제12호증의 6), ‘ 봉구스밥버거

제12호증의 6), ‘**봉구스퀘어**’(갑 제12호증의 7) 등의 서비스표들이 서로

다른 권리자들에 의해 등록되어 있었고, ‘봉구할매김밥’(을 제10호증의 2), ‘주식회사 봉구르네’(을 제10호증의 3), ‘봉구네 한우’(갑 제4호증의 1)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⑤ 원고는 소규모 매장에서 맥주를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바(bar) 컨셉의 이른바 ‘스몰비어’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서비스 표지로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되기 전인 2011. 12.경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이래 2015. 4. 말경까지 전국에 약 70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왔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서비스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확인대상표장은 ‘2013년 한국소비자선호도 브랜드 창업혁신부분(생맥주 프랜차이즈) 대상’을(갑 제8호증의 1), 2015. 5. 19.에는 한경 비즈니스가 주최한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15 프리미엄 브랜드 스몰비어 부분 대상’을(갑 제8호증의 2, 갑 제26호증) 각 수상하였다. 원고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포털, 신문, 월간지 광고, 케이블 채널인 티비엔(tvn)의 ‘고교처세왕’ 드라마 간접광고, 록페스티벌, 창업박람회 참가, 기념품 제작 배포 등을 통해 확인대상표장을 영업 표지로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또한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다수의 언론기사, 블로그 글, 동영상 등이 검색된다.

⑦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75.2%가 확인대상표장을 알고 있고, 81.6%가 ‘봉구비어’라고 부른다고 조사되어 ‘봉구’(11.4%),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하며, **‘봉구비어’와 ‘봉구네’**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하다.

⑧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사용)서비스업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누구의 영업 표지인지 여부를 오인·혼동하고 있다고 불만한 사정도 없다.

###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봉구네’**와 확인대상표장 **‘봉구비어’**는 글자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

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 다. 대비결과의 종합

위에서 대비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_____
	판사	최종선	_____
	판사	장현진	_____

## 〈참고 판례〉

### ■ 특허법원 2012허7130 2012. 9. 28. 선고

- "BOSSART"와 "BOSS"는 유사
  - 선등록상표는 '보스'로 호칭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BOSSART' 부분이 유럽, 미국 등에서 사용되는 성(姓)으로서의 관념이 있고 이에 따라 '보사르트'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그런데 외국 성씨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인식정도나 구성 문자의 배열상태 및 단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본 우리나라 거래업계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BOSS'와 'ART'를 결합한 단순한 조어상표로 인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ART'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제작과 관련된 '예술, 기술'의 의미로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나머지 'BOSS'는 위와 같이 '상관'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시계류'와 관련하여 강한 식별력이 있으므로 그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도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인 'BOSS'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동일하다.

### ■ 특허법원 2016허2751 2016. 9. 1. 선고(대법원 심리불속행)

- 는 유사

○ 이 사건 등록상표의 'Wilsonus' 부분은 흔한 영어 이름인 'Wilson'과 우리들을 지칭하거나 접미사로 쓰이는 영어단어인 'us'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나타내지 아니하거나 '윌슨과 우리들'이라는 관념을 나타낸다. 'Wilsonus' 부분을 'Wilson'과 'us'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영어 이름을 나타내는 'Wilson' 부분이 우리들을 나타내거나 접미사로 쓰일 수 있는 'us'에 비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Wilson'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다.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허915 권리범위확인(상)
원	고	진○○ 제주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이금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정영선
피	고	김○○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송재섭, 문용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광연
변	론	2016. 5. 18.
판	결	2016. 6. 24.
선	고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15. 2015당6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제40-0719485호/2006. 12. 21./2007. 8. 2.

2) 구 성 : **호간보**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인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동충하초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동충하초가공식품, 헛개나무가공식품, 콩, 인삼, 영지버섯, 두유, 호두, 인조육, 분말달걀, 식용젤라틴, 발효유, 식용 해바라기유, 해삼, 다시마, 식용어분,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원두층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석류액상추출액

### 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상품 :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 형태의 제품(이하 '이 사건 사용상품'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2.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638호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1. 15.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護肝寶’ 부분은 그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나 ‘헛개나무 열매 추출 분말을 함유하는 제품’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표장은 그 구성 중 ‘護肝寶’ 부분에 의하여 ‘호간보’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 주장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護肝寶’ 부분은 그 사용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표시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 피고 주장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護肝寶’ 부분은 그 사용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암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요소 중 ‘護肝寶’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이때 상표가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문자 부분에 다른 문자 등이 부가된 것이더라도, 부가된 부분이 별다른 식별력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결합이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위 성질표시 문자 부분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그 상표는 여전히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후3289 판결 등 참조).

### 2) 판단

갑 제8 내지 16, 22,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은 그 자체가 ‘간을 보호하는 귀한 물건’이라는 의미를 명시적·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사용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가) 확인대상표장의 중앙부에 배열된 ‘三 護肝寶 星’라는 부분은, ‘護肝寶’ 부분이 ‘三’ 자 및 ‘星’ 자와 떨어져 있고, 글자 크기도 그보다 커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므로 일반 수요자로서는 위 부분이 ‘三星’이라는 문자 부분과 ‘護肝寶’라는 문자 부분이 결합한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

틈이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에서 위 문자 부분은 평범한 글자체로 구성되었으며, 위와 같이 ‘三’자와 ‘星’자 사이에 ‘護肝寶’부분을 배치한 것 외에는 달리 도안화된 바도 없다.

나) 헛개나무는 예로부터 간 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헛개나무 과병(果柄) 추출 분말이 알코올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2008. 10. 2.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다) 한자는 글자마다 각자의 의미를 가진 표의문자로서 글자를 보면 그에 해당하는 의미를 알 수 있는바, ‘護’자는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통솔하다’는 등의 의미를 가진 한자이고, ‘肝’자는 ‘간, 간장’ 등의 의미를 가진 한자이며, 한문이나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술어+목적어’의 어순을 취하므로, ‘護肝’은 그 자체가 명시적·직접적으로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위 각 한자는 모두 고등학교 교육용 한자이자 인명용 한자로서 비교적 쉬운 한자에 해당하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95% 내외이고,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 중 중국어 선택 비율이 36.03%로 다른 제2외국어 교과보다 비교적 높은 점,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으로서 ‘애국(愛國)’, ‘독서(讀書)’, ‘식목(植木)’, ‘소화(消火)’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도 위 어순을 취한 한자단어가 다수 존재하는 등 위 한문 어순에 비교적 익숙할 뿐만 아니라, ‘호신술(護身術)’, ‘호민관(護民官)’, ‘호국(護國)’, ‘호법(護法)’, ‘호상(護喪)’, ‘호헌(護憲)’ 등과 같이 ‘호(護)’자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어순을 취하는 한자단어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헛개나무가 예로부터 주독 해소나 간 질환에 효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護肝’이 비록 국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관계자에게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쉽게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등은 그 명칭 끝에 ‘寶’자 또는 ‘보’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寶’자 역시 고등학교 교육용 한자이자, 인명용 한자로서 비교적 쉬운 한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寶’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관계자에게 ‘귀한 물건’이나 ‘귀한 영양제’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마) ‘護肝’에 ‘寶’ 자를 결합하더라도, 이는 양자의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간을 보호하는 귀한 물건’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뿐, 그러한 결합으로 ‘護肝’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바) 한자로 구성된 조어표장의 경우에 뜻글자인 한자의 특성상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추지할 수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이를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護肝寶’는 그 자체가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명시적·직접적으로 나타내고, ‘護’ 자가 포함된 국어 단어들에 그와 같은 조어 형태를 취한 것이 상당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직감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護肝寶’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護肝寶’는 그 간체자인 ‘护肝宝’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에서 ‘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된 점에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조어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다른 도안화 없이 한글로만 표기된 ‘호간보’라는 표장으로서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요소 중 ‘護肝寶’ 부분과 호칭이 동일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護肝寶’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면 양자는 외관, 호칭이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호간보’를 한글로만 표기한 것이어서 한자로 표기된 ‘護肝寶’와 달리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관념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념 면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_____
	판사	권동주	_____
	판사	김동규	_____



# III



## 무 호

1. 2015허2310 등록무호(7-1-7)
2. 2015허6800 등록무호(7-1-7, 7-1-12)
3. 2015허7803 등록무호(6-2, 7-1-11)
4. 2015허8622 등록무호(6-1-3, 71-1-5)
5. 2016허267 등록무호(7-1-7)
6. 2016허816 등록무호(6-1-3)
7. 2016허2508 등록무호(6-1-3, 6-2)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원	건 고	2015허2310 등록무효(상) 서울약품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38 (천호동)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보성
피 고	고	1. 리앤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26 5층(삼성동, 유림빌딩) 대표이사 이○○ 2. 이○○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일신
변 론 종 결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고	2016. 5. 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2. 2013당305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서비스표등록 제21685호의 지정상품 중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지정상품추가출원일/지정상품추가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제21685호/2006. 6. 27./2007. 12. 14./2012. 6. 8. 및 2012. 6. 12./2013. 7. 16.

2) 구 성 : 원기소  
WONKISO

3) 지정상품/서비스업 : [별지 3] 기재와 같다.

2012. 6. 8. 및 2012. 6. 12. 지정상품추가 출원하여 2013. 7. 16. 추가로 등록된 지정상품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등록권자 : 피고들

#### 나. 선등록상표 1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837719호/2009. 7. 20./2010. 9. 30.

2) 구 성 : 원기소  
Wonkiso (일반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강장제,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4) 등록권리자 : 원고

#### 다. 선등록상표 2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859969호/2009. 7. 15./2011. 4. 7.

2) 구 성 :  (일반상표)

3) 지정상품 : [별지 2]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1. 20.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들과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당3054호로 심리한 후 2015. 3. 2. “이 사건 등록 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중 제29류의 건강보조식품들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약제’ 등과 그 용도, 형상, 제조, 판매, 거래와 수요자층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 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중 제32류의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는 모두 음료에 관한 것으로서 선등록상표들의 ‘약제’ 등과는 그 용도는 물론 생산과 유통구조 및 수요자 등이 모두 다른 비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중 제29류의 건강보조식품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나, 제32류에 해당하는 음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일부 기각된 심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심결 중 지정상품 등록무효로 인용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중 제32류의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는 모두 건강보조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

거나 이와 매우 유사한 상품이고, 제약회사가 제조하여 약국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선등록상표 1의 ‘강장제’, 선등록상표 2의 ‘강장제, 미네랄보충식품,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비타민정제’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 가.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인 “<sup>원기소</sup>WONKISO”와 선등록상표 1인 “<sup>원기소</sup>Wonkiso”는 한글 ‘원기소’와 영문 ‘WONKISO’, ‘Wonkiso’가 상하로 병기된 한글과 영문



이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2인 “<sup>원기소</sup>”는 사각도형 안의 상단부에 가로로 표기된 영문 ‘WONKISO’, 하단부의 좌측에 세로로 표기된 한글 ‘원기소’, 하단부의 우측에 역기를 들고 있는 사람 형상의 도형이 배치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1과 한글, 영문의 내용과 구성이 동일하여 그 외관이 동일하고, 다만 선등록상표 2와는 도형의 유무, 문자의 배열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외관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모두 ‘원기소’라고 호칭되고 인식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이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 1) 판단 기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 중 ‘강장제’는 온몸의 물질대사를 촉진하고 영양을 도와 체력을 증진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나 작용물로서 소화제, 보혈제, 자양제 등이 이에 속하고,<sup>4)</sup> 그 중 자양제 또는 자양강장제(滋養強壯劑)는 영양에 의해 기능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각종 비타민제를 비롯하여 단백질제·탄수화물·미네랄·필수아미노산 등이 있으며, 한방제(漢方劑)로는 부자제(附子劑)·건강제(乾薑劑)·인삼제(人蔘劑)가 사용된다.<sup>5)</sup>

한편, 식품이란 의약으로 취급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식품물을 말하는 것이고(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식품 중에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2호).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구별되는 식품으로서, 종래에는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 등으로 규제·관리해 왔으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 8. 26.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었다(2003. 8. 27. 시행).

선등록상표1, 2의 지정상품인 ‘강장제’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강장제, 미네랄보충식품,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비타민정제’는 모두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종래의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갑 제6, 10,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중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꿀이나 인삼을 제조·가공한 것인 사실,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중 ‘밭포

4)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참조(갑 제17호증)

5)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

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는 그 출원 당시에 ‘베로카’, ‘레덕손’ 등과 같은 발포성 비타민 제품이 거래계에 다수 유통되고 있었던 사실, 발포성 음료용 분말 또는 발포성 음료용 정제는 물에 녹여 먹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간편하게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다는 장점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에 자주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중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는 ‘기능성’을 가진 ‘꿀 또는 인삼’을 성분으로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가공된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의 원료나 성분이 위와 같은 ‘기능성’을 가지지 못한 때에는 단순한 음료에 불과하여 건강기능식품과는 그 용도를 달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와 그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그 품질 및 형상의 구별도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거래상 혼동 또는 오인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아울러 갑 제6, 7, 10, 1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① 발포성 비타민 정제인 ‘베로카’, ‘레덕손’은 제약회사인 바이엘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생산되어 약국에서 판매되었고, 건강보조식품 등의 회사에서도 발포 비타민 정제가 생산되어 일반 마트 등에서 판매되었던 사실, ② 홍삼과 벌꿀 성분이 함유된 ‘홍삼벌꿀’ 음료는 광동제약 주식회사에서 생산되어 일반 마트 등에서 판매되었던 사실, ③ 홍삼과 녹용 추출물인 ‘홍삼녹용진액’은 주식회사 보령제약에서 생산되어 약국 등에서 판매되었고, ‘정관장’ 홍삼 음료 제품은 제약회사가 아닌 한국인삼공사에서 생산되어 일반 마트에서 뿐만 아니라 약국 등에서도 판매된 사실<sup>6)</sup>, ④ 그리고 위와 같은 지정상품들은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신체 기능 및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수요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2016. 3. 10.자 피고들 변론요지서 11면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체력을 증진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등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의 출원 당시에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 아닌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회사에서도 생산하고 있었고, 약국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중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는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중 ‘강장제’,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강장제, 미네랄보충식품,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비타민정제’와 상품 속성인 품질,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중복되거나 적어도 그 품질 및 형상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생산·판매 부문과 수요자가 매우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지정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을 제4호증에 발포성 커피 음료 분말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는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등록특허공보 제838137호)에 의하면, 발포성 커피 음료 분말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의 출원 당시에 위와 같은 제품이 시중에 널리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염려가 농후한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또한,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꿀, 가공된 인삼, 인삼차’ 등의 상표권자들로서, 수요자의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무효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선등록상표들보다 선출원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등록상표 제736487호가 존재하여 오히려 선등록상표들이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심판 및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 6,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 원기소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표장이 ‘WONKISO’이고, ‘꿀’,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번호 제736487호(출원일 2007. 1. 15.)의 등록권리자이고, ‘가공된 인삼, 인삼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출원일 2006. 6. 27.)의 등록권리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09. 7. 15., 2009. 7. 20. 선등록상표 1, 2를 각 출원하여 2010. 9. 30., 2011. 4. 7. 이를 각 등록한 사실, ③ 피고들은 2010. 10.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위 등록상표권들에 대하여 경남제약 주식회사, 이수제약 주식회사에게 통상사용권 또는 전용사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들은 2012. 6. 8., 2012. 6. 12.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와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추가하는 출원을 하여 2013. 7. 16. 지정상품추가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들은 ‘의약품 또는 체력을 증진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등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작용물’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성분이 피고들의 위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일부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선등록상표 1, 2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피고들은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꿀, 가공된 인삼, 인삼차’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

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를 추가로 출원하여 등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의 지정상품들과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들의 거래실정이 당연히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수요자의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거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다. 검토 결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중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는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결국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_____
	판사	이혜진	_____
	판사	진현섭	_____

[별지 1]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추가 등록된 지정상품

[제29류]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엑기스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엑기스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농축액 분말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농축액 분말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한 환형 건강보조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한 환형 건강기능식품, 곡류 효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건조효모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유당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산화아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섬유질에 비타민이 함유된 분말형의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 섬유질에 칼슘이 함유된 분말형의 체중 조절용 건강보조식품, 섬유질에 비타민이 함유된 정제형의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 섬유질에 칼슘이 함유된 정제형의 체중 조절용 건강보조식품, 건조된 과실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건조된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과실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한방재(길경, 진피, 감초뿌리, 구기자, 성엽 등)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제32류]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음료용 정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끝]

[별지 2]

##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가축병치료제, 가축세정제(수의과용), 가축용 백신, 감각기관용 약제,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강장제, 개 로션(수의과용), 개 세정제(수의과용), 개용 구충제, 건부병균용(乾腐病菌用) 살균제, 겨자습포, 겨자 습포지, 경구용 피임약제, 고무를 바른 타페타 연고, 공기정화제, 공기청정제, 광천수욕용 염류, 광천수용 염류, 구충제, 구토방지제, 구토제, 국소마취제, 글라드수(水), 글리세로인산염, 기관지 확장제, 기생충구제제(驅除劑), 기생충구제제용 카르볼리늄, 기침치료용 약제, 남성호르몬제, 납액(의료용), 농업용 살충제, 뇌하수체 호르몬제, 눈세척제, 다리종기치료용 약제, 담배 잎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용 시가, 당뇨병치료용 약제, 당뇨병환자용 빵, 대구간유, 대사성약제, 도찰제(塗擦劑), 독감방지용 백신, 독약, 동물세정제(수의과용), 동물용 구충목걸이, 동물용 백신, 동물용 약제, 동물피부보호용 약제, 동상용 약제, 두통용 약제, 디기탈린[강심제], 리신제, 마약제, 마취제, 말용 백신, 말초신경계용 약제, 말파리구제용 오일, 멘톨(Menthol), 면역조절제, 모기향, 물리적 장해치료용 약제, 미네랄 영양첨가제, 미네랄보충식품, 미생물용 영양물질, 민달팽이구제제[팔태충구제제], 밀의 흑수병(黑穗病) 치료제, 바이러스박멸제, 반창고제거용제, 발 발한치료제,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발포제, 발한제, 발한치료제, 방부제, 방사선 숙취치료용 약제, 방충용 삼나무목재, 방충제, 방충향, 배설촉진제, 백분병치료제, 백신, 변비완화용 약제, 부신히르몬제, 부인용 한방약, 분만촉진제, 비노생식기용 약제, 비듬치료용 조제약품, 비인체용 방취제, 비타민정제, 비타민제, 뼈질환치료용 약제, 사람 및 동물용 미량원소제제, 산소욕용 산소, 살균제, 살비제, 살생물제, 살조제(殺藻劑), 살충제, 살충제용 담배추출물, 생약, 선번(Sunburn) 치료용 연고, 선충구제제, 섬유용 탈취제, 세균독(毒), 세균배양용 배지(培地), 세포부활용 약제, 소독용 유황스틱, 소독용 훈증제, 소염제, 소염제 및 해열제, 소화기관용 약제, 수렴제, 수은연고, 수의과용 그리스, 수의과용 로션제, 수의과용 생물학적제제, 수의과용 아미노산, 수의과용 항감염제, 수의과용 화학제, 수의과용 효소, 수의과용 효소제, 순환기관용 약제, 숄폰아미드제, 스멜링숄트, 스테로이드, 스트렙토마이신제, 스트리키닌, 습포제, 식

용 비영양식 식물섬유(의료용), 식이요법 또는 약제용 전분, 신경안정제, 아코  
 니틴, 아편, 아편알칼로이드제, 아편제, 안과용 약제, 안구 또는 안구내 수술용  
 약제, 안약, 알레르기용 약제, 알부민성 우유(의료용), 액상진양제(鎮痒劑), 약  
 쑥, 약용 과자, 약용 설폰아미드, 약용 캔디, 약용 캡슐, 약제용 사향, 약제,  
 약제용 감초, 약제용 겐티아나, 약제용 겨자, 약제용 곡분, 약제용 과이어콜, 약제  
 용 대황근(大黃根), 약제용 동상연고, 약제용 로션제, 약제용 류폴린, 약제용 마  
 그네시아, 약제용 막대형 감초, 약제용 맥각(麥角), 약제용 맥아, 약제용 맹그로  
 브 수피(樹皮), 약제용 멜리사수(水), 약제용 목탄, 약제용 몰식자산, 약제용 미  
 로발란수피(樹皮), 약제용 민트, 약제용 부식제, 약제용 브롬, 약제용 비스무트  
 아질산, 약제용 비스무트제제, 약제용 산류(酸類), 약제용 석회제제, 약제용 선  
 번(Sunburn)치료제, 약제용 셀룰로오스에스테르, 약제용 셀룰로오스에테르, 약  
 제용 소화제, 약제용 수피(樹皮), 약제용 수화(水化)클로랄, 약제용 시럽, 약제  
 용 아미인, 약제용 아미인분, 약제용 아몬드유, 약제용 알데히드, 약제용 알콜,  
 약제용 어분(魚粉), 약제용 에스테르, 약제용 에테르, 약제용 연고, 약제용 요오  
 드, 약제용 요오드화물, 약제용 요오드화알칼리, 약제용 우유효소, 약제용 유칼  
 립톨, 약제용 유칼립투스, 약제용 유황화(硫黃華), 약제용 이스트, 약제용 인산  
 염, 약제용煎劑, 약제용 정제, 약제용 중탄산(重碳酸)소다, 약제용 초산  
 알루미늄, 약제용 초산염, 약제용 카슈, 약제용 캡슐, 약제용 콜로디온, 약제용  
 크레오소트, 약제용 타르타르, 약제용 타르타르크림, 약제용 테레빈, 약제용 테  
 레빈유, 약제용 티몰, 약제용 페놀, 약제용 펙틴(Pectin), 약제용 펩신, 약제용  
 펩톤, 약제용 포름알데히드, 약제용 흡추출물, 약제용 화학제, 약제용 환약, 약  
 제용 효소, 약제제형제조용 조성물, 약학적 제제, 어지럼증치료용 환제, 에리스  
 로마이신제, 엘릭서 약품, 염치료용 환제, 염화암모늄 정제, 오포델도크, 완하  
 제(緩下劑), 외피용 약제, 요오드팅크, 요오드포름, 월경순환조절정제, 월경촉진  
 제, 위생용 살균제, 위생용 소독제, 위장세척제, 위장질환치료용 약제, 유열(乳  
 熱)예방제, 유충구제제(驅除劑), 의료욕용 약제, 의료용 가스, 의료용 감홍(甘  
 汞), 의료용 거머리, 의료용 거전발삼, 의료용 건조제, 의료용 겨자유, 의료용  
 고약, 의료용 곡류처리공정의 부산물, 의료용 과산화수소, 의료용 과자, 의료용  
 광천수, 의료용 구강보호 및 치료용 약제, 의료용 구강세정액, 의료용 구강소독  
 제, 의료용 구강청량제, 의료용 구충제, 의료용 그리스, 의료용 글리세린, 의료

용 기나피(皮), 의료용 나트륨염, 의료용 대추액, 의료용 동위원소, 의료용 디아스타제, 의료용 딜오일(Dill oil),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진단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효소, 의료용 라뒸, 의료용 레시틴, 의료용 로얄젤리, 의료용 맥아유음료, 의료용 목욕염류, 의료용 목욕진흙, 의료용 미생물용 영양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진단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화학시약, 의료용 바셀린, 의료용 발삼제제, 의료용 방사선조영(造影)물질, 의료용 방사성물질, 의료용 방향제, 의료용 베이비오일, 의료용 베이비파우더, 의료용 보조제, 의료용 사료첨가제, 의료용 사르사파릴라(Sarsaparilla), 의료용 산소, 의료용 살균제, 의료용 생물학제제, 의료용 설탕, 의료용 세정제, 의료용 세척용액, 의료용 시약, 의료용 식욕감퇴제,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의료용 식이요법식품조제제, 의료용 식이요법용 설탕,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의료용 식이요법제, 의료용 아미노산, 의료용 아일랜드이끼, 의료용 알부민성 식품, 의료용 알부민조제제, 의료용 알카로이드, 의료용 앙고스투라껍질, 의료용 약제, 의료용 양모제, 의료용 연초, 의료용 염류, 의료용 영양첨가제, 의료용 온천수,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인삼캡슐, 의료용 자황, 의료용 장뇌(樟腦), 의료용 장뇌유(樟腦油), 의료용 젤라틴, 의료용 진단제, 의료용 체중감량차, 의료용 추잉검, 의료용 칼륨염, 의료용 캔디, 의료용 콘두랑고수피(樹皮), 의료용 과시아, 의료용 퀘브라초 수피(樹皮), 의료용 퀴놀린, 의료용 키니네, 의료용 텅크제, 의료용 포도당, 의료용 포마드, 의료용 피마자유, 의료용 피부세척용 약제, 의료용 항균제, 의료용 항진균성 크림, 의료용 허브탕제, 의료용 혈액, 의료용 호르몬, 의료용 화학제, 의료용 회향, 의료용 효소, 의료용 효소제, 의료용 혼증소독제, 의약용 감초, 의약용 구강청량용 추잉검, 의약용 드링크제, 의약용 멥그로브수피(樹皮), 의약용 모발 성장 촉진제, 의약용 뿌리, 의약용 사탕과자, 의약용 스킨로션, 의약용 아몬드유, 의약용 알콜, 의약용 약초, 의약용 약초추출물, 의약용 오일, 의약용 진단시약, 의약용 진흙, 의약용 차, 의약용 침제(浸劑), 의약용 합성펩티드, 의약용 허브, 의약용 허브차, 이노제, 이명치료용 환제, 인공수정용 동물정액, 인공수정용 정액, 인체용 약제, 일반마취제, 임신에 의한 건성피부방지용 약제, 임신중 반점용 약제, 임신중 피부반점방지용 약제, 임신중 피부수화용 약제, 임신진단시약, 자양강장변질제, 장기(臟器)추출액요법제, 장내 세균치료용 동물용 약제, 정제제조용 첨가제, 정화용 약제, 제산제, 제초제, 제충국 분말, 조제약품, 조제용제, 조혈제,

중앙치료용 약제, 종합비타민제, 좌약, 중추신경제용 약제, 중추치료용 약제, 쥐약, 진단용 아이소토프표지물질, 진단용 약제, 진정제, 진통제, 질세정제, 천식치료용 약제, 천식환자용 차, 체중감량용 의료제제, 최면제, 최유제(催乳劑), 췌장호르몬제, 치과용 약제, 치료용 목욕제, 치료용 아이소토프표지물질, 치아 발생촉진제, 치유욕용(治癒浴用) 해수, 치질용제, 치질치료제, 침샘호르몬제, 칸타리드스 분말, 칼슘보충제, 코카인, 콘드로이틴제, 콘택트렌즈세척제, 콘택트렌즈용 용액, 큐라레, 크로톤 수피(樹皮), 클로람페니콜제, 클로로포름, 탕약제, 테트라시클린제, 토양살균제, 투석용 의약품 용액, 트레오닌제, 트리코마이신제, 트립토판제, 튜브방지용 약제, 티눈고, 티눈치료약, 티오루틴제, 파리구제제(驅除劑), 페니실린제, 폐고혈압치료용 흡입용 약제, 폐렴감염방지용 백신, 포도나무병 치료제, 포도나무뿌리진디쳐치제, 피부경결(硬結)치료제, 피부과용 약제, 피부과용 항균제, 피부보호용 약품, 피부장애치료용 약제, 피임약, 할라파(설사용 약제), 합성마약제, 항고혈압제, 항노산제제, 항당뇨제, 항독소세럼, 항문용 약제, 항병원균성 식물보호제, 항생물질제제, 항생제, 항암제, 항울제, 항육종제, 항은화식물제제, 항응고제, 항종양제, 항피부감염제, 해독제, 해열성 진통제, 해열제, 해충구제제(驅除劑), 향지방지성 인자용 약제, 헤모글로빈, 혈관수축제, 혈당강하제, 혈액용제, 혈장, 혈청, 혈청요법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호흡용 흥분제, 호흡질환 및 장애 치료용 흡입제, 호흡질환 및 천식치료용 약제, 혼합 항생물질제제, 혼합비타민제, 화상치료제, 화학세정용 소독제, 화학요법제, 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 화학적 피임약, 훈증소독봉, 훈증소독정제, 훈증소독제, 히드라스티닌, 히드라스틴, HBS항체측정시약[끝]

[별지 3]

###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건조된 과실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건조된 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과실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엑기스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한방재(길경, 진피, 감초뿌리, 구기자, 성엽 등)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엑기스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농축액 분말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농축액 분말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한 환형 건강보조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한 환형 건강기능식품, 곡류 효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건조효모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가지, 유당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감자, 산화아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고구마, 섬유질에 비타민이 함유된 분말형의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 고비, 섬유질에 칼슘이 함유된 분말형의 체중 조절용 건강보조식품, 고사리, 섬유질에 비타민이 함유된 정제형의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 고추, 섬유질에 칼슘이 함유된 정제형의 체중 조절용 건강보조식품, 냉이, 녹두나물, 당근, 동아, 마늘, 머위, 무, 박, 배추,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송로버섯, 송이버섯, 시금치, 아티초크(Artichoke),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인삼, 자소, 죽순, 콩나물, 토마토, 파, 파슬리, 표고버섯, 풋콩, 피망, 호박, 가공된 인삼, 건시(乾柿), 건조야채, 건포도, 과일샐러드, 과일젤리,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마멀레이드, 보존처리된 양파, 보존처리된 올리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Herb), 설탕에 절인 과일, 소금에 절인 양배추, 스투 요리된(Stewed) 과일, 알콜보존처리된 과일, 야채샐러드, 야채수프, 오가리, 장아찌, 잼, 초콜릿넛버터, 코코넛버터, 코코아버터, 토마토푸레, 통조림과일, 통조림야채, 피넛버터, 피카릴리(Piccalilli), 피클, 감자플레이크(flake), 사과튀레(puree), 크랜베리소스, 타이니(Tahini), 휴머스(Hummus), 요리용 야채주스, 농(濃)두부, 두부, 두유, 감, 대추, 딸기, 레몬, 멜론, 모과, 밀감, 바나나, 바틀렛배(Bartlett pears), 밤, 배, 복숭아, 비파(枇杷), 사과, 살구, 수박, 아보카도(Avocados), 아시아배(Asian pears), 앵두, 오렌지, 은행, 자두, 자몽, 잣, 참외, 키위프루트(Kiwifruit), 파인애플, 파파야,

페이조아(Feijoa), 포도, 호두, 포테이토칩, 꿩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토끼고기, 건조란, 달걀, 동결란, 메추리알, 분말달걀, 오리알, 간, 간으로 만든 파테, 간으로 만든 페이스트,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돈까스, 레닛(Rennet), 베이컨, 부용(Bouillon), 부용제조제, 브로스(Broth), 블랙푸딩(블러드소시지), 비프스테이크, 샤르꾸테리(Charcuterie), 소시지, 소위(胃), 식용 골수, 식용 젤라틴, 육포, 통조림육, 햄, 햄버거용 고기, 으깬소시지, 발효유, 분유(유아용은 제외한다), 사와, 산양유, 양유, 연유, 요구르트, 우유,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유장(乳漿), 치즈, 케피르, 콘텐스트밀크, 쿠미스(Koumiss), 크림, 휘핑크림(Whipped cream), 버터, 버터크림, 식용 들기름, 식용 땅콩기름, 식용 면실유, 식용 소맥유, 식용 아마인유, 식용 옥수수기름, 식용 올리브유, 식용 참기름, 식용 코코넛지방판유, 식용 콩기름, 식용 팜핵유, 식용 펙틴(Pectin), 식용 평지기름, 식용 해바라기유, 식용 고래기름(경지), 식용 골유, 식용 라놀린, 식용 라드(Lard), 식용 어유(魚油), 식용 우지(牛脂), 쇼트닝, 식용 경화유(硬化油), 식용 분말유지, 마가린,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게, 고등어, 고래, 광어, 굴, 굴조개, 쫄치, 낙지, 넙치, 녹새치, 농어, 대구, 대구알젓, 대합, 도미, 돌고래, 돔, 말린 청어알, 멸치, 명태, 문어, 미꾸라지, 바지락조개, 방어,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 볼락,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우, 성게, 성게알젓, 소금에 절인 연어알, 소라, 송어, 식용 개구리, 양미리, 연어, 오징어, 우렁쉥이, 은어, 잉어, 자라,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개, 조기, 준치, 쥐치, 참치, 청새치, 청어, 캐비어, 해삼, 홍어, 홍합, 황새치, 감태,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한천, 해태, 건제어개류, 생선묵, 생선을 저민 조각, 수산물의 통조림 및 병조림, 식용 부레풀, 식용 어분(魚粉), 훈제어개류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Capers),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곡분제 페이스트, 국수, 귀리플레이크, 냉면, 당면, 도시락밥, 라면, 라비올리(Ravioli),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마카로니, 만두피, 밀기울, 버미첼리(Vermicelli), 빈대떡, 샌드위치, 스파게티,オート밀, 전, 초밥, 콘플레이크, 쿠스쿠스(Couscous), 키쉬(Quiches), 타블레(Tabboulea), 타코(Tacos),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감초과자, 강정, 건(乾)과자, 건빵, 냉동 요구르트얼음과자, 누가, 다식, 도넛, 드롭스, 땅콩과자, 러스크(Rusk), 롤리팝,

마지팬(Marzipan), 마카롱(Macaroons), 맥아비스킷, 바바로아, 박하사탕과자, 볼로, 봉봉과자,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검, 빙과용 셔벗, 사탕과자, 사탕조림, 산자, 쇼트브레드, 슈크림, 식용 캔디, 아몬드과자,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약(藥)과자, 양갱, 얼음사탕, 엿, 와플(Waffles), 웨이퍼스, 전과, 젤리과자, 초콜릿, 카스타드, 캐러멜캔디, 케이크, 케이크의 식용 장식품, 케이 크페이스트, 콘칩, 쿠키, 크래커, 크레이프,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 과자, 타트(Tarts), 타피, 토르티야(Tortillas), 파이, 파테, 팝콘, 패스티, 패스텔(Pastilles), 팬케이크, 퍼프드라이스, 페이스트리(Pastries), 페티볼(Petit-beurre)비스킷, 페티스포(Petits fours), 편강, 풍당(Fondants), 푸딩, 프랄린(Pralines), 할바(Halvah), 핫케이크, 단팥빵, 롤빵, 만두, 머핀, 무발효빵, 빵가루, 생강빵, 식빵, 잼빵, 카스텔라빵, 크림빵, 햄버거용 빵, 호떡, 스프링 롤,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핵산조미료, 화학조미료, 마리네이드, 마요네즈, 맥아식초, 샐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과자용 향미료(精油는 제외한다), 깨소금, 냉이가루, 마늘가루, 바닐라(향신료), 바닐라대용 바닐린, 버섯가루, 사프론(Saffron - 조미료),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 수프, 올스파이스(Allspice), 육계가루, 음료용 향미료(精油는 제외한다), 차우차우(Chow-chow), 카레가루, 후추가루, 처트니(Chutneys), 맛소금, 셀러리(Celery)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요리용 소금, 구기자차, 녹차, 맥엽차, 보리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오롱차, 홍차, 대용커피, 밀크커피, 밀크코코아,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커피, 코코아, 얼음, 그레이비(Gravies),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응고제, 힙크림용 안정제

-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가지, 감자, 고구마, 고비, 고사리, 고추, 냉이, 녹두나물, 당근, 동아, 마늘, 머위, 무, 박, 배추,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송로버섯, 송이버섯, 시금치, 아티초크(Artichoke),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인삼, 자소, 죽순, 콩나물, 토마토, 파, 파슬리, 표고버섯, 풋콩, 피망, 호박, 사탕무, 사탕수수, 코프라(Copra), 감, 대추, 딸기, 레몬, 멜론, 모과, 밀감, 바나나, 바틀렛배(Bartlett pears), 밤, 배, 복숭아, 비파(枇杷), 사과, 살구, 수박, 아보카도(Avocados), 아시아배(Asian pears), 앵두, 오렌지, 올리브, 은행, 자두, 자몽, 잣, 참외, 코코넛, 키위프루트(Kiwifruit), 파인애플, 파파야, 페이

조아(Feijoa), 포도, 호두, 관목, 꽃, 나무, 모, 목초, 묘목, 분재, 생화, 썬기풀, 장미나무, 종려나무, 천연잔디, 포도나무, 풀, 미가공 코코아원두, 부화용 수정란, 가금, 가축, 동물원 동물, 병아리, 사육용 동물, 산란용 암탉, 새, 종축용 가축, 짐승, 굼벵이, 벌레, 지렁이,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게, 고등어, 고래, 광어, 굴, 굴조개, 콩치, 낙지, 넙치, 녹새치, 농어, 대구, 대합, 도미, 돌고래, 돔, 멸치, 명태, 문어, 미꾸라지, 바지락조개, 방어,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 불락,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우, 성게, 소라, 송어, 식용 개구리, 양미리, 연어, 연어알, 오징어, 우렁쉥이, 은어, 잉어, 자라,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개, 조기, 준치, 쥐치, 참치, 청새치, 청어, 해삼, 홍어, 홍합, 황새치, 감태,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우뚝가사리,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해태, 애완동물용 모래종이(깔집), 애완동물용 향처리모래(깔집), 통나무, 미가공 코르크, 야자나무의 잎, 크리스마스트리(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것을 말한다), 혼상용 생화화환,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장식용 건조식물, 장식용 드라이플라워, 누에, 잠충(蠶種)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감주(음료), 과일맛음료,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음료용 정제,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비알콜성 아페리티프, 소다음료, 수정과, 식혜,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청량음료, 광천수, 리튬염수, 무탄산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워터, 음료용 광천수, 음료용 물[끝]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허6800 등록무효(상)
원	고	오츠카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大塚製藥 株式會社) 일본 도쿄도 지요다쿠 간다츠카사마치 2-9 (日本 東京都 千代田區 神司町 2-9) 대표자 히구치 타츠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량은
피	고	신평제약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7 (목내동, 신평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정현
변	론	2016. 4. 8.
판	결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5. 8. 24. 2014당10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933053호/2011. 8. 1./2012. 9. 4.

2) 구 성 : **아리파이** (일반상표)  
**Aripy**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피고

#### 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658134호/2005. 5. 18./2006. 4. 10.

나) 구 성 : **아빌리파이**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중추신경계용 약제(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human use for the treatment of central nervous system diseases and disorders)

라) 등록권리자 : 원고

#####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567921호/2002. 9. 30./2003. 12. 6.

나) 구 성 : **ABILIFY**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심혈관질환 치료 및 예방용 약제, 중추신경계 장애질환 치료 및 예방용 약제, 발작증 치료 및 예방용 약제, 중앙치료 및 예방용 약제, 소염제, 호흡기 전염성 질환 치료 및 예방용 약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 및 예방용 약제, 항생제

라) 등록권리자 : 원고

##### 3) 선사용상표 1

가) 사용개시일 : 국내 2004년, 미국 2002년

나) 구 성 : **아빌리파이**

다) 사용상품 : 향정신병약제

라) 사용자 : 원고

##### 4) 선사용상표 2

가) 사용개시일 : 국내 2004년, 미국 2002년

나) 구 성 : **ABILIFY**

다) 사용상품 : 향정신병약제

라) 사용자 : 원고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또한 그 출원 전에 이미 ‘향정신병 약제’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 1, 2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에 의해 출원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1088호로 심리한 후 2015. 8. 24.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및 선사용상표 1, 2(이하 ‘선등록상표 등’이라 한다)는 서로 칭호, 외관이 상이하고, 그 지정상품 및 사용상품은 의약품으로서 약사 또는 의사가 주요 거래관계자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 22, 2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선등록상표 1과 선사용상표 1의 ‘아빌리파이’ 및 선등록상표 2와 선사용상표 2의 ‘ABILIFY’는 두 번째 음절인 ‘빌’의 받침 ‘리’가 세 번째 음절의 자음 ‘리’와 동일하여 두 번째 음절 ‘빌’ 부분이 세 번째 음절 ‘리’ 부분에 흡수되어 생략되거나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등록상표 등은 ‘리’가 겹쳐지면서 ‘압리파이’ 또는 ‘아(브)리파이’로 호칭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선등록상

표 등은 어두부분의 ‘아리’와 어미부분의 ‘파이’가 명확히 청감되어 전체적으로

‘아리파이’라고 청감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아리파이**  
**Aripy**’와 그 호칭이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 등의 지정상품의 주된 거래자를 의사 또는 약사로만 한정하여 일반 수요자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의사나 약사의 경우에도 투약 오류의 사례가 빈번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들이 일반 수요자에 비하여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등록상표 등은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 정신질환용 약제에 표시되어 2002년부터 판매되어 왔고 미국과 한국에서는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한다.

### 3. 판 단

#### 가.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등은 의약품에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일반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는데(약사법 제2조 제9, 10호),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는 “향정신병 약제” 등의 전문의약품과 함께 “비타민제, 해열제, 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도 포함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광고가 금지되고 있어(약사법 제68조 제6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고,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께서 약국에서 직접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가 증상을 설명하면 약사가 그에 맞는 의약품을 골라주는 것이 거래실정이다. 또한 약사는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약지도를 할 의

무가 있으므로(약사법 제1조 제12호, 제24조 제4항), 대개는 약사의 개입 하에 구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실제 수요자는 일반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의약·약사 등의 개입 하에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등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그 유사 여부 판단은 약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사·약사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표장의 유사 여부

### 1)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에서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00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인 ‘**아리파이**  
**Aripy**’는 4음절의 한글 ‘아리파이’와 영

문 알파벳 5자로 된 ‘Aripy’가 상하로 병기된 한글과 영문이 결합된 표장으로, 약물의 화학물질 명칭인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의 전단부인 ‘Arip’와 알파벳 ‘y’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상표이다. 그리고 선등록상표 1 및 선사용상표 1인 ‘**아빌리파이**’는 5음절의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2 및 선사

용상표 2인 ‘**ABILIFY**’는 영문 알파벳 5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그 자체로 아무런 관념을 도출할 수 없는 조어상표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아리파이**  
**Aripy**’와 선등록상표 1 및 선사용상표 1인

‘**아빌리파이**’, 선등록상표 2 및 선사용상표 2인 ‘**ABILIFY**’는 양 표장 모두 조어상표로서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고, 4음절 내지 5음절의 길지 않은 음절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그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등을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선등록상표 등은 두 번째 음절인 ‘빌’을 제외하면 나머지 음절이 ‘아리파이’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 표장은 외관과 호칭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일반 소비자나 의사·약사 중 누가 주된 거래관계자인가에 따라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여부가 달리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인 ‘**아리파이**  
**Aripy**’와 선등록상표 1 및 선사용상표 1인

‘**아빌리파이**’, 선등록상표 2 및 선사용상표 2인 ‘**ABILIFY**’는 한글 문자 및 영어 문자, 문자수, 문자체 등의 차이로 각각의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인 ‘**아리파이**  
**Aripy**’는 4음절인 ‘아리파이’로 호칭된다.

반면, 선등록상표 등인 ‘**아빌리파이**’와 ‘**ABILIFY**’는 두 번째 음절인 ‘빌’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들은 모두 받침이 없고, 두 번째 음절 ‘빌’은 초성인 ‘비’이 ‘파열음’이고, 종성인 ‘르’이 ‘윗잇몸 혀끝소리’이므로, 이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파열과 함께 혀끝이 윗잇몸에 닿게 되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게 된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등은 표준어법에 맞는 발음에 의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아리파이’ 또는 ‘아(브)리파이’로 호칭된다고 할 수 없고, 5음절인 ‘아빌리파이’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두 번째 음절인 ‘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호칭이 서로 상이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등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서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 다. 검토 결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아리파이**  
**Aripy**’는 선등록상표 1 및 선사용상표

1인 ‘**아빌리파이**’, 선등록상표 2 및 선사용상표 2인 ‘**ABILIFY**’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설령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상표를 대하는 수요자가 그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것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_____
	판사	이혜진	_____
	판사	진현섭	_____

## [별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항정신병 약제, 농산물이유식, 수산물이유식,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축산물이유식, 락토오스[유당], 유당(乳糖), 유아용 분유, 가축병치료제, 가축세정제(수의과용), 가축용 백신, 감각기관용 약제,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강장제, 개 로션(수의과용), 개 세정제(수의과용), 개용 구충제, 건부병균용(乾腐病菌用) 살균제, 겨자습포, 겨자습포지, 경구용 피임약제, 고무를 바른 타페타 연고, 공기정화제, 공기청정제, 광천수욕용 염류, 광천수용 염류, 구충제, 구토방지제, 구토제, 국소마취제, 굴라드수(水), 글리세로인산염, 기관지 확장제, 기생충구제제(驅除劑), 기생충구제제용 카르볼리늄, 기침치료용 약제, 남성호르몬제, 납액(의료용), 농업용 살충제, 뇌하수체 호르몬제, 눈세척제, 다리종기치료용 약제, 담배 잎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용 시가, 당뇨병치료용 약제, 당뇨병환자용 빵, 대구간유, 대사성약제, 도찰제(塗擦劑), 독감방지용 백신, 독약, 동물세정제(수의과용), 동물용 구충목걸이, 동물용 백신, 동물용 약제, 동물피부보호용 약제, 동상용 약제, 두통용 약제, 디기탈린[강심제], 리신제, 마약제, 마취제, 말용 백신, 말초신경계용 약제, 말파리구제용 오일, 멘톨(Menthol), 면역조절제, 모기향, 물리적 장해치료용 약제, 미네랄 영양첨가제, 미네랄보충식품, 미생물용 영양물질, 민달팽이 구제제[팔태충구제제], 밀의 흑수병(黑穗病) 치료제, 바이러스박멸제, 반창고제거용제, 발 발한치료제, 발기부전치료용 약제, 발포제, 발한제, 발한치료제, 방부제, 방사선 숙취치료용 약제, 방충용 삼나무목재, 방충제, 방충향, 배설촉진제, 백분병치료제, 백신, 변비완화용 약제, 부신히르몬제, 부인용 한방약, 분만촉진제, 비노생식기용 약제, 비듬치료용 조제약품, 비인체용 방취제, 비타민정제, 비타민제, 뼈질환치료용 약제, 사람 및 동물용 미량원소제제, 산소욕용 산소, 살균제, 살비제, 살생물제, 살조제(殺藻劑), 살충제, 살충제용 담배추출물, 생약, 선번(Sunburn) 치료용 연고, 선충구제제, 섬유용 탈취제, 세균독(毒), 세균배양용 배지(培地), 세포부활용 약제, 소독용 유헤스틱, 소독용 훈증제, 소염제, 소염제 및 해열제, 소화기관용 약제, 수렴제, 수은연고, 수의과용 그리스, 수의과용 로션제, 수의과용 생물학적제제, 수의과용 아미노산, 수의과용 항감염제, 수의과용 화학제, 수의과용

효소, 수의과용 효소제, 순환기관용 약제, 술폰아미드제, 스멜링솔트, 스테로이드, 스트렙토마이신제, 스트리키닌, 습포제, 식용 비영양식 식물섬유(의료용), 식이요법 또는 약제용 전분, 신경안정제, 아코니틴, 아편, 아편알칼로이드제, 아편제, 안과용 약제, 안구 또는 안구내 수술용 약제, 안약, 알레르기용 약제, 알부민성 우유(의료용), 액상진양제(鎮痒劑), 약쭉, 약용 과자, 약용 설펜아미드, 약용 캔디, 약용 캡슐, 약제용 사향, 약제, 약제용 감초, 약제용 겐티아나, 약제용 겨자, 약제용 곡분, 약제용 과이어콜, 약제용 대황근(大黃根), 약제용 동상연고, 약제용 로션제, 약제용 류폴린, 약제용 마그네시아, 약제용 막대형 감초, 약제용 맥각(麥角), 약제용 맥아, 약제용 맹그로브 수피(樹皮), 약제용 멜리사수(水), 약제용 목탄, 약제용 몰식자산, 약제용 미로발란수피(樹皮), 약제용 민트, 약제용 부식제, 약제용 브롬, 약제용 비스무트아질산, 약제용 비스무트제제, 약제용 산류(酸類), 약제용 석회제제, 약제용 선번(Sunburn)치료제, 약제용 셀룰로오스에스테르, 약제용 셀룰로오스에테르, 약제용 소화제, 약제용 수피(樹皮), 약제용 수화(水化)클로랄, 약제용 시럽, 약제용 아마인, 약제용 아마인분, 약제용 아몬드유, 약제용 알데히드, 약제용 알콜, 약제용 어분(魚粉), 약제용 에스테르, 약제용 에테르, 약제용 연고, 약제용 요오드, 약제용 요오드화물, 약제용 요오드화알칼리, 약제용 우유효소, 약제용 유칼립톨, 약제용 유칼립투스, 약제용 유황화(硫黃華), 약제용 이스트, 약제용 인산염, 약제용煎제(煎劑), 약제용 정제, 약제용 중탄산(重碳酸)소다, 약제용 초산알루미늄, 약제용 초산염, 약제용 카슈, 약제용 캡슐, 약제용 콜로디온, 약제용 크레오소트, 약제용 타르타르, 약제용 타르타르크림, 약제용 테레빈, 약제용 테레빈유, 약제용 티몰, 약제용 페놀, 약제용 펙틴(Pectin), 약제용 펩신, 약제용 펩톤, 약제용 포름알데히드, 약제용 흡추출물, 약제용 화학제, 약제용 환약, 약제용 효소, 약제제형제조용 조성물, 약학적 제제, 어지럼증치료용 환제, 에리스로마이신제, 엘릭서 약품, 염치료용 환제, 염화암모늄 정제, 오포델도크, 완하제(緩下劑), 외피용 약제, 요오드팅크, 요오드포름, 월경순환조절정제, 월경촉진제, 위생용 살균제, 위생용 소독제, 위장세척제, 위장질환치료용 약제, 유열(乳熱)예방제, 유충구제제(驅除劑), 의료욕용 약제, 의료용 가스, 의료용 감홍(甘汞), 의료용 거머리, 의료용 거전발삼, 의료용 건조제, 의료용 겨자유, 의료용 고약, 의료용 곡류처리공정의 부산물, 의료용 과산화수소, 의료용 과자, 의료용 광천수, 의료용 구

강보호 및 치료용 약제, 의료용 구강세정액, 의료용 구강소독제, 의료용 구강청량제, 의료용 구충제, 의료용 그리스, 의료용 글리세린, 의료용 기나피(皮), 의료용 나트륨염, 의료용 대추액, 의료용 동위원소, 의료용 디아스타제, 의료용 딜오일(Dill oil),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진단제,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 효소, 의료용 라뒸, 의료용 레시틴, 의료용 로얄젤리, 의료용 맥아유음료, 의료용 목욕염류, 의료용 목욕진흙, 의료용 미생물용 영양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진단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화학시약, 의료용 바셀린, 의료용 발삼제제, 의료용 방사선조영(造影)물질, 의료용 방사성물질, 의료용 방향제, 의료용 베이비오일, 의료용 베이비파우더, 의료용 보조제, 의료용 사료첨가제, 의료용 사르사파릴라(Sarsaparilla), 의료용 산소, 의료용 살균제, 의료용 생물학제제, 의료용 설탕, 의료용 세정제, 의료용 세척용액, 의료용 시약, 의료용 식욕감퇴제,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의료용 식이요법식품조제제, 의료용 식이요법용 설탕,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의료용 식이요법제, 의료용 아미노산, 의료용 아일랜드이끼, 의료용 알부민성 식품, 의료용 알부민조제제, 의료용 알카로이드, 의료용 앙고스투라겍질, 의료용 약제, 의료용 양모제, 의료용 연초, 의료용 염류, 의료용 영양첨가제, 의료용 온천수, 의료용 위생제, 의료용 인삼캡슐, 의료용 자황, 의료용 장뇌(樟腦), 의료용 장뇌유(樟腦油), 의료용 젤라틴, 의료용 진단제, 의료용 체중감량차, 의료용 추잉검, 의료용 칼륨염, 의료용 캔디, 의료용 콘두랑고수피(樹皮), 의료용 콰시아, 의료용 퀘브라초 수피(樹皮), 의료용 퀴놀린, 의료용 키니네, 의료용 톱크제, 의료용 포도당, 의료용 포마드, 의료용 피마자유, 의료용 피부세척용 약제, 의료용 항균제, 의료용 항진균성 크림, 의료용 허브탕제, 의료용 혈액, 의료용 호르몬, 의료용 화학제, 의료용 회향, 의료용 효소, 의료용 효소제, 의료용 훈증소독제, 의약품 감초, 의약품 구강청량용 추잉검, 의약품 드링크제, 의약품 맹그로브수피(樹皮), 의약품 모발 성장 촉진제, 의약품 뿌리, 의약품 사탕과자, 의약품 스킨로션, 의약품 아몬드유, 의약품 알콜, 의약품 약초, 의약품 약초추출물, 의약품 오일, 의약품 진단시약, 의약품 진흙, 의약품 차, 의약품 침제(浸劑), 의약품 합성펩티드, 의약품 허브, 의약품 허브차, 이노제, 이명치료용 환제, 인공수정용 동물정액, 인공수정용 정액, 인체용 약제, 일반마취제, 임신에 의한 건성피부방지용 약제, 임신중 반점용 약제, 임신중 피부반점방지용 약제, 임신중 피부수화용 약제, 임신진단시약, 자양강장변질제, 장기(臟器)추출

액요법제, 장내 세균치료용 동물용 약제, 정제제조용 첨가제, 정화용 약제, 제산제, 제초제, 제충국 분말, 조제약품, 조제용제, 조혈제, 중앙치료용 약제, 종합비타민제, 좌약, 중추신경계용 약제, 중추치료용 약제, 쥐약, 진단용 아이소토프표지물질, 진단용 약제, 진정제, 진통제, 질세정제, 천식치료용 약제, 천식환자용 차, 체중감량용 의료제제, 최면제, 최유제(催乳劑), 췌장호르몬제, 치과용 약제, 치료용 목욕제, 치료용 아이소토프표지물질, 치아발생촉진제, 치유욕용(治癒浴用) 해수, 치질용제, 치질치료제, 침샘호르몬제, 칸타리드스 분말, 칼슘보충제, 코카인, 콘드로이틴제, 콘택트렌즈세척제, 콘택트렌즈용 용액, 큐라레, 크로톤 수피(樹皮), 클로람페니콜제, 클로로포름, 탕약제, 테트라시클린제, 토양살균제, 투석용 의약품 용액, 트레오닌제, 트리코마이신제, 트립토판제, 튜브살방지용 약제, 티눈고, 티눈치료약, 티오루틴제, 파리구제제(驅除劑), 페니실린제, 폐고혈압치료용 흡입용 약제, 폐렴감염방지용 백신, 포도나무병 치료제, 포도나무뿌리진디쳐치제, 피부경결(硬結)치료제, 피부과용 약제, 피부과용 항균제, 피부보호용 약품, 피부장애치료용 약제, 피임약, 할라파(설사용 약제), 합성마약제, 항고혈압제, 항노산제제, 항당뇨제, 항독소세럼, 항문용 약제, 항병원균성 식물보호제, 항생물질제제, 항생제, 항암제, 항울제, 항육종제, 항은화식물제제, 항응고제, 항종양제, 항피부감염제, 해독제, 해열성 진통제, 해열제, 해충구제제(驅除劑), 향지방지성 인자용 약제, 헤모글로빈, 혈관수축제, 혈당강하제, 혈액용제, 혈장, 혈청, 혈청요법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호흡용 흥분제, 호흡질환 및 장애 치료용 흡입제, 호흡질환 및 천식치료용 약제, 혼합 항생물질제제, 혼합비타민제, 화상치료제, 화학세정용 소독제, 화학요법제, 화학적 장애 치료용 약제, 화학적 피임약, 혼중소독봉, 혼중소독정제, 혼중소독제, 히드라스티닌, 히드라스틴, HBS항체측정시약, 의료용 미생물, 의료용 및 수의과용 미생물배양균, 의료용 및 수의과용 미생물제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세균제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세균학적제제, 내용물이 채워진 휴대용 약품상자, 두통용 연필[두통용 펜슬], 류마티즘방지방지, 류마티즘방지팔찌, 류머티즘 방지용 반지, 발에 사용하는 티눈링, 심전계전극용 화학전도체,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워트 펜슬, 의료용 팔찌, 지혈용 펜슬, 코스틱펜슬, 가제[거즈], 동물발굽용 시멘트, 반창고, 발가락 염증용 패드, 붕대, 붕대용 거즈[가제], 생리대, 생리대용 벨트, 생리용 냅킨, 생리용 니커즈, 생리용 타월, 생리탐폰, 생리패드, 소독면,

수유용 패드, 실금환자용 기저귀, 실금환자용 팬티 또는 흡수재, 안대(眼帶), 약  
 제용 로션 처리티슈, 오블라토, 외과 및 정형외과용 뼈접합제, 외과수술 이식  
 용 리빙 티슈(living tissues), 외과용 견갑붕대, 외과용 붕대, 외과용 얇은 천,  
 외상용 스펀지, 요실금용 기저귀, 위생붕대, 위생용 팬티라이너, 위생팬티, 의  
 료용 고무, 의료용 기저귀, 의료용 린트천, 의료용 마개솜, 의료용 면포, 의료용  
 반창고, 의료용 붕대, 의료용 솜, 의료용 유지, 의료용 접착밴드, 의료용 접착테  
 이프, 의료용 탄성밴드, 의료용 탈지면, 의치용 도자기재, 의치용 재료, 의치용  
 접착제, 이대(耳帶), 정맥이상확장용 테이프, 착유용 수지, 치과 및 치과기술용  
 귀금속합금, 치과 및 치과기술용 열구봉전색제(裂溝封填塞劑), 치과 및 치과기  
 술용 접착제, 치과용 고무, 치과용 귀금속 및 귀금속합금, 치과용 귀금속합금,  
 치과용 금아말감, 치과용 래커, 치과용 랙커, 치과용 밀봉제, 치과용 및 치과기  
 술용 삽입용 재료, 치과용 바탕금속 및 합금, 치과용 성형금속, 치과용 세라믹,  
 치과용 시멘트, 치과용 아말감, 치과용 연마재, 치과용 왁스, 치과용 유향수지,  
 치과용 응고재료, 치과용 의치 제조용 재료, 치과용 의치재료용 치열교정 알진  
 산염, 치과용 인상(印象)재료, 치과용 전도성 래커, 치과용 접합 및 프라이머용  
 재료, 치과용 충전 및 밀봉재료, 치과용 충전재, 치과용 충전재료, 치과용 표시  
 용 재료, 치과용 합금, 치아복원용 재료, 치의용 몰딩왁스, 탈지면, 탈지면(화장  
 용은 제외), 탐폰[지혈마개],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방충지, 유  
 아용 식품, 플라스터 [끝]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원	건 고	2015허7803	등록무효(상)
		1. 정○○ 수원시	
		2. 김○○ 서울	
		3. 김○○ 서울	
		4. 노○○ 서울	
		5. 박○○ 서울	
		6. 박○○ 서울	
		7. 성○○ 서울	
		8. 정○○ 서울	
		9. 이○○ 서울	
		10. 박○○ 서울	
		11. 김○○ 서울	
		12. 송○○ 서울	

13. 윤○○

구리시

14. 윤○○

서울

15. 박○○

용인시

16. 이○○

용인시

17. 강○○

서울

18. 추○○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강(담당변호사 김은애, 양혜인)

피 고

주식회사 독도참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6, 901호(중동, 무광오피스빌딩)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경호

변 론 종 결

2016. 5. 27.

판 결 선 고

2016. 6. 17.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0. 23. 2014당32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을1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 심결일<sup>7)</sup>/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29./ 2013. 4. 1./ 2013. 8. 29./ 제267446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sup>8)</sup>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원고들은 2014. 12. 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

7)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당초 특허청 심사관은 2012. 3.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산지, 품질,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4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원356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3. 4.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4호에 해당하기는 하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8)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라 하고,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는 편의상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이라고 한다.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실제 독도 근해에서 참치가 어획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지정서비스업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은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3260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10. 2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 여부 결정 당시 이미 지정서비스업인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식당 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 여부 결정 시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쟁점의 정리

### 가. 원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록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실제 독도 근해에서는 참치가 거의 어획되지 않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이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독도 근해**’에는 어떠한 무효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 여부 결정 이전부터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인지도, 가맹점 수와 매장의 분포 상황, 전체 매출규모 등도 상당한데다가, 광고나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널리 알려진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등록 여부 결정 전에 이미 지정서비스업인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품질 오인을 일으킬 염려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독도 근해**’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4호의 그 서비스업에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되어 있어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미약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① 그 등록 여부 결정 당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② 상

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므로, 이하 차례로 따져보기로 한다.

### 3.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고<sup>9)</sup>는 1999. 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독도참치’라는 상호의 매

장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를 사용하여 중저가 참치 전문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 사업을 계속 확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 거절된 후 특허심판원에서 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그 등록이 결정된 2013. 4. 1. 무렵 전국에 2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2) 위 ‘독도참치’ 가맹점들은 전국의 주요 상권에 골고루 퍼져 위치하면서, 독도의 실물사진을 배경으로 그 위에다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배치한 형태의 간판을 부착한 채 참치 전문 식당업을 영위해 오으로써, 통일적인 브랜드를 유지해 왔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선릉점, 사당역점, 인천 서구청점, 석남점, 경기 이천점 등 가맹점의 연 매출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0여 개 ‘독도참치’의 전체 가맹점의 같은 기간 연 매출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한편, 피고는 위 ‘독도참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 “독도참치는 우리땅 브랜드”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미지 광고나 행사 협찬 등을 시행하고,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해 왔다. 또한 ‘독도참치’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신화로 알려짐에 따라 그 사업 내용과 대표이사의 인터뷰가 기사화되는가 하면, ‘독도참치’ 가맹점들의 중저가, 무한 리필의 독특한 영업방식이 참치의 대중화와 함께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되면서 작간접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그 인지도를 높여

---

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독도참치’ 프랜차이즈 사업의 영업 주체는 최초 이정식이었다가, 주식회사 e독도에스에프씨를 거쳐 현재는 피고로 변경된 상태이다. 이하 편의상 영업주체의 변동 전후를 구분함이 없이 모두 ‘피고’라고 한다.

가게 되었다.


4) 그 밖에도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동영상, 이미지, 블로그, 카페 등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함께 표기된 “독도참치” 프랜차이즈업에 관한 내용이 다수 게재되고, 맛집 검색 결과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관련 정보가 계속적으로 제공되었다. 그 결과 이데일리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독도참치’는 일식 분야에서 2010년도에 7위, 2011년도에 9위로 평가되고, 참치 전문점으로서는 2010년도에 2위, 2011년도에 1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 또 머니투데이가 프랜차이즈 점포수를 기준으로 실시한 브랜드 비교 분석에서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생선해물 전문점 랭킹 1위에 올라서기도 하였다.

5) 나아가 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하여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진행된 특허심판원 2014당1349와 2014당1613 등록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연달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기간, 이를 사용한 프랜차이즈의 인지도, 영업 및 매출 규모, 광고 등을 통한 언론 노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등록 결정 무렵 이미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고, 그 각 심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5, 7, 14~17, 19~22, 25~28, 30~38, 40~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구체적 검토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여부 결정

이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을 대규모로 영위함으로써,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관한 출처 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을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서비스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서비스표를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취득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서비스표를 사용한 서비스업’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인 만큼, 이 사건에서는 과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단순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이 아니라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의 식별표지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등록 여부 결정 당시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관하여 누구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가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들에게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만을 공급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가맹점들에 대하여 독도 근해 참치를 일부 공급한 바 있다거나 이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나) 피고가 제출한 수산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fips.go.kr>)의 연도별 어종별 수산물 계통 판매고 부분(을73호증의 2)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계통 판매<sup>10)</sup>된 참다랑어 및 다랑어류가 각각 1,153,330kg 과 10,165,657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위 각 판매고 자체가 독도 근해에서 어획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국내 연근해는 물론,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된 물량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각 판매고 자체가 국내 참치 전문 식당 전체에 공급될 정도로 충분한 양인지 혹은 이들이 모두 ‘독도참치’ 가맹점들에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

10) ‘계통 판매’란 국내에서 공식경매를 통하여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을74호증의 거래명세표에는 참치 공급업자 ‘튜나코리아’가 2010. 2. 17.부터 2013. 10. 25.까지 ‘독도참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2곳에 국내 근해산 다랑어류 707kg을 5,625,500원에 공급한 내역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역시 위 거래명세표상의 ‘근해산’이라는 기재만으로 독도 근해에서 어획된 참치에 관한 것이라거나 튜나코리아에서 대부분의 ‘독도참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공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한편, 피고가 독도를 포함한 국내 근해에서 참치가 어획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네이버, 다음 등의 카페나 블로그의 게시물(을55, 56호증)의 각 기재는, 아열대성 어류인 참다랑어 등 다랑어류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2012년경 이례적으로 국내 근해에서 어획되어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카페, 블로그 게시물 또는 언론매체의 기사들로서, 이들로부터는 독도를 포함한 국내 근해에서 어획되는 참치는 극미량에 불과하여 국내의 일반 참치 전문식당에 공급될 정도로 충분히 어획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마) 오히려 갑8호증의 기재와 원고 노덕호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노덕호는 이 법정에서 ‘독도참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은 주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의 원양어선에서 어획된 참치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 식당을 운영해 왔고, 국내에서 어획되는 참다랑어의 경우 그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참치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치를 저가에 무한 리필로 제공하는 ‘독도참치’ 가맹점들의 영업 특성으로 말미암아 독도 근해에서 어획되는 참치는 물론, 국내산 참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sup>11)</sup>.

#### 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고는,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은 특허청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규정된 서비스업류 구분상 가장 세분된 최소단위 항목이므로, ‘독도

---

11)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 역시 원고 노덕호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 과정에 별다른 반박을 못하였다.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한정 사항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은 특허청이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내부 기준에 불과하므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이 그 서비스업류 구분상 가장 세분된 최소단위 항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보다 더 제한된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서비스업의 동일성 인정 여부가 위 심사기준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서비스업의 구분이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의 위 심사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서비스업 자체의 속성인 서비스의 내용과 성질, 서비스업의 제공자, 제공수단 및 제공장소,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다고 해서 일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과 별개의 서비스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한정은 단지 품질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같은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있어 특정 원산지의 참치를 주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서비스의 수준과 내용,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일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과는 별개의 서비스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단지 품질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을 일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독도 참치'는 그 등록 여부 결정 이전에 이미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을 포함한 전체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만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것뿐이어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이 부정당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한 식별표지로 인식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일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독도 참치**’에 대한 종전 서비스표등록 출원의 심사 과정에, 특허청 심사관은 「수요자들이 위 서비스표가 ‘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견제출통지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과정에 이를 참조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에다가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도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지정서비스업이 실사용서비스업인 일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과 다르다고 보아 이미 취득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과정에 이루어진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는 출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는 것이어서, 출원인이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다. 더욱이 피고가 지적하는 위 의견제출통지에 관한 을7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의견제출통지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서비스표등록 출원 과정에 피고가 아닌 타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가 그것까지 고려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 설령 특허청 심사관의 위와 같은 의견제출통지가 피고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라고 보는 경우라도, 이는 피고와 특허청 사이의 문제일 뿐,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원고들에게까지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독도** **삼진**’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_____
	판사	이호산	_____
	판사	김기수	_____

## 〈참고판례〉

### ○ 2007허5499(EXCEL, 거절결정)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에서 본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위 3종류의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로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하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지정상품의 한정정보정 사례〉



2. 지정상품 : 제30류의 곡물가공식품(일본식 도시락제품에 한함), 곡물을 주 원료로 한 스낵식품(일본식 도시락제품에 한함), 우동(일본식 도시락제품에 한함), 라면(일본식 도시락제품에 한함)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허8622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대표이사 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윤택	
피	고	주식회사 케이씨라이프엔진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대교빌딩 12층 (봉천동)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김유현, 이소정	
변	론	종 결	2016. 8. 18.
판	결	선 고	2016.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5. 11. 23. 2014당41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6. 4./ 2008. 3. 24./ 2008. 5. 13./ 상표등록 제746575호

## GINSENG BERRY

(2) 표장 :

## 진 생 베 리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뮤즐리, 쌀,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사고(Sago), 식용 세몰리나,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울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타피오카(Tapioca)가루, 식용 현미가루, 프라이분,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Capers),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곡분제 페이스트, 국수, 귀리플레이크, 냉면, 당면, 도시락밥, 라면, 라비올리(Ravioli),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마카로니, 만두피, 밀기울, 버미첼리(Vermicelli), 빈대떡, 샌드위치, 스파게티,オート밀, 전, 초밥, 콘플레이크, 쿠스쿠스(Couscous), 키쉬(Quiches), 타블레(Tabboulea), 타코(Tacos),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누룩, 메주,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식용맥아, 각설탕, 골덴시럽, 과당(果糖), 꿀, 맥아당, 물엿, 봉밀, 분말엿,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설탕, 식용 당밀, 식용 포도당,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핵산조미료, 화학조미료, 마리네이드, 마요네즈, 맥아식초, 샐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과자용 향미료(精油는 제외한다), 깨소금, 냉이가루, 마늘가루, 바닐라(향신료), 바닐라대용 바닐린, 버섯가루, 사프론(Saffron - 조미료),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 수프, 올스파이스(Allspice), 육계가루, 음료용 향미료(精油는 제외한다), 차우차우(Chow-chow), 카레가루, 후추가루, 처트니(Chutneys), 맛소금, 셀러리(Celery)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요리용 소금, 구기자차, 녹차, 맥엽차, 보리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원기

차, 인삼차, 차의 잎, 오롱차, 홍차, 대용커피, 밀크커피, 밀크코코아,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커피, 코코아, 얼음, 그레이비(Gravies),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응고제, 휘핑크림용 안정제, 쌀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현미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식용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녹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옥수수에서 추출한 식이섬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2. 1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 3, 7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4당419)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표등록이 된 후에 '진생베리(인삼열매)를 원재료로 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게 되었고, 인삼열매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진생베리(인삼열매)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 지정상품들인 '뮤즐리, 쌀,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는 상표법 제6조 제1, 2, 3, 7호 및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결 중 원고의 아래 주장과 달리 판단한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진생베리(GINSENG BERRY)’는 그 등록결정시는 물론 상표등록 후에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삼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1, 2,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와 같은 인식의 결여로 등록결정시는 물론 상표등록 후에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표등록 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후발적 무효사유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등 참조). 그 취지는 상품의 원재료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138 판결 등 참조).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등 참조). 단,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

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8, 10 내지 14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진생베리’를 검색하여 보면, 진생베리(인삼열매)를 원재료로 이용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상품들은 물론 진생베리(인삼열매) 자체의 효능, 이용후기 등을 기재하고 있는 카페, 블로그, 이미지 등이 수백 건 검색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GINSENG BERRY’를 검색하여 보면, 인삼열매의 영문 명칭을 ‘GINSENG BERRY’라고 기재하면서 ‘인삼의 열매는 가장 젊은 시기의 4년생 인삼에게서 7월 중순경 일주일간만 열리는 희귀한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다.

(2) 국내 방송사인 SBS의 “생활경제 뉴스”, KBS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JTBC의 “오감도” 등 다수의 방송에서 인삼열매를 지칭하는 것으로 ‘진생베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2009. 10.경 식품저널에 실린 “불로(不老)의 열매 진생베리(Ginseng Berry) : 항당뇨·항비만 효과” 등 다수의 연구논문에서 인삼열매의 영문 명칭으로 ‘GINSENG BERRY’를 사용하고 있다.

(4)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진생베리’를 검색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판매자들이 진생베리(인삼열매) 자체를 판매하거나 진생베리(인삼열매) 성분을 함유한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 ‘진생베리(인삼열매)’ 관련 제품을 생산·광고·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상품명을 ‘예진생 진생베리 명작수’라고 사용하는 등 별도의 포장인 ‘예진생’과 ‘명작수’를 함께 부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포장인 ‘진생베리 GINSENG BERRY’를 사용하고 있다.

(5) “특별한 효능 ‘진생베리’가 뭐길래”라는 제목 아래 ‘인삼의 열매인 진생베리가 동안과 건강을 챙기는 열매로 방송에 소개되면서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

고 있다'는 내용의 스포츠경향 2013. 4. 5.자 기사, “진시황의 불로초? 진생베리 얼마나 좋기에”라는 제목 아래 ‘인삼의 열매. 진생베리 (.....) 4년에 단 한번 열리는 인삼의 열매 진생베리가 화제다’라는 내용의 동아닷컴 2013. 4. 5.자 기사, “SBS 생활경제에 방영된 진생베리 효능에 관심 높아”라는 제목 아래 ‘진생베리는 인삼의 붉은 열매로, 인삼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이 뿌리보다 3~4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의 매일경제 2013. 8. 6.자 기사 등 다수의 뉴스 기사에서 ‘진생베리’가 인삼열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다. 판 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2008. 3. 24.) 이전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진생베리(GINSENG BERRY)’를 식품, 음료 등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인삼열매’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진생베리’ 사용 자료들은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후의 증거들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2008. 5. 13.) 이후에는 그 표장인 ‘진생베리(GINSENG BERRY)’가 네이버 백과사전에 ‘인삼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각종 인터넷 게시물, 뉴스보도기사, 방송 등에서 ‘진생베리(GINSENG BERRY)’가 ‘인삼열매’를 뜻하는 용어로 다수 사용되었으며, 상표권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산·판매자들에 의하여 진생베리(인삼열매)를 성분으로 하는 식품, 음료 등이 생산·광고·판매되는 등 ‘진생베리(인삼열매)’가 식품, 음료 등의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이후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진생베리(GINSENG BERRY)’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과 같은 식품, 음료 등의 원재료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이 된 후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 부분과 관련하여(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 부분은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라.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후 그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용 사례들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후발적으로 소멸됨으로써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면, 이는 위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서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식별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 후라도 그 상표의 식별력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어진 상표를 유지시킬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려워 상표로서의 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에는, 상품의 원재료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상표등록 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상표법의 목적 내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이러한 이유에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후발적 무효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진생베리(GINSENG BERRY)’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삼열매’로 인식되게 된 것은 각종 인터넷 게시물, 뉴스보도기사, 방송 등에서 ‘진생베리’가 ‘인삼열매’를 뜻하는 용어로 다수 사용된 점, 상표권자인 원고도 상표의 일부로 사용한 점 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이를 다른 생산판매자들의 침해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후 2009.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표장인 ‘진생베리(GINSENG BERRY)’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삼열매’로 인식되게 된 것이므로, “상

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진생베리(GINSENG BERRY)’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삼열매’로 인식되게 된 것은 각종 인터넷 게시물, 뉴스보도기사, 방송 등에서 ‘진생베리’가 ‘인삼열매’를 뜻하는 용어로 다수 사용된 점, 상표권자인 원고 외에도 다수의 생산·판매자들에 의하여 진생베리(인삼열매)를 성분으로 하는 식품, 음료 등이 생산·광고·판매되는 등으로 ‘진생베리(인삼열매)’가 식품, 음료 등의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 후 상표권자인 원고의 사용만으로 그 표장인 ‘진생베리(GINSENG BERRY)’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삼열매’로 인식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표장인 ‘진생베리 GINSENG BERRY’ 자체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표장인 ‘예진생’과 ‘명작수’를 함께 부착하여 ‘예진생 진생베리 명작수’라고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진생베리 GINSENG BERRY’를 단순히 그 원재료 표시의 의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표권자인 원고조차도 ‘진생베리 GINSENG BERRY’ 자체의 식별력 부족을 인식하고 그 보강을 위하여 별도의 표장들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 부분은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 7호 및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별지 기재 무효대상 지정상품 부분이 상표등록 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후발적 무효사유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_____
	판사	김부한	_____
	판사	나상훈	_____

## [별지]

### 무효대상 지정상품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사고(Sago), 식용 세몰리나,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울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타피오카(Tapioca)가루, 식용 현미가루, 프라이분,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Capers),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곡분제 페이스트, 국수, 귀리플레이크, 냉면, 당면, 도시락밥, 라면, 라비올리(Ravioli),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마카로니, 만두피, 밀기울, 버미첼리(Vermicelli), 빈대떡, 샌드위치, 스파게티,オート밀, 전, 초밥, 콘플레이크, 쿠스쿠스(Couscous), 키쉬(Quiches), 타블레(Tabboulea), 타코(Tacos),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누룩, 메주,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식용맥아, 각설탕, 골덴시럽, 과당(果糖), 꿀, 맥아당, 물엿, 봉밀, 분말엿,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설탕, 식용 당밀, 식용 포도당,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핵산조미료, 화학조미료, 마리네이드, 마요네즈, 맥아식초, 샐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과자용 향미료(精油는 제외한다), 깨소금, 냉이가루, 마늘가루, 바닐라(향신료), 바닐라대용 바닐린, 버섯가루, 사프론(Saffron - 조미료),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 수프, 올스파이스(Allspice), 육계가루, 음료용 향미료(精油는 제외한다), 차우차우(Chow-chow), 카레가루, 후추가루, 처트니(Chutneys), 맛소금, 샐러리(Celery)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요리용 소금, 구기자차, 녹차, 맥엽차, 보리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오롱차, 홍차, 대용커피, 밀크커피, 밀크코코아,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커피, 코코아, 얼음, 그레이비(Gravies),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응고제, 힙크림용 안정제, 쌀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현미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식용포도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녹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옥수수에서 추출한 식이섬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허267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에이지 충주시 사직로 191, 601호(성서동, 황금타운) 대표자 사내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남정
피	고	블링크, 인크 (Blinc, Inc.) 미합중국 플로리다 33487 보카 래톤 사우스 로저스 씨클 1141 스위트 9(1141 South Rogers Circle, Suite 9, Boca Raton, Florida 33487, U.S.A.) 대표자 사장 루이스 파스다키스(Lewis Farsedakis)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진
변	론	2016. 5. 12.
판	결	2016.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5. 12. 23. 2014당261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9. 22./ 2010. 2. 3./ 상표등록 제 813318호

2) 구성: **BLINK LASH CARE**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11. 27./ 2005. 9. 2./ 상표등록 제 630072호

2) 구성: **Blinc**

3) 지정상품: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0. 2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마스크(Beauty masks), 화장용 면봉, 화장용 장식전사화(裝飾轉寫畫),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탈지면’에 관하여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당2618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2. 2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위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관하여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위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관하여 선등록상표와 포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포장의 동일·유사 여부

##### 가) 관련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후187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1769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BLINK LASH CARE’는 영문자 BLINK, LASH, CARE가 띄어쓰기 하여 횡으로 결합된 포장이고, 선등록상표 ‘Blinc’는

영문자 5자로 구성된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구성 문자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 (2) 호칭과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BLINK LASH CARE**’는 ‘눈을 깜짝이다’라는 의미의 ‘BLINK’와 ‘속눈썹’을 나타내는 ‘LASH’ 및 ‘돌보다, 관리하다’의 의미로 혼하게 쓰이는 ‘CARE’가 결합된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 ‘LASH CARE’는 ‘속눈썹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인식되므로 지정상품 ‘인조속눈썹’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용도 등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앞부분 ‘BLINK’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어단어 ‘BLINK’의 발음에 따라 ‘블링크’로 호칭이 되고, ‘눈을 깜짝이다’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

선등록상표 ‘**Blinco**’는 사전상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 표장이고, 그 호칭은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발음 경향에 따라 ‘블링크’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그 호칭이 ‘블링크’로 동일하고 그 관념은 다르거나 비교할 수 없다.

## (3) 대비의 결과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으나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 가) 관련법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품인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마스크 (Beauty masks), 화장용 면봉, 화장용 장식전사화(裝飾轉寫畫),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탈지면'은 미용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용품과 화장용구류에 속하는 상품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매니큐어, 파운데이션크림' 등은 여성의 화장이나 미용을 위한 화장품류에 속하는 상품이다.

양 상품들은 모두 화장이나 미용과 관련되는 제품으로서 그 용도가 유사하고, 화장이나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유통망을 통하여 함께 판매·유통되고, 그 수요자도 주로 여성이므로,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관하여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품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_____
	판사	김부한	_____
	판사	나상훈	_____

[별지 1]

## 이 사건 등록상표 제813318호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과자용 향미료{정유}, 식품향미용 정유(精油), 음료용 향미료{정유}, 정유로 만든 식품향미료, 가정세탁용 색상광택제, 가정용 정전기 방지제, 가정용 탈지제, 녹제거제, 도료용 박리제(剝離劑), 래커제거제, 바닥용 미끄럼방지 왁스, 바닥용 미끄럼방지용액, 세탁용 광택제, 세탁용 섬유유연제, 세탁용 소다, 세탁용 왁스, 세탁용 청분(靑粉), 세탁용 표백제, 소다젓물, 암모니아 세정제[휘발성알칼리], 얼룩제거제, 자벨 수(水), 차아(次亞)염소산칼륨, 청소용 및 먼지제거용 압축 캔공기, 청소용 바닥왁스 제거제, 탈색제, 탈지용 테레빈, 탈지용 테레빈유, 표백용 소다, 표백용 염, 표백제, 피혁용 표백제, 다림질용 풀, 세탁용 광택풀, 세탁용 전분, 세탁용 풀, 가발고정용 접착제,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마스크(Beauty masks), 화장용 면봉, 화장용 장식전사화(裝飾轉寫畫),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탈지면, 구강청량용 스프레이,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소프트케이크 형태의 치약, 양치액{비의료용}, 의치광택제, 의치청결제, 치아미백용 겔(gel), 치아분, 치아세정용 로션, 치아세정제, 치약, 구두약, 구두용 왁스, 구두용 크림, 구두재봉실용 왁스, 가구용 광택제, 가구용 및 마루용 광택제, 가죽보존용 광택제, 가죽용 왁스, 가죽용 크림, 광택왁스, 광택용 벙갈라, 광택용 트리폴리 석(石), 광택제, 광택지, 광택크림, 마루용 광택제, 마루용왁스, 마루용장판액, 식물의 잎 광택제, 자동차용 광택제, 재봉용 왁스, 쪽마루용 왁스, 금강사(金剛砂), 금강사지(金剛砂紙), 금강사포(金剛砂布), 금속탄화물{연마재}, 다듬질돌, 디아만틴{연마재}, 면도칼혁지용 페이스트, 백악(연마재), 보석세공용 벙갈라, 사지(砂紙), 사포(砂布), 살균성 면도석, 실리콘카바이드{연마재}, 연마석, 연마시트, 연마용 경석, 연마용 룰, 연마용 모래, 연마용 사포, 연마용액, 연마재, 연마지[사지(砂紙)], 연마포, 연삭제, 코런덤

[별지 2]

### 선등록상표 제630072호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나리싱크림,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 연필, 두발용 파우더, 라벤더향수, 리퀴드루즈, 린넨방향용 향분, 립스틱, 마스크라, 마스크 팩, 맛사지용 겔, 맛사지용 오일, 매니큐어, 매니큐어용 에나멜, 매니큐어제거제, 머릿기름, 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염색제, 모발용 웨이브제, 모발탈색제, 물분(粉), 미용목욕물첨가제, 바디안에센스(Badian essence), 발한방지제, 배니싱크림, 배스오일, 배스파우더, 백분(白粉), 베이림,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볼연지, 볼터치, 분말향수, 비듬로션, 비듬크림, 비의료용목욕염류, 비의료용 방향제, 샤프롤, 선밀크,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선오일, 선탠제, 세이빙크림, 손톱광택분,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시트론 정유(精油), 아이라이너,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샤도, 애프터셰이브로션, 약용 크림, 약용화장수, 에테르에센스, 오데코롱, 인체용 방취제, 일반화장수, 입술광택제, 입술뉴트럴라이저,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지꾸, 체중감량용 화장품, 콜드크림, 콜드퍼머용액, 콤팩트용 고형분, 콧수염용왁스, 크린싱크림, 탈모용 왁스, 탈모제, 텍수염용 염료, 파마약, 파마중화제, 파운데이션크림, 퍼머넌트웨이빙로션, 페이스파우더, 포푸리향수, 피부미백크림, 핸드크림, 향수, 향유, 헤어겔, 헤어글레이즈, 헤어드레싱어, 헤어래커, 헤어로션, 헤어모이스처라이저,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컨디셔너, 헤어크림, 헤어토닉, 헬리오트로핀, 화장분, 화장용 과산화수소, 화장용 그리스, 화장용 바셀린, 화장용 수렴제, 화장용 연필, 화장용 염료, 화장용 욕용염, 화장용 착색제, 화장용크린싱유액, 화장용 털킴파우더, 화장용 포마드, 가루비누, 가정용석유계합성세제, 공업용 비누, 드라이크리닝제, 마분(磨粉), 면도용 비누, 목욕비누, 물비누, 미용비누, 발 발한용 비누, 방취비누, 배수관세정제, 샴푸, 섬유광택용 비누, 세강(洗糠), 세액(洗液), 세정용 오일, 세제용클렌저, 세탁비누, 소독용 비누, 아몬드비누, 약용 비누, 유리용 세정제, 의류용 린스, 자동차앞유리용 세정액, 종이비누, 크림비누, 타일변기세정제, 헤어린스, 화장비누

끝.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허816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네이처스훼밀리코리아 서울 중구 청파로 464, 101동 3004호(중림동, 브라운 스톤 서울) 사내이사 이○○,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변리사 김수경	
피	고	이○○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곽훈	
변	론	종 결	2016. 5. 13.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6. 1. 5. 2015당48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9. 3./2008. 6. 11./2008. 8. 6./제756167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 별지와 같다.

4) 권리자 : 피고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847호로 심리한 후 2016. 1. 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심장을 나타내는 하트 도형과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파형’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LDL’과 ‘HDL’ 부분은 혈액의 성분 표시인데, ‘-LDL’, ‘HDL+’ 부분은 ‘LDL은 낮추고 HDL은 높인다’는 의미로 식물 왁스에서 추출한 천연 지방 알코올 추출물을 총칭하는 폴리코사놀의 효능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다.

③ 리본 모양의 화살표 도형은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형내 문자인 -LDL, HDL+와 관련하여 볼 때, 저밀도지단백질을 낮춘다는 ‘-LDL’이 하향성 화살표 도형에, 고밀도지단백질을 높인다는 ‘HDL+’는 상향성 화살표 도형에 표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 부분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인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인다는 부수적 또는 보조적 기능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표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있어서 도형이나 기호 등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결합된 전체 상표의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판결 참조).

##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도형, 문자, 기호 및 색채가 결합된 상표이다. 우선 중앙에 심장박동을 의미하는 파형을 포함하고 있는 붉은 색의 하트 도형과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도형이 색채감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나아가 좌에서 우측방향으로 상승형태의 화살표 도형은 영문자와 플러스(+)  
부호가 결합된 ‘HDL+’을 포함하고 있고, 우에서 좌측으로 하강형태의 화살표 도형은 영문자와 마이너스(-) 부호가 결합된 ‘-LDL’을 포함하고 있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살표 도형 내부에 영문자인 ‘HDL’과 ‘LDL’이 배치되어 있는데, 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 영문자 ‘HDL’은 ‘High Density Lipoprotein’의 약어로 고밀도지단백질’을 의미하고, 영문자 ‘LDL’은 ‘Low Density Lipoprotein’의 약어로 저밀도지단백질’을 의미한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일부 거래자 사이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의미하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3 내지 6호증).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붉은 색의 하트 도형과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도형,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등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도형, 문자, 기호 등이 결합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① 화살표 모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리본 형태로 도형화 되어 있고, ② 화살표 내의 녹색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으로 볼 수 없으며, ③ 화살표 도형 내부에 'HDL+', '-LDL'을 배치하여 구성상의 독창성이 있고, ④ 영문자와 결합된 숫자부호인 '+, -'도 영문자의 앞과 뒤로 서로 다르게 배치되어 있으며, ⑤ 녹색의 리본 형태의 화살표 모양이 붉은 색의 하트 도형 내부를 관통하는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⑥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그 구성 부분이 갖는 관념에 의하여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낮추어 심장질환을 막는 심장이 건강한 건강보조식품' 등의 의미가 연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⑦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LDL', 'HDL+'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위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LDL', 'HD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외관에 있어서 도형, 영문자, 수학적 기호 및 색채를 결합한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위 지정상품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결 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_\_\_\_\_

                 판사      권동주 \_\_\_\_\_

                 판사      김동규 \_\_\_\_\_

[별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식용 가공꽃가루, 냉동한 두류, 냉동콩, 냉동된 완두콩, 냉동죽순, 냉동인삼, 냉동오이, 냉동양파, 냉동생강, 냉동버섯, 냉동배추, 냉동머위, 냉동마늘,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냉동당근, 냉동고사리, 냉동가지, 피클, 피카릴리(Piccalilli), 피넛버터, 포테이토칩(식품), 포테이토스틱, 튀김감자, 통조림토마토, 통조림올리브, 통조림된 채소, 통조림된 과일, 통조림 올리브, 통조림 또는 병조림채소, 통조림 또는 병조림과일, 토마토튀레(Puree), 토마토엑기스, 타이니(Tahini), 크로켓, 크랜베리(Cranberry) 소스, 코코아버터, 코코넛분말, 코코넛버터, 초콜릿넛버터, 채소튀레, 채소수프용 조제품, 채소수프, 채소샐러드, 채소가공식품, 절임 오이, 잼, 장아찌, 요리용 토마토주스, 요리된 채소, 올리브 페이스트, 오가리(건조한 채소), 양념된 피클, 알콜보존처리된 과일, 스투요리된(Stewed) 과일, 소금에 절인 양배추, 소금에 절인 과일, 설탕을 입힌 과일, 설탕에 절인 과일, 생강잼, 사과튀레(Apple puree), 분말아몬드, 보존처리한 호두, 보존처리한 포도,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보존처리한 잣, 보존처리한 은행, 보존처리한 살구, 보존처리한 사과, 보존처리한 복숭아, 보존처리한 배, 보존처리한 밤, 보존처리한 바나나, 보존처리한 밀감, 보존처리한 모과, 보존처리한 멜론, 보존처리한 레몬, 보존처리한 딸기, 보존처리한 대추,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보존처리된 올리브, 보존처리된 양파, 보존처리된 송로버섯, 보존처리된 버섯(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된 과일(냉동한 과일은 제외), 보존처리된 견과류(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된 견과(냉동한 것은 제외), 발효채소식품(김치), 마멀레이드, 동치미, 대추야자열매, 단무지, 껍질 벗긴 토마토, 깍두기, 김치, 과일칩(식품), 과일칩, 과일젤리,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과일샐러드, 과일껍질, 과일 및 채소샐러드, 과육, 과실가공식품, 건포도, 건조무화과, 건조된 코코넛, 건조된 채소(건조채소), 건조된 채소, 건조된 과일믹스, 건조된 과일(건조과일), 건시(꽃감), 감자튀김, 감자 플레이크(flake), 가공된 호두, 가공된 인삼, 가공된 올리브튀레, 요리용 채소주스, 두유(우유대용품), 두유, 두부가공식품, 두부, 농(濃)두부, 휴머스(병아리콩 페이스트), 보존처리한 두류, 보존처리된

콩, 보존처리된 완두콩, 보존처리된 식용대두, 보존처리된 렌즈콩,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가공한 땅콩, 냉동한 과일, 냉동한 과실,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인조육, 오리고기, 엽조수(살아있지 않은 것), 양고기, 식육,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꿩고기, 가금(家禽-살아있지 않은 것), 오리알, 식용란(卵), 식용 달걀흰자위, 분말달걀, 메추리알, 동결란, 달걀흰자위, 달걀노른자위, 달걀, 난(卵)가공식품, 건조란, 햄버거용 고기, 햄, 튀긴 고기, 통조림된 고기(통조림육), 조리된 통조림고기, 으깬 소시지, 육포,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식용 젤라틴, 식용 제비등지, 식용 단백질, 식용 골수, 쇠고기조각, 소시지, 소금에 절인 고기, 소 위(胃), 샤르꾸페리(Charcuterie), 비프스테이크, 블랙푸딩(블러드소시지), 브로스(Broth), 부용제조제, 부용(Bouillon), 보존처리된 고기, 베이컨, 레닛(Rennet), 돈가스, 농축브로쓰, 농축부용, 고기젤리, 고기액기스, 건조된 고기, 간으로 만든 페이스트, 간으로 만든 파테(Pate), 간(肝), 가공한 식육, 가공된 쇠고기, 가공된 고기, 휘핑크림(Whipped cream), 휘핑크림, 하얀 치즈, 팽팽한 치즈, 크림, 쿠미스(우유음료), 콘텐스트밀크, 케피르(우유음료), 치즈가루, 치즈 스프레드, 치즈, 응유(凝乳), 유제품, 유장(乳漿), 유산음료, 유산균음료, 유(乳)가공식품, 우유크림분말, 우유크림,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 우유 단백질, 우유, 요구르트 음료, 요구르트, 연질하얀치즈, 연질치즈, 연유, 양치즈, 양유, 아몬드를 함유한 우유음료, 신선한 미숙성치즈, 식용카세인, 숙성치즈, 생크림, 산양유, 사와(Sour), 빵조각에 바르는 지방함유품, 분유 (유아용은 제외), 발효유, 몰드숙성치즈, 마시는 요구르트, 땅콩을 함유한 우유음료, 버터크림, 버터, 혼합유, 해바라기유, 팜유, 코코넛지방, 코코넛유지, 코코넛기름, 채소유지, 참기름, 유지가공식품, 옥수수기름, 쌀겨유, 식용지방제조용 지방질물질, 식용유, 식용 해바라기유, 식용 평지기름, 식용 펙틴(Pectin), 식용 팜핵유, 식용 팜유, 식용 콩기름, 식용 코코넛지방팜유, 식용 참기름, 식용 지방, 식용 유채기름, 식용 유지(油脂), 식용 우지(牛脂), 식용 올리브유, 식용 옥수수기름, 식용 어유(魚油), 식용 아마인유, 식용 소맥유, 식용 분말유지, 식용 면실유, 식용 라드(Lard), 식용 라놀린, 식용 땅콩기름, 식용 들기름, 식용 동물기름, 식용 기름, 식용 골유, 식용 고래기름(식용 금지), 식용 경화유(硬化油), 쇼트닝, 동물성 유지, 골유, 마가린, 통조림달팽이, 조리된 달팽이, 식용 번데기, 식용 달팽이알,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황새치(살아있

지 않은 것), 홍합(살아있지 않은 것), 홍어(살아있지 않은 것), 해삼(살아있지 않은 것), 캐비어, 청어(살아있지 않은 것), 청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참치(살아있지 않은 것), 참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쥐치(살아있지 않은 것), 준치(살아있지 않은 것), 조기(살아있지 않은 것), 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정어리(살아있지 않은 것), 전어(살아있지 않은 것), 전복(살아있지 않은 것), 전갱이(살아있지 않은 것), 자라(살아있지 않은 것), 잉어(살아있지 않은 것), 은어(살아있지 않은 것), 우렁쉥이(살아있지 않은 것), 왕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오징어(살아있지 않은 것), 연어(살아있지 않은 것), 양미리(살아있지 않은 것), 식용 개구리(살아있지 않은 것), 송어(살아있지 않은 것), 소라(살아있지 않은 것), 소금에 절인 연어알, 소금에 절인 생선, 성게알젓, 성게(살아있지 않은 것), 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상어(살아있지 않은 것), 삼치(살아있지 않은 것),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살아있지 않은 생선, 봉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붕어(살아있지 않은 것), 볼락(살아있지 않은 것), 복어(살아있지 않은 것), 보리멸(살아있지 않은 것), 병어(살아있지 않은 것), 뱀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뱀뱀이(살아있지 않은 것), 방어(살아있지 않은 것), 바지락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미꾸라지(살아있지 않은 것), 문어(살아있지 않은 것), 명태(살아있지 않은 것), 멸치젓, 멸치(살아있지 않은 것), 말린 청어알, 돔(살아있지 않은 것), 돌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도미(살아있지 않은 것), 대합(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알젓, 대구(살아있지 않은 것), 농어(살아있지 않은 것), 녹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넙치(살아있지 않은 것), 낙지(살아있지 않은 것), 콩치(살아있지 않은 것), 굴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굴(살아있지 않은 것), 광어(살아있지 않은 것), 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고등어(살아있지 않은 것), 게(살아있지 않은 것),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갈치(살아있지 않은 것), 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가자미(살아있지 않은 것), 가오리(살아있지 않은 것), 가물치(살아있지 않은 것), 해태(가공한 것), 해초가공식품, 파래(가공한 것), 톳(가공한 것), 클로렐라(가공한 것), 청각(가공한 것), 식품용 해조류추출물, 식품용 한천, 식용 알긴산염,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미역(가공한 것), 모자반(가공한 것), 다시마(가공한 것), 구운 김, 가공한 꼬시레기, 가공한 감태, 훈제어패류, 통조림된 생선, 어패류가공식품, 식용 어분(魚粉), 식용 부레풀, 수산물의 통조림 및 병조림, 소금에 절인 생선, 생선을 저민 조각, 생선소시지, 생선묵, 생선

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어패류, 보존처리된 생선, 건제어패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알로에 분말을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매실추출물 가공식품, 게에서추출한 키토산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산수유를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도정(搗精)한 곡물,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식용 전분, 감자가루, 뮤즐리, 밀가루, 보리가루, 부침용 곡물가루, 빵은 밀, 사고(Sago), 세몰리나(Semolina),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식용 겉겨를 없앤 귀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사고(Sago), 식용 세몰리나,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울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타피오카가루, 식용 현미가루, 쌀(백미), 쌀가루, 옥수수가루, 으깬 귀리, 으깬 보리, 찹쌀만두제조용 가루, 콩가루, 타피오카,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 탈곡한 쌀,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Capers),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건조된 밀글루텐, 건조된 파스타, 건조조리된 밥, 곡물로 만든 칩(Chips),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곡물조제품, 곡분제 식품, 곡분제 페이스트, 곡분제품, 교자용 파스타묵음, 국수, 굵게간 옥수수, 귀리를 주성분으로한 식품, 귀리플레이크, 귀리플레이크, 냉면, 도시락밥, 라면, 라비올리(Ravioli),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마카로니, 만두, 만두피, 면류, 물게 탄 옥수수, 밀기울, 버미첼리(Vermicelli-국수), 볶은 옥수수, 빈대떡, 샌드위치, 소면국수, 수프용 파스타, 스파게티, 식용 곡분제 페이스트, 식용 글루텐, 신선한 파스타, 신선한 피자, 쌀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영양파스타,オート밀, 요리되지 않은 당면, 우동,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식용オート밀, 인스턴트 소바국수, 인스턴트 우동, 인스턴트 중국식 국수, 인조미, 전, 조리되지 않은 마카로니, 조리되지 않은 스파게티, 초밥, 카넬로니, 콘플레이크, 쿠스쿠스(Couscous), 키쉬(Quiches), 타블레(Tabbouleh), 타코(Tacos), 토스트, 파스타(Pasta), 패스티(Pasty), 피자, 핫도그, 메주, 효모, 누룩, 베이킹소다 (요리용 중탄산소다), 베이킹파우더, 비의료용 이스트정제, 식용 이스트엑기스, 식품용 이스트, 이스트엑기스, 이스트파우더, 페이스트용 효소, 식용 맥아, 식용 맥아엑기스, 과자, 빵, 캔디, 감초과자, 강정, 건(乾)과자, 건빵, 고기파이, 과일빙과, 과일젤리과자, 과일케이크, 과자용 가루, 껌, 냉동 요구르트(얼음과자), 누가(Nougat), 눈깔사탕, 다식, 단팥빵, 도넛, 둥근 빵, 드롭스, 디저

트용 푸딩, 땅콩과자, 러스크(Rusk), 로젠지과자, 롤리팝, 롤빵, 마시멜로, 마지팬(Marzipan), 마카롱(Macaroons), 막대형 감초과자, 맥아비스킷, 머핀, 모나카용 페이스트리 껍질, 무발효빵, 바바로아, 박하사탕과자, 버터비스킷, 봉봉과자,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껌, 빙과용 셔벗, 빵가루, 사탕과자(캔디), 사탕조림, 산자, 생강빵, 설탕입힌 단단한 캐러멜, 설탕입힌 커피콩, 셔벗, 속이 채워진 초콜릿, 쇼트브레드, 슈크림, 스프링 롤(Spring rolls), 식빵, 식빵용 가루반죽, 식용 과일빙과, 식용 빙과용 파우더, 식용 웨이퍼스, 식용 캔디, 쌀푸딩, 아몬드과자, 아몬드케이크, 아이스크랜디(얼음사탕),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용 파우더, 약과, 양갱, 엿, 와플(Waffles), 웨이퍼스, 인스턴트 도넛믹스, 인스턴트 팬케이크 믹스, 인스턴트 푸딩믹스, 잼빵, 전과, 젤리과자, 참기름으로 만들어진 사탕과자, 초콜릿, 초콜릿바, 초콜릿캔디, 초콜릿페이스트, 카스타드, 카스텔라빵, 캐러멜캔디, 케이크, 케이크반죽, 케이크의 식용장식품, 케이크페이스트, 코코아캔디, 콘칩, 콩이 들어있는 빵, 쿠키, 크래커, 크레이프,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 과자, 크림빵, 타트(Tarts), 태피(Taffy), 토르티야(Tortillas), 통밀가루빵, 파이, 파테, 팝콘, 패스틸(Pastilles), 팬케이크, 퍼프드라이스, 페이스트리(Pastries), 페티볼(Petit-beurre)비스킷, 페티스포(Petits fours), 편강, 풍당(과자), 푸딩, 프랄린(Pralines), 할바(Halvah), 핫케이크, 햄버거용 빵, 호떡, 식용 당(糖)류, 각설탕, 골덴시럽, 과당(果糖), 굵은 정백당, 꿀, 당밀시럽, 대용꿀, 맥아당, 물엿, 백설탕, 봉밀, 분말물엿, 분말엿,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설탕, 식용 당밀, 식용 봉랍(蜂蠟), 식용 포도당, 천연감미료, 떡, 장(醬)류,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화학조미료,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핵산조미료, 마리네이드, 마요네즈, 맥아식초, 샐러드드레싱, 샐러드소스, 소스, 식초, 조미료용 소스, 조미료용 소스, 케첩, 토마토소스, 프렌치드레싱, 향을 낸 식초, 향신료, 겨자(향신료), 겨자가루, 계피(향신료), 계피가루, 고춧가루, 과일향미료, 과자용 박하, 과자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그레이비(Gravies), 깨소금, 냉이가루, 너츠멕(육두구), 렐리쉬(향신료), 마늘가루, 바닐라(향신료), 바닐라대용 바닐린, 버섯가루(향신료), 버터용 향미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향신료), 사프론(Saffron-향신료), 산초가루(향신료), 생강(향신료), 생강가루(향신료), 수프용 향미료, 스타아니스 열매(향신료), 식용 심황(향신료), 식탁용 깨소금, 식품용 에센스(정유는

제외), 식품용 향료, 식품향미료용 과일페이스트, 아니스열매(향신료), 아몬드향미료, 양념용 수프, 올스파이스(Allspice), 육계가루,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정향(丁香-향신료), 정향(丁香)가루, 제빵용 양념, 조미료용 잡초, 차용 향미료, 차우차우(향신료), 처트니(Chutneys-향신료), 치즈용 향미료, 카레가루, 카레페이스트, 커피향미료, 케이크용 향미료, 향미료(정유는 제외), 향미료용 바닐라, 후추, 후추가루(향신료), 식용 소금, 맛소금, 샐러리(Celery)소금, 식품 보존용 소금, 요리용 소금, 요리용 해수, 차(茶), 과일차, 구기자차, 녹차, 대용차, 라임차, 맥엽차, 보리차, 비약제용 우려낸 즙, 셀비어잎차, 석창포차, 아이스티, 오가피차, 오롱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홍차, 커피, 코코아,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밀크초콜릿, 밀크커피음료, 밀크코코아음료,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우유 함유 초코렛음료, 인스턴트 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초콜릿음료, 치커리(커피대용품), 커피대용품용 식물조제품, 커피음료, 코코아스프레드, 코코아음료, 코코아제품,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얼음, 식용 얼음, 얼음조각, 음식물용 얼음, 천연 또는 인공얼음, 가정용 식육연화제, 생크림용 안정제, 소시지용 결착제, 식용빙과용 응고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요리용 농화제, 휘핑크림용 안정제, 소맥배아에서 추출한 옥타코사놀(OCTACOSANOL)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미강(쌀)의 옥타코사놀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식용로열젤리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끝.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허2508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대창 정읍시 2산단2길 24(하북동)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두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박국진	
피	고	아이앤비에어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벚꽃로12길 15, 402호(독산동, 지산아이티 벤처센터)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은아	
변	론	종 결	2016. 7. 15.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17. 2015당428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1102671호 상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공기살균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1102671호 /2014. 1. 15. /2015. 4. 24. /2015. 4. 29.

2) 구성 : **VIRUSKILLER**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공기여과설비, 공기탈취장치, 가정용 공기정화기, 산소발생기, 공기건조기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282호로 심리한 후 2016. 3. 1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나, 그 지정상품 중 ‘공기살균기’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지정상품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공기여과설비, 공기탈취장치, 가정용 공기정화기, 산소발생기, 공기건조기’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공기살균기’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공기살균기’와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VIRUSKILLER*’는 영어 대문자로만 구성된 표장이다. ‘VIRUS’나 ‘KILLER’ 모두 중학교 수준의 쉬운 어휘에 해당하고, ‘VIRUSKILLER’는 ‘병원균(병원체)인 바이러스를 죽이는 사람 또는 기기’ 등의 관념을 갖는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공기살균기’는 그 자체가 공기에 있는 균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공기살균기’에 사용할 경우 ‘공기 중의 균 또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죽이는 기기’로 직감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1)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표법 제6조 제2항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

<p>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u>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u></p>	<p>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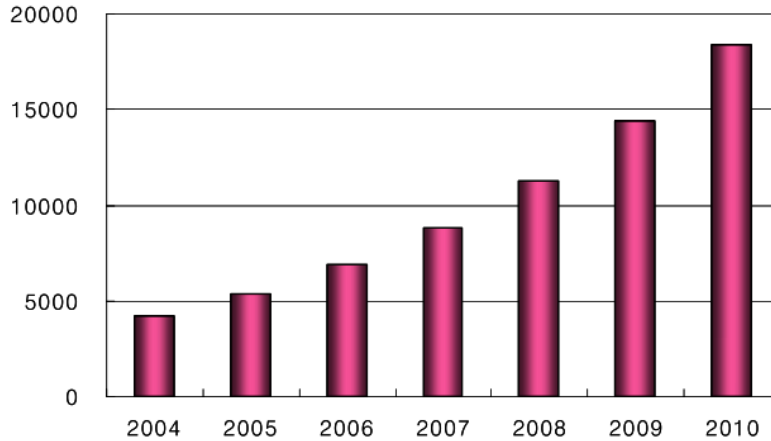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중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필요한 인식의 정도는 과거와 달리 ‘현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위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 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가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품질·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강도,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

## 2) 인정사실

갑 제8, 9, 10, 14,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6, 58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공기청정기 시장의 규모

(단위 : 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09. 10.경 발행한 ‘공기청정기의 시장 기술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의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02년 약 2,400억 원, 2004년 약 4,200억 원, 2007년 약 8,000억 원, 2009년 약 1조 4,000억 원이고, 2010년의 경우 시장 예측 규모가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위 그래프 참조).

## 나)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 제품의 기능과 분류

① 사설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오존협회가 2011. 3. 9. 제정한 ‘공기살균기에 관한 단체표준’에는 공기살균기를 ‘실내 공기 중의 부유세균과 냄새물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저감시키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위 협회는 공기살균기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능으로, 실내 공기 중의 부유세균을 사멸 또는 불활성화시켜 일정 수준 이하로 저감시키는 살균율이 80% 이상일 것과 실내 공기 중의 부유세균을 필터 등을 통해 물리(기계)적으로 분리 포집하여 일정 수준 이하로 저감시키는 제균율이 9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물품분류번호 [40161602], ‘공기살균기’를 물품분류번호 [40161699]로 구분하고 있다. 공기청정기에 대한 품명설명에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여과, 탈취, 살균 기능 등)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로서, 여기에서 40161505(에어필터)와 40161699(공기살균기)는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기살균기에 대한 품명설명에는 “공기 중에 부유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류 등을 살균하기

위한 기기로서, 유입된 공기를 자외선·오존 등으로 살균·배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를 내장한 것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2006. 3.경 작성한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기계식, 전기식, 복합식으로 분류된다. 기계식은 필터식(건식)과 습식으로 분류되는데, 필터식은 ‘전처리 필터’, ‘해파 필터’, 활성탄(카본) 필터’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전기식은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식, UV 광촉매식으로 분류되는데, UV 광촉매식은  $TiO_2$ 에 자외선 조사로 생성된 OH라디칼 및 활성산소의 산화/환원으로 악취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④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9. 10.경 발행한 ‘공기청정기의 시장 기술보고서’에는 “최근 출시되는 공기청정기는 단순한 먼지제거 기능에 그치지 않고 살균 기능 또한 갖추고 있는데 감기바이러스, 각종 균진류 등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의 기술 방식 중 ‘UV 광촉매 방식’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광에너지에 의한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여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해한 유기물질,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가스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발생된 광전자로 먼지 등을 대전시켜 제거하는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의 초기 유발을 도와주는 물질이 광촉매이며 주로 반도체 재료인  $TiO_2$ ,  $SiO_2$  등이 사용된다.

⑤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피고의 공기살균기 제품(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이라 한다)의 제품 설명에는 ‘항균 해파필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UV-C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제거하며 ‘촉매 활성탄 튜브’를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은 광에너지로부터 자극받은 이산화티타늄( $TiO_2$ )이 에너지밴드를 뛰어넘은 전지( $e^-$ )와 정공( $h^+$ )으로 이온화된 후, 이온화된 전지가 물분자( $H_2O$ )를 자극하여 다량의 수산레디칼기( $-OH$ )를 발생하며 이 수산레디칼기( $-OH$ )가 살균 및 유해화학물질을 분해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은 강력한 자외선을 반복 방사하여 병원균의 DNA와 RNA를 직접 파괴한다.

#### 다)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제품에 대한 거래계의 인식 및 사전적 정의

①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 ‘G마켓’, ‘11번가’

등에서 제품 카테고리 중 ‘공기청정기’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다.

②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은, 출처를 ‘건축용어사전’으로 표시하고 ‘공기정화장치’에 대하여 “공기 중의 부유 미립자, 세균, 유독 가스 등의 오염물을 제거하여 환경 공간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 산화, 환원, 분해, 흡착, 에어 필터, 전기 집진, 세척 등에 의해 정화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동의어로 ‘공기청정기’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지식백과의 ‘쇼핑용어사전’에는 ‘공기정화기’를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필터를 이용해 냄새나 먼지 등을 걸러 주변 공기를 정화시켜주며 공기여과기 또는 공기 순환기라고도 합니다. 먼지나 냄새, 세균 등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와 공기를 필터와 화학작용으로 산소를 만들어 발생시켜주는 산소발생기, 실내와 외부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환풍기가 있습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하여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이다. 공기를 필터에 통과시켜 먼지와 세균을 없애고 나쁜 냄새를 제거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라)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 매출액

① 피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왔다.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을 포함한 피고의 매출액의 합계는 2004년 38,170,000원, 2005년 388,546,988원, 2006년 349,130,911원, 2007년 1,002,293,920원, 2008년 2,363,170,830원, 2009년 3,858,081,935원, 2010년 2,788,537,340원, 2011년 1,248,571,416원, 2012년 916,050,094원, 2013년 482,792,489원, 2014년 765,849,241원이다. 다만, 피고의 2007년 내지 2014년 세금계산서 매출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 외에도 ‘바이러스킬러 외’, ‘리액터교체’, ‘HEPA 필터 외’, ‘헤파필터’, ‘살균모듈’ 등과 같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은 벽걸이형(VK-blue), 스탠드형 중(VK-001), 스탠드형 중(VK-101)이 있다. 피고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과 매출액은 각 제품별로 다음과 같다.

제품	판매수량 (단위 : 대)	소비자가격 (단위 : 원)	최종 매출액 (단위 : 원)
벽걸이 VK-blue	2,848	890,000	2,534,720,000
스탠드 VK-001	813	1,199,000	974,787,000
스탠드 VK-101	406	1,850,000	751,100,000
소계	4,067		4,260,670,000

③ 피고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을 대리점 '알파라인', '금오블루에어' 등에 납품한 수량과 매출액은 각 제품별로 다음과 같다.

제품	판매수량 (단위 : 대)	소비자가격 (단위 : 원)	최종 매출액 (단위 : 원)
벽걸이 VK-blue	11,068	534,000	5,910,312,000
스탠드 VK-001	3,162	719,400	2,274,742,800
스탠드 VK-101	1,581	1,110,000	1,754,910,000
소계	15,811		9,939,964,800

**마)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 광고, 방송 노출 및 제품 설치 현황 등**

① 피고가 2004. 12. 3.부터 2015. 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에 관한 신문광고, 잡지 기사, 홈쇼핑 카탈로그 광고, 네이버 검색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에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약 95,600,025원 정도이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에 대하여는 2004. 12. 3.자 및 2014. 12. 15.자 한국경제신문 전면광고, 2005. 8. 24.자 및 2005. 10. 10. 매일경제신문 전면광고, 2007. 5. 18.자 및 2007. 5. 29.자 중앙일보 전면광고, 2007. 6. 24.자 서울경제신문 전면광고, 2009. 9. 30.자 동아일보 전면광고, 2009. 9. 30.자 중앙일보 전면광고, 2011. 6. 9.자, 2011. 10. 27.자, 2013. 10. 10.자, 2013. 11. 14.자 2013. 12. 12.자, 2014. 1. 9.자, 2014. 2. 5.자 및 2014. 3. 6.자 매일경제신문 광고 등 약 10년 동안 약 18회에 걸쳐 일간신문 광고가 게재되었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은 2008. 6. 1. 'TRADE', 2010. 2. 1. '신용사회', 2014. 1. 5. 'The People' 등에 잡지 기사가 실렸고, 2013. 12. 31. 및 2014. 1. 31.에 홈쇼핑 카탈로그 광고가 방영되었다. 또한 피고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2011. 1. 31.부터 2015.경까지 합계 약 10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을 광고하였다.

④ KBS1 드라마 '우리집여자들'은 2011. 5. 16.부터 2011. 11. 4. 까지 방영되었는데,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무실에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이 설치되어 방송에 노출되었다. KBS 드라마 '굿닥터'는 2013. 8. 5.부터 2013. 10. 8. 까지 방영되었는데, 해당 드라마의 주요 촬영지인 강남성모 병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제품이 병실, 응급실, 복도 등에 설치되어 방송에 노출되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은 2005. 9. 1. KBS 뉴스, 2010. 10. 11. 매일경제 TV, 2012. 1. 1. YTN 뉴스에, 2012. 11. 1. SBS 런닝맨, 2012. 12. 10. SBS 동물농장에 각 노출되었다.

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서울여성병원News', '백혈병 환자들의 카페', '누네빛 안과', '아이사랑 어린이집', '인천 서울 여성병원', '청주 마디사랑 병원', '노블엘르 산후조리원', '꿈나래 어린이집'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에 관한 글이 게시되어 있다.

⑥ 앞서 본 피고의 매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은 국회의사당 등 전국 62곳의 관공서와 전국 62곳의 도서관에, 전국 150곳의 종합병원 및 개인 병원과 전국 93곳의 대학에, 전국 38곳의 산후조리원과 전국 138곳의 어린이집 및 키즈카페에 각 설치되어 있다.

#### **바) 피고의 수상 경력 및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기간**

①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은 2006. 9. 12.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인정서'를 받았고, 피고는 2011. 5. 27.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부터 특허스타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 11. 9. 벤처 디자인상, 2008. 6. 13. 공공구매 유공자상, 2005. 7. 30. 우수기업 표창장 등을 수상하였다.

② 피고에 대한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기간은 2006. 9. 22.부터 2009. 9. 11.까지이다. 2015.경에는 주식회사 구즈가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을 받고 있다.

#### **사) 인지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09. 10.경 발행한 '공기청정기의 시장 기술보고서'의 '기업동향' 항목에는 주요 공기청정기 업체로서 '청풍', '웅진코웨이', '샤프전자', '도시바', '산요', '미쓰비시', '히타치', '대우', '동양매

직', '롯데전자', '위니아만도', '청호' 등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제품은 피고 자체적으로 2009년도에 매출이 최고에 달하였으나 위 기업동향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DAUM'에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제품을 검색하면, 대부분 다른 회사들의 제품이 다수 검색되고 있다.

###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품의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강도가 높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사용에 의하여 등록결정일 당시 '공기살균기'와 관련하여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공기살균기'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은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공기살균기'에 해당하지만, 공기청정기의 제품 분류 중 항균 헤파필터 등을 사용하는 기계식과 UV 광촉매식이 결합된 '복합식'에 해당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기청정기' 카테고리로 판매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공기청정기의 일종으로 거래되고 있다.

공기청정기 역시 단순한 먼지제거 기능에 그치지 않고 바이러스, 각종 균진류 등을 제거하는 제균·항균·살균 기능을 하고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나, '공기청정기'의 품명설명에서 공기살균기와 유사한 '살균기능'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나아가 각종 온라인 사전 등도 공기청정기에 살균기능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거래통념상 공기살균기는 공기청정기의 범주에 포함되고, 다만 그 중에서 공기살균기능이 특히 강화된 제품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공기청정기는 공기살균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공기청정기에도 공기 중의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공기청정기 제품과 관련하여 'VIRUS KILLER'라는 표장은 제품의 제균·항균·살균 기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공기청

정기 제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기살균기’ 명칭의 제품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기청정기 제품을 포함하는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공기살균기’와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상표권에 기하여 ‘동일 상품류’에 속하는 ‘공기청정기’에 대하여도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장을 공기살균기 판매시장으로 제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한 다음, ‘VIRUS KILLER’라는 기술적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다) 공기청정기의 시장규모는 2009년 약 1조 4,000억 원인데 비하여 피고의 2009년 매출액은 약 38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피고는 약 0.2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공기청정기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매출액은 2009년을 정점으로 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과 관련하여 10년 동안 지출된 광고비는 약 9,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정도로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10년 동안 신문 광고, 잡지, 인터넷 광고, 방송 출연의 횟수 역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이 관공서, 종합병원, 대학교 등 다수인의 방문 및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되거나 일부 방송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장소에 방문하거나 방송을 시청한 모든 사람들을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의 수요자 내지 구입자와 동일시하기는 곤란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이 사람들의 동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석이나 벽에 설치된 점을 고려할 때, 위 장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시청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우수제품 인정서, 각종 수상경력은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제품의 기

술적 우수성과 관련된 자료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우수제품으로서 인정을 받은 기간도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로 그칠 뿐이다.

바)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장을 공기살균기 판매시장으로 제한하여 본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의 ‘공기살균기’ 제품을 검색 결과 대부분 다른 회사들의 제품이 다수 검색되고 있는 점, 공기살균기 판매시장 자체의 규모 및 그 시장 내에서의 다른 경쟁업체의 매출액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의 시장점유율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제품이 공기살균기 판매시장에서 전국적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결정일 당시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공기살균기’와 관련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4.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공기살균기’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법하다.

#### 5.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_\_\_\_\_

                 판사      권동주 \_\_\_\_\_

                 판사      김동규 \_\_\_\_\_

# IV



## 취 소

1. 2015허6978 등록취소(73-1-2)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5허6978 등록취소(상)
원	고	김○○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진호
피	고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23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민인기, 안길한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환송 전 판결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허823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27.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등록번호 제26443호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제1항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2. 8. 7. 2011당32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26443호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별지 1 기재 지정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제26443호/2007. 7. 16./2009. 2. 10.

(2) 구성 : **소녀시대**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별지 2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 나. 실사용상표

(1) 구성 : 

(2) 사용상품 : 의류(TOP, OUTER, SKIRTS, PANTS), 가방(BAG), 신발(SHOES), 액세서리(ACC)

(3) 사용자 : 원고

#### 다. 대상상표서비스표

(1) 구성 : **Girls' Generation** (당초 피고는 티셔츠에 표시된  만을 대상표장으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음반 등에 대상표장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등과 같이 다양한 표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표장들은 글자체나 색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Girls' Generation'이라는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다).

(2)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 : 음반, 음원,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

연업, 광고모델업

(3) 사용자 : 피고

## 라. 이 사건 심결 및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 12.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3288호로 심리한 후 2012. 8. 7.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9. 6. 이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3. 위 소 중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2013. 2. 28.자 서비스표권의 포기 그 효력을 다툰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2013. 5. 15. 대법원에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10. 15.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에 관한 소는 이 법원에서 부적법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만이 상고된 후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다.

### 3.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심판 진행 도중인 2012. 8. 3. 특허심판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2012. 8. 7. 이 사건 심결을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7조의9, 제77조의22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실사용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김희경에게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바도 없다.

(나) 실사용상표  과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는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소녀시대’라는 9인조 여성그룹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뿐, ‘소녀시대’ 또는 ‘Girls' Generation’이라는 표장으로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9인조 여성그룹인 ‘소녀시대’를 동일체로 볼 수 없어 위 ‘소녀시대’가 가수로서 유명해졌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상품도 유명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피고가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증거로 제출한 티셔츠 사진(을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대상상표서비스표는 디자인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실태, 사용 내역, 주지의 정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 겨울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irlsage.co.kr](http://www.girlsage.co.kr))를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이로써 위와 같이 실사용상표가 사용될 무렵 ‘음반, 음원,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 내지 사용서비스업과 사이에 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실사용상표를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동생인 김희경에게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이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의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 조 제6항 단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을 제53 내지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상고심에 계속중이던 2013. 5. 2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당1370호(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상품류 25류의 상품 328건을 취소 대상으로 한다. 이하 괄호안에 각 사건의 취소 대상인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을 기재한다), 2013당1371호(상품류 28류 386건), 2013당1372호(상품류 29류 389건), 2013당1373호(상품류 30류 395건), 2013당1374호(상품류 31류 299건), 2013당1375호(상품류 32류 78건), 2013당1376호(상품류 33류 60건)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위 각 사건의 각 지정상품을 모두 합한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이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4. 30. 위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등에 의하여 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각 심결을 하였다.

(3) 이후 2013당1370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한 심결은 2014. 5. 31. 그 대로 확정되었고, 2013당13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4. 5. 9. 이 법원 2013허3651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가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심결은 2015. 3. 20.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상표권은 위 각 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중 상표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는 등록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심결취소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6.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아래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서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로부터 변형된 정도 및 타인의 상표와 근사한 정도, 실제로 사용된 상표와 타인의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형태 및 사용상품간의 관련성, 각 상표의 사용 기간과 실적 및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등에 비추어,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두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1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는 2011. 1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소녀시대’(www.girlsage.co.kr)의 판매 화면에 실사용


상표인 ‘’를 표시하고, 그 아래에 판매 대상 상품으로 ‘의류

(TOP, OUTER, SKIRTS, PANTS), 가방(BAG), 신발(SHOES), 액세서리(ACC)'를 나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우선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실사용상표 'G GIRLS' GENERATION'는 영문자 'Girls' 및 'Generation'이 상하 2단으로 구성된 문자표장으로서 그 영어식 발음에 따라 '걸스 제너레이션'으로 호칭되는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는 한글 '소녀시대'만으로 구성된 문자표장으로서 그 구성문자에 의해 '소녀시대'로 호칭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나, 을 제11, 12, 13, 2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사용상표는 '소녀들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girls'와 '세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generation'이 단순 결합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소녀들의 세대' 정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점, ② 실사용상표가 사용될 무렵 'Girls' Generation'은 9인조 여성그룹인 '소녀시대'의 영문 명칭 내지 별칭으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의류(TOP, OUTER, SKIRTS, PANTS), 가방(BAG), 신발(SHOES), 액세서리(ACC)'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은 '외투, 청바지, 재킷, 코트, 팬츠, 반바지, 스커트, 티셔츠, 탱크탑, 스카프, 머리띠, 숄, 목도리, 캐디백, 스노우 슈즈, 골프가방' 등이다. 이와 같이 양 상품은 그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당 부분 공통되므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는지 여부

(가) 우선, 원고의 실사용상표가 피고의 대상상표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실사용상표 ‘’과 피고의 대상상표서비스표 ‘Girls' Generation’은 글자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은 동일하지 않으나, 모두 ‘걸스 제너레이션’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대상상표서비스표가 알려진 정도에 관하여 본다.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1, 20 내지 4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1995년 설립된 이래 음반의 제작·유통·판매업, 연예대행업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로서 소속 연예인으로는 보아, 동방 신기, 슈퍼주니어 등이 있는데, ‘Girls' Generation’은 피고에 소속되어 2007. 8. 2. 데뷔한 9인조 여성그룹인 ‘소녀시대’(이하 ‘이 사건 그룹가수’라고 한다)의 영문 명칭 내지 별칭이다.

② 피고는 그 소속 남성그룹인 ‘슈퍼주니어’의 성공을 계기로 여성그룹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9명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가창과 안무를 가르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07. 7. 6.부터 위 구성원들을 한 명씩 인터넷 UCC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2007. 7. 16. 위 구성원들 전체의 단체 영상을 공개하였고, 2007. 8. 2. 이 사건 그룹가수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 ‘다시 만난 세계’를 제작·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그룹가수의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는 2007. 8. 27.부터 2007. 9. 2.까지 1주일간 집계된 방송 횟수에서 총 247회로 1위, 네이버 가수 검색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고, 2007. 10. 11. 방송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7년 신인 가수 싱글 앨범 판매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③ 피고는 2007. 11. 1. 이 사건 그룹가수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소녀시대’를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소녀시대’는 2007. 11. 25.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뮤티즌송’에 선정되었고, 그 후속곡인 ‘Kissing You’도 각종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위 ‘소녀시대’ 앨범과 2008. 3. 13.

발매된 리패키지 앨범인 ‘Baby Baby’의 음반 판매량 합계가 12만 장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 그룹가수는 데뷔 1년 만에 음반 판매량 10만 장을 넘긴 첫 번째 여성 가수가 되었다.

④ 피고는 2009. 1. 5. 이 사건 그룹가수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 ‘Gee’를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Gee’는 공개된 지 2일 만에 엠넷, 멜론, 도시락 등 각종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09. 3. 13. 방송된 ‘KBS 뮤직뱅크’에서 9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위 ‘Gee’ 앨범은 2달 동안 10만 장 이상의 음반이 판매된 것을 비롯하여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으로 120만 건 이상이 판매되었고, 싸이월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도 35만 건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라디오, 지상파, 케이블을 합한 총 방송 횟수가 1,536회에 이르렀다.

⑤ 피고는 2009. 6. 29. 이 사건 그룹가수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인 ‘소원을 말해봐’를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소원을 말해봐’는 공개된 지 4일 만에 각종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09. 7. 10. 방송된 ‘KBS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위 ‘소원을 말해봐’ 앨범은 1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다.

⑥ 피고는 2010. 1. 28. 이 사건 그룹가수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Oh!’를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Oh!’는 ‘KBS 뮤직뱅크’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SBS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뮤티즌송’에 선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0. 3. 22. 발매된 리패키지 앨범인 ‘Run Devil Run’도 15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다.

⑦ 피고는 2010. 10. 27. 이 사건 그룹가수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인 ‘훗’을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훗’은 ‘KBS 뮤직뱅크’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SBS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뮤티즌송’에 선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⑧ 피고는 2011. 10. 19. 이 사건 그룹가수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인 ‘The Boys’를 제작·판매하였는데, 그 타이틀곡인 ‘The Boys’는 공개된 지 1주일 만에 ‘KBS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엠넷 엠카운트다운’ 등 주요 음악프로그램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⑨ 피고는 위 ② 내지 ⑧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총 9장의 음반(이

하 ‘소녀시대 음반들’이라 한다)을 제작·판매하였고, 소녀시대 음반들의 총 판매량과 연간 판매 순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소녀시대 음반들의 전면에는 공통적으로 ‘소녀시대’ 또는 ‘Girls’ Generation’이라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와 함께 ‘소녀시대’, ‘Baby Baby’, ‘Gee’ 등과 같은 타이틀곡 제목과 구성원들의 사진 등도 표시되어 있다.

분류	음반명	발매일	연간 순위	총 판매량
싱글 1집	다시 만난 세계	2007. 8. 2.	9위	51,416
정규 1집	소녀시대	2007. 11. 1.	7위	112,996
리팩 1집	Baby Baby	2008. 3. 13.	14위	82,909
미니 1집	Gee	2009. 1. 5.	1위	113,249
미니 2집	소원을 말해봐	2009. 6. 29.	5위	116,411
정규 2집	Oh!	2010. 1. 28.	1위	210,717
리팩 2집	Run Devil Run	2010. 3. 22.	6위	159,681
미니 3집	훗	2010. 10. 27.	3위	174,722
정규 3집	The Boys	2011. 10. 19.	2위	385,348

⑩ 이 사건 그룹가수는 2007년에 제2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신인상 및 인기상, 제15회 한국인기연예대상 신세대 신인가수상, 제5회 외신홍보상,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신인가수상, 아시아모델상시상식 가수상 등을 수상하였고, 2008년에도 Mnet 20s Choice 스위트 뮤직부문상, 제15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그룹가수상, 제5회 아시아송페스티벌 아시아 최고가수상, 제17회 서울가요대상 신인상, 하이원뮤직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이 사건 그룹가수와 관련된 기사가 신문이나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

⑪ 이 사건 그룹가수는 2007년경부터 소녀시대 음반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음악 공연 활동을 해 왔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출연하였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Mnet의 ‘소녀 학교에 가다’(2007. 7. 27. 부터 2007. 9. 21.까지), MTV의 ‘MTV 소녀시대’(2007. 9. 27.부터 2007. 11. 1.까지), MBC의 ‘박경림의 화려한 외출 시즌2’(2008. 4. 5.부터 2008. 7. 5.까지), Mnet의 ‘소녀시대 팩토리 걸’(2008. 10. 8.부터 2008. 12. 17.까지), KBS

의 ‘소녀시대의 헬로 베이비’(2009. 6. 23.부터 2009. 11. 17.까지) 등이 있다.

⑫ 이 사건 그룹가수는 위와 같은 음악 공연 및 방송 출연 활동에서 얻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07년경부터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엘리트 학생복’, ‘엘레쎌’, ‘굽네치킨’, ‘썸키스트’, ‘Viliv’, ‘애니콜’,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그룹가수가 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원고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할 무렵까지 약 4년 5개월의 기간에 걸쳐, 일반공중에 대한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통한 가수공연·음악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 등의 활동과 음반·음원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이 사건 그룹가수의 명칭 ‘Girls’ Generation’은 피고의 전체적인 기획·관리에 따라, 이 사건 그룹가수 음반들에서 각 음반 저작물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그룹가수의 가수공연·음악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 등의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사용되었던 점, ③ 그리고 위 명칭은 이 사건 그룹가수 음반들의 판매량과 그에 수록된 곡들의 방송횟수 및 인기순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그룹가수의 관련 기사보도, 수상경력 및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 활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그룹가수의 명칭과 같은 구성의 대상상표서비스표는 피고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 및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의 사용서비스업에 대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 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사용상품·서비스업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는지 여부

이상과 같이 ① 대상상표서비스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인식 정도는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②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로부터 상당한 변형이 가해진 것으로서 구성 문자가 2단으로 배열되고 일부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나 동일한 문자로 구성된 대상상표서비스표와 그 전체적인 표장

이 매우 유사한 점, ③ 실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과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피고의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과 사이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상표서비스표권자인 원고의 고의 유무

(가)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자·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4315 판결 등 참조). 이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와 같은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저명성에 비추어 그와 유사한 실사용상표의 사용행위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부정 사용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대상상표서비스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한편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사용상표가 위 김희경이 아닌 원고에 의해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부분인 이 사건 심결 중 별지 1 기재 지정서비스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_____
	판사	권동주	_____
	판사	김동규	_____

[별지 1]

### 지정서비스업의 표시(2013. 2. 28. 출원포기된 것)

간행물광고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문출판업, 광고물 제작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배포업, 광고물작성업, 광고물출판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배너광고업, 신문잡지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웹사이트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이동전화를 이용한 광고업, 인터넷 온라인통신망을 통한 광고배포업,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통신매체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사진복사업, 상품 및 서비스업 라이선싱의 상업적 관리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그림물감 소매업, 액자 소매업, 전자응용기기/컴퓨터 소프트웨어/전자관 소매업, 연예인매니저업. 끝.

[별지 2]

##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표시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면제 코트, 스노우보드용 슈트, 신사복, 아동복, 오버롤(Overall), 테니스반바지, 겹옷, 골프바지, 골프복, 골프용 잠바, 가면무도회복, 가죽제 바지, 데님제 코트,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아노락(Anorak){운동용은 제외}, 의사용 가운, 청바지, 콤비, 테니스복, 교복, 낚시복, 발한용 바지, 스노우보드 재킷, 스모킹재킷, 스케이트보드복, 오버트라우저, 테니스용 스커트, 파카(Parkas), 남성정장, 반코트, 버뮤다 쇼츠, 스포츠외투, 케이프(Cape), 투피스, 피혁제 드레스, 레인코트, 망수용 재킷, 숙녀용 슈트, 스케이트보드 바지, 웨딩드레스, 인라인스케이트복, 털재킷, 롱재킷, 무용복, 발레복, 스모크(Smocks), 유아복, 종이옷, 골프용 스커트, 모닝코트, 모피제 의류, 스키복, 유아용 바지, 작업복, 작업용 유니폼, 재킷, 코트, 사파리, 스노보드복, 인조가죽옷, 채저블(Chasubles), 가죽제 슈트, 기성복, 롱코트, 망토, 스케이트복, 어부용 재킷, 예복, 이브닝드레스, 작업용 오버롤, 트렌치코트, 팬츠, 낚시용 바지, 등산복, 블루존(Blouzon), 스키 재킷, 양복바지, 텍시도(Tuxedo), 튜닉(Tunic), 낚시용 재킷, 반바지, 사이클복, 커버롤, 가죽옷, 가죽팬츠, 더스트코트, 스노우보드 바지, 트윈세트, 간호사용 가운, 개버딘제 옷, 기모노, 모직 재킷, 바람막이용 조끼, 방한복, 사리(Saris), 스웨이드 재킷, 스키용 바지, 스포츠재킷, 웨딩가운, 윈드코트, 그레이트코트, 등산바지, 바람막이 재킷, 방한 재킷, 블레이저, 슈트, 스커트정장, 슬랙스(Slacks), 오버코트, 잠바[점퍼], 펠리스(Pelisses), 프록(Frocks), 헤비재킷, 드레스, 드레스슈트, 리버리(Liveries), 숙녀용 바지, 스커트, 신생아용 옷, 여성용 예복, 원피스, 탑코트, 토가(Togas), 배자, 마고자, 동정, 한복속옷, 저고리, 한복, 두루마기, 한복바지, 한복치마, 니트웨어, 블라우스, 여성 수영복, 니트 속옷, 반팔셔츠, 속바지, 속셔츠, 수영팬츠, 의류용 칼라, 짜거나 뜯 속옷, 코르셋(속옷), 해변용 의류, 거들, 네글리제, 바디스, 박서쇼츠, 속팬티, 스위트셔츠, 슬립(속옷), 운동용 유니폼, 조끼, 파자마, 팬티, 골프용 조끼, 나이트가운, 땀복, 반팔 또는 긴팔 셔츠, 셔츠요크, 슈트용 셔츠, 와이셔츠, 저지(Jerseys), 티셔츠, 스포츠용 저지, 콤비네이션내의, 농구팬츠, 보디스[코르셋], 슈미즈, 워밍업용 운동복, 칼라보호대(Col

lar protectors), 골프셔츠, 낚시용 조끼, 드레스가운, 레슬링복, 리어타드, 베이비돌파자마, 비치웨어, 오픈넥셔츠, 가운, 남성용 수영복, 마라톤복, 배구복, 긴팔셔츠, 남방셔츠, 셔츠요크, 슈미젯(Chemisettes), 체조복, 코슬렛(Corselets), 폴로셔츠, 어깨끈 없는 브래지어, 트레이닝복, 트레이닝슈트, 풀오버(Pullover), 니커, 드레스셔츠, 등산용 조끼, 목욕가운, 브래지어, 속내의[속옷], 탱크탑, 트랙슈트, 피켓셔츠, 롬퍼즈, 샤워캡, 수영복, 스웨터, 짧은소매 스포츠셔츠, 카디건, 칼라, 팬티스타킹, 페티코트(Petticoats), 농구복, 런닝복, 메리야스제품, 배드민턴복, 보디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칼라커피스, 런닝셔츠, 분리형 칼라, 소매없는 저지, 조깅슈트, 드레싱가운, 땀흡수내의, 만틸라(Mantillas), 셔츠, 셔츠프런트, 속치마, 여성용 속옷, 잠옷, 조깅 팬츠, 짧은조끼, 케미솔(Chamisoles), 내의[속옷], 수영모자, 테디(Teddies), 유니타드, 커피스, 트리코제 파자마, 파레우, 버선, 서라피(Serapes), 여성용 모피목도리, 운동용 스타킹, 의류용 소맷부리, 수녀용 머리수건, 실크스카프, 양복 장식용 손수건(Pocket squares), 나비넥타이, 수대(手帶), 스톨(Stoles), 의류용 호주머니, 각반(脚絆), 숄더랩(Shoulder wraps), 애스콧타이(Ascots), 의복용 장갑, 모피 머프, 버선커버, 손목밴드, 스카프, 양말커버, 래그워머, 양모양말, 트리코제 솔, 남성양말, 병어리장갑, 비종이제 턱받이, 스웨트밴드, 스타킹, 머리띠(의복), 모피스톨, 반다나(Bandana)[목도리], 발목양말, 솔 및 스톨, 베일(의복), 솔, 파레오, 헤드스카프(의복), 넥타이, 머프(Muffs), 목도리, 발싸개, 수면 안대[수면용 눈가리개], 의류용 장식띠, 기성복안감, 보아(모피목도리), 에이프린, 방한용 귀마개, 비전기식 보온용 발싸개, 양말, 직물제 기저귀, 레깅스(Leggings),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네커치프, 발한방지양말, 방한용 장갑, 스타킹뒤틀꿈치를 덧댄 부분, 땀흡수 스타킹, 숄더스카프, 옷커버, 크라바트, 타이츠(Tights), 퍼러린(Pelerines), 가죽제 모자, 모자, 관(冠), 챙달린 모자, 야구모자, 골프용 모자, 니트모자, 어린이용 모자, 테없는 모자, 남바위, 양모제 모자, 의류용 후드(두건), 종이 모자, 베레모, 터번, 나이트캡, 모자챙(Sun visors), 톱햇(Top hat), 모자틀, 사교관(司敎冠), 모피 모자, 망건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고무제 완구,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오락기{TV 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는 제외}, 모빌 완구, 완구용 블록, 장난감 곰, 장난감용 가면, 포제(布製) 완구, 공기팽창식 완구, 마네킹 인형, 어린이용 걸음마

차, 완구용 가구, 완구용 하모니카, 축소모형차량, 눈없는 달마인형, 모형승용차, 시계태엽장치 장난감, 인형, 공기팽창식 얇은 고무제 완구, 비눗방울(장난감), 인형용 방, 장난감 권총, 축제용 마스크, 마스크트인형, 박제인형 및 동물, 완구악기, 인형집, 플라스틱제 완구, 어린이용 흔들목마, 완구용 인형, 꼭두각시인형[마리오네트인형], 인형용 우유병, 건축완구세트, 금속제 완구, 인형용 피복, 인형집용 가구, 장난감 공기권총, 딸랑이장난감, 박제인형, 어린이용 삼륜차, 완구용 실로폰, 완구용 집, 완구용 피아노, 인형옷, 지제(紙製) 완구, 완구, 목수공구 완구세트, 연극용 가면, 완구시계, 인형용 슈즈, 장난감 차, 전통서양식 인형, 박제완구, 세트완구, 원격조종 장난감 차, 목제(木製) 완구, 블록쌓기(장난감), 완구용 공, 완구용 뇌관, 완구용 원반, 완구용 철금(鐵琴), 팽이, 장난감, 등재 완구, 손가락인형[퍼핏], 완구용 스쿠터, 장난감 미끄럼대, 레버액션 장난감, 어린이용 모형승용차, 장난감 가면, 인형용 모자, 인형침대, 장난감 권총용 뇌관, 오락용구, 과자가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폭죽,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당구큐용 초크, 도미노놀이용구, 보드게임, 실내축구게임용 테이블, 코작(Cosaques), 다트, 당구공, 마술용구, 마작용구, 색종이조각(놀이용품), 전자표적, 체스판, 게임용품, 고리게임용구, 자동슬롯머신, 파티선물용 깜짝상자, 피나타(Pinatas), 바둑알, 빙고카드, 당구용 점수판, 연얼레, 주사위, 바둑판, 회전식추첨기, LCD가 있는 포켓용 게임용구, 연, 장기짜, 장기판, 체스용구, 게임용 원반계수기, 놀이용 구슬, 당구큐팁, 룰렛 휠(Roulette wheels), 화투, 동전작동식 당구대, 수영장(놀이용품), 트럼프, 깜짝상자, 만화경, 전자오락기구{TV수상기전용 사용기구는 제외}, 주사위용 컵, 체스짜, 컴퓨터전자오락기구{TV수상기전용 사용기구는 제외}, 퍼즐용 그림조각, 당구큐, 던지기놀이용 고리, 실내놀이용품, 체커판, 서양주사위놀이구, 자동식 오락기구{동전작동식과 TV수상기전용사용기구는 제외}, 당구대용 쿠션, 빠짱꼬기구, 체커용구, 퍼즐, 풍선, 골패(骨牌), 구슬, 당구대, 동전작동식 오락기구, 편자던지기게임기구, 경기용 공의 바람주머니, 골프채용 가방, 구기경기용 네트, 남성용 복부보호대{스포츠용품}, 라켓, 런닝머신(Running machine), 서핑보드용 가방, 스포츠용 작살총, 야구배트케이스, 야구배팅용 장갑, 야구용 베이스, 역기용 장갑, 운동기계, 운동용 고정식 자전거, 운동용 공, 육상경기용 해머, 탁구공, 테니스네트, 패러글라이더, 하키스틱, 스포츠용구, 검도용 마스크[검도용 면], 골프용 잔디관리기, 등산

용 안전장착대(安全装着帶), 볼링용 볼, 스퀴시, 스타팅 블록, 육상경기용 바, 육상경기용 투창, 검도용 동구[검도용 가슴받이], 도약판, 복싱용 미트, 서핑보드, 스노우 글로브, 스케이트보드용 가방, 스키용 바닥덮개, 스키용 장갑, 스포츠도구용 화살통 형태의 케이스, 안마, 야구용 배트, 양궁용구, 운동용 네트, 운동용 승강그물, 탁구라켓케이스, 테니스공케이스, 트램폴린(Trampoline), 화살통, 검도용 장갑, 경기용 원반, 골프채, 배팅글러브, 스포츠용 정강이보호대, 클레이사격용 접시표적, 테니스공, 평균대, 포일(펜싱용 칼), 호흡관[잠수용 스노클], 덤벨샤프트, 릴레이 바통, 보디빌딩기구, 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봅슬레이, 스윙핀, 스케이트보드, 스키용 덮개, 야구공, 야구글러브, 윈드서핑용 세일보드, 체조용구, 테니스 및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라켓, 펜싱장갑, 하키펠, 농구공, 바디 보드, 복싱용 샌드백, 빙상스케이트, 사냥용 위장막(스포츠용품), 송구공, 수영용 오리발, 스키 및 서프 보드용 가방, 스키날, 스키용 가방, 스키 케이스, 스포츠용 썰매, 시소(운동기구), 아이스케이트 날, 야구용 마스크, 야구용 미트, 양궁, 엑스밴드, 운동용 승강로프, 운동용 장갑, 탁구대, 고무제 공, 골프장갑, 권투장갑, 바벨, 복싱용 마우스피스, 볼링용 글러브, 사이클용 장갑, 소프트 테니스공, 스키폴, 운동용 흉부신장기, 윈드서핑용 돛 및 세일보드, 잠수용 오리발, 페인트총용 탄약, 경기용 배트, 라켓용 장갑, 복싱용 글러브, 스키용 스크레이퍼, 스포츠용 새총(Sling shots), 운동선수용 로진(rosin), 운동용 스타팅 블록, 줄넘기용 줄, 체조용 락, 풋볼 또는 축구공, 활시위, 경기용 공, 과녁, 무릎보호대, 벨트바이브레이터(Belt vibrator), 서포터, 서핑 보드용 끈, 소형요트용 돛대, 수영용 보드, 아령, 알파인스키용 바인딩, 육상경기용 포환, 철봉, 클레이사격용 접시사출장치, 투창, 하키펠, 허들, 경기용 장갑, 골프채 그립, 골프채 샤프트, 라켓 및 라켓줄, 롤러스케이트, 배구공, 복근대, 볼링백, 야구용 흉부보호대, 카리베나, 캐디백, 크리켓가방, 탁구네트, 흉부신장기, 경기용 피스톨, 복싱연습용 펀치볼, 소형요트용 하니스(harness), 워터슬라이드, 체조용 링, 체조용 안마, 크리켓채, 행글라이더, 고무제 야구공, 볼링장치 및 기계, 사냥용 동물 유인음 발생기, 소프트볼공, 수상스포츠용 보드, 스키용 썰, 스포츠용 미끄럼대, 에페(펜싱용 칼), 치닝바(Chinning bar), 테니스 및 배드민턴 라켓케이스, 경기용 작은공, 골프공, 궁도용 팔찌, 라켓줄, 목마(스포츠용품), 배드민턴공, 배턴, 서핑스키, 스노우 슈즈, 스노우보드용 바인딩, 스케이트날이

붙은 스케이트화, 스키화 고정장치, 스포츠용 조립식 풀, 체조용 도약판, 탁구 라켓, 테니스네트 및 기둥, 퍼팅연습용 매트, 평행봉, 활, 검도용 목도, 검도용 죽도, 골프용 점수판, 골프티, 볼링핀, 스키, 신체재활기구, 육상경기용 서클, 인공등반벽, 장대높이뛰기용 막대, 테니스용 볼 투척기, 하키장갑, 화살, 흉부 보호대, 골프가방, 골프채 헤드커버, 구좌, 비의료용 로잉머신(Rowing machine), 스키삭(Sac), 스프링보드, 아이스스케이트, 양궁용 표적, 역도용 벨트, 운동용 고정식 자전거롤러, 체조용 철봉, 펜싱용 보호대, 펜싱용 사브르, 펜싱용 장갑, 하키용 보호대, 홈베이스, 골프채 헤드, 골프채용 커버, 그네{스포츠용품}, 라켓용 보호덮개, 서바이벌 게임용 페인트총, 수구공, 수상스키, 스키바인딩용 커버, 스키스틱, 원반, 체력단련용 벤치, 축구공, 펀치볼, 펜싱용 마스크, 펜싱용 칼, 낚시그물, 입질표시센서, 낚시용구, 낚시바늘, 낚시용구케이스, 낚시릴,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줄용 야잠사(野蠶絲), 견지, 낚시 받침대, 낚시대 케이스, 낚시도구, 낚시대, 낚시용 갈고리, 낚시찌, 낚시봉, 낚시줄, 뜰채, 입질표시기, 낚시용 가짜미끼, 낚시크릴(Creels)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냉동된 완두콩, 냉동콩, 냉동한 두류, 식용 가공꽃가루, 냉동당근, 냉동생강, 냉동오이, 냉동머위, 냉동버섯, 냉동인삼, 냉동죽순, 냉동고사리, 냉동양파, 냉동가지, 냉동배추,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냉동마늘, 과실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가공된 올리브튀레, 마말레이드, 보존처리한 레몬, 보존처리한 잣, 보존처리한 포도, 설탕을 입힌 과일, 잼, 건포도, 보존처리된 재배허브, 보존처리한 멜론, 양념된 피클, 채소수프, 감자 플레이크(flake), 건조된 과일[건조과일], 껍질 벗긴 토마토, 보존처리한 딸기, 보존처리한 모과, 보존처리한 밤, 분말아몬드, 알콜보존처리된 과일, 채소샐러드, 통조림토마토, 피카릴리(Piccalilli), 깍두기, 단무지, 보존처리한 복숭아, 감자튀김, 건시[꽃감], 보존처리된 과일[냉동한 과일은 제외], 보존처리된 양파, 요리된 채소, 절임 오이, 코코넛분말,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소금에 절인 과일, 요리용 토마토주스, 과일껍질, 과일칩{식품}, 오가리(건조한 채소), 채소튀레, 토마토튀레(Puree), 포테이토허프{식품}, 건조된 과일믹스, 김치, 보존처리된 버섯[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한 바나나, 채소수프용 조제품, 크로켓, 튀김감자, 보존처리한 밀감, 장아찌, 통조림 또는 병조림채소, 가공된 인삼, 과육, 코코넛버터,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소금에 절인 양배추, 코코아

버터, 과일샐러드, 동치미, 보존처리된 견과류(냉동한 것은 제외), 보존처리한 은행, 스투 요리된(Stewed) 과일, 올리브 페이스트, 크랜베리(Cranberry) 소스, 피넛버터, 건조된 채소[건조채소], 발효채소식품[김치], 보존처리한 사과, 보존처리한 살구, 보존처리한 호두, 타이니(Tahini), 피클, 건조된 코코넛, 과일을 주원료로 한 스낵, 대추야자열매, 보존처리된 올리브, 사과튀레(Apple puree), 통조림된 과일, 가공된 호두, 건조무화과, 보존처리된 송로버섯, 보존처리한 배, 설탕에 절인 과일, 초콜릿넛버터, 토마토엑기스, 통조림된 채소, 과일 및 채소샐러드, 과일젤리, 보존처리한 대추, 생강잼, 포테이토스틱, 통조림 또는 병조림과일, 통조림올리브, 요리용 채소주스, 두유, 두유(우유대용품), 농(濃)두부, 두부가공식품, 두부, 보존처리된 완두콩, 보존처리된 렌즈콩, 보존처리된 식용대두, 휴머스[병아리콩 페이스트], 보존처리된 콩, 보존처리한 두류,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가공한 땅콩, 냉동한 과실, 냉동한 과일, 식육, 닭고기, 돼지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家禽) [살아있지 않은 것], 토끼고기, 꿩고기, 엽조수[살아있지 않은 것], 오리고기, 말고기, 건조란,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달걀노른자위, 식용란(卵), 난(卵)가공식품, 분말달걀, 동결란, 달걀흰자위, 식용 달걀흰자위, 레닛(Rennet), 농축부용, 건조된 고기, 고기엑기스, 농축브로쓰, 비프스테이크, 육류내장품, 간으로 만든 파테(Pate), 간으로 만든 페이스트, 소 위(胃), 식용 제비등지, 가공된 고기, 으깬 소시지, 햄, 간(肝), 브로스(Broth), 블랙푸딩[블러드소시지], 식용 젤라틴, 통조림된 고기[통조림육], 보존처리된 고기, 육류가공식품, 부용(Bouillon), 가공한 식육, 소시지, 쇠고기조각, 식용 골수, 돈가스, 소금에 절인 고기, 조리된 통조림고기, 가공된 쇠고기, 식용 단백질, 육포, 부용제조제, 샤르꾸테리(Charcuterie), 튀긴 고기, 고기젤리, 베이컨, 햄버거용 고기, 발효유, 케피르(우유음료), 우유 단백질, 쿠미스(우유음료), 마시는 요구르트, 분유(유아용은 제외), 사와(Sour), 요구르트, 콘텐스트밀크, 숙성치즈, 팽팽한 치즈, 땅콩을 함유한 우유음료, 우유크림분말, 유산균음료, 유(乳)가공식품, 우유크림, 신선한 미숙성치즈, 유제품, 치즈 스프레드, 연유, 연질하얀치즈, 요구르트 음료, 우유를 주성분으로한 우유음료, 생크림, 양유, 하얀 치즈, 아몬드를 함유한 우유음료, 유장(乳漿), 몰드숙성치즈, 산양유, 연질치즈, 응유(凝乳), 치즈가루, 우유, 빵조각에 바르는 지방함유품, 식용 카세인, 양치즈, 유산음료, 치즈, 힝크림(Wh

ipped cream), 버터, 버터크림, 식용 유지(油脂), 쌀겨유, 채소유지, 해바라기유, 유지가공식품, 식용 골유, 식용 라드(Lard), 식용유, 혼합유, 식용 옥수수기름, 식용 유채기름, 식용 코코넛지방팜유, 식용 들기름, 식용 땅콩기름, 식용 지방, 식용 팜핵유, 식용 평지기름, 코코넛지방, 식용 소맥유, 식용 펙틴(Pectin), 식용 경화유(硬化油), 식용 올리브유, 식용 참기름, 식용 면실유, 식용 분말유지, 식용 우지(牛脂), 동물성 유지, 식용 고래기름[식용 경지], 식용 콩기름, 식용지방제조용 지방질물질, 옥수수기름, 참기름, 쇼트닝, 팜유, 식용 라놀린, 골유, 식용 어유(魚油), 식용 해바라기유, 코코넛기름, 코코넛유지, 식용 팜유, 식용 동물기름, 식용 아마인유, 마가린,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통조림달팽이, 벌레가공식품, 식용 번데기, 조리된 달팽이, 식용 달팽이알, 굴{살아있지 않은 것}, 콩치{살아있지 않은 것}, 미꾸라지{살아있지 않은 것}, 바지락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밴댕이{살아있지 않은 것}, 우렁챙이{살아있지 않은 것}, 자라{살아있지 않은 것}, 농어{살아있지 않은 것}, 붕어{살아있지 않은 것}, 소라{살아있지 않은 것}, 멸치{살아있지 않은 것}, 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광어{살아있지 않은 것}, 성게{살아있지 않은 것}, 정어리{살아있지 않은 것}, 청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가자미{살아있지 않은 것}, 명태{살아있지 않은 것}, 병어{살아있지 않은 것}, 볼락{살아있지 않은 것}, 왕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전어{살아있지 않은 것}, 게{살아있지 않은 것}, 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전갱이{살아있지 않은 것}, 해삼{살아있지 않은 것}, 홍합{살아있지 않은 것}, 대합{살아있지 않은 것}, 말린 청어알, 멸치젓, 복어{살아있지 않은 것}, 전복{살아있지 않은 것}, 넙치{살아있지 않은 것}, 돔{살아있지 않은 것}, 문어{살아있지 않은 것}, 청어{살아있지 않은 것}, 캐비어,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성게알젓, 조기{살아있지 않은 것}, 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낙지{살아있지 않은 것}, 바다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살아있지 않은 생선, 연어{살아있지 않은 것}, 오징어{살아있지 않은 것}, 준치{살아있지 않은 것}, 홍어{살아있지 않은 것}, 황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갈치{살아있지 않은 것}, 고등어{살아있지 않은 것}, 굴조개{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알젓, 돌고래{살아있지 않은 것}, 삼치{살아있지 않은 것}, 상어{살아있지 않은 것}, 소금에 절인 연어알, 가오리{살아있지 않은 것}, 녹새치{살아있지 않은 것}, 도미{살아있지 않은 것}, 가재{살아있지 않은 것}, 소금에 절인 생선, 양미리{살아있지 않은 것}, 은어{살아있지 않은 것}, 참

치(살아있지 않은 것),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대구(살아있지 않은 것), 방어(살아있지 않은 것), 붕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쥐치(살아있지 않은 것), 가물치(살아있지 않은 것), 뱀장어(살아있지 않은 것), 보리멸(살아있지 않은 것), 송어(살아있지 않은 것), 식용 개구리(살아있지 않은 것), 잉어(살아있지 않은 것), 참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식품용 한천, 식품용 해조류추출물, 모자반(가공한 것), 미역(가공한 것), 클로렐라(가공한 것), 툇(가공한 것), 가공한 감태, 파래(가공한 것), 청각(가공한 것), 해태(가공한 것),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다시마(가공한 것), 식용 알긴산염, 구운 김, 해초가공식품, 가공한 꼬시레기, 식용 부레풀, 보존처리된 생선, 생선묵, 통조림된 생선, 식용 어분(魚粉), 보존처리한 어패류, 생선을 저민 조각, 생선가공식품, 건제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생선소시지, 수산물의 통조림 및 병조림, 훈제어패류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식용 메밀가루, 식용 세몰리나, 식용 사고(Sago), 식용 현미가루, 쌀[백미], 으깬 귀리, 식용 보리가루, 식용 타피오카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탈곡한 귀리, 밀가루, 식용 감자가루, 쌀가루, 으깬 보리, 찹쌀만두제조용 가루, 도정(搗精)한 곡물, 식용 전분, 보리가루, 식용 갈분(葛粉), 콩가루, 뮤즐리, 빵은 밀, 식용 울무가루, 식용 쌀가루, 옥수수가루, 탈곡한 쌀, 감자가루, 부침용 곡물가루, 탈곡한 보리, 사고(Sago), 타피오카, 식용 겉겨를 없앤 귀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세몰리나(Semolina), 건조조리된 밥, 곡물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곡물조제품, 귀리를 주성분으로한 식품, 곡물로 만든 칩(Chips), 리본 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초밥, 핫도그, 냉면, 쌀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타코(Tacos), 곡물가공식품, 굵게 간 옥수수, 귀리플레이크, 샌드위치, 스파게티, 파스타(Pasta), 귀리플레이크, 수프용 파스타, 인조미, 전, 가공한 곡물, 곡물소시지, 곡분제 페이스트, 만두, 우동, 인스턴트 소바국수, 마카로니, 신선한 피자, 패스티(Pasty), 식용 글루텐, 오토밀, 교자용 파스타묵음, 국수, 라면, 면류, 버미첼리(Vermicelli), 영양파스타, 피자, 빈대떡, 인스턴트 중국식 국수, 타블레(Tabbouleh), 만두피, 볶은 옥수수,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식용 오토밀, 콘플레이크, 키쉬(Quiches), 건조된 밀글루텐, 곡분제 식품, 라비올리(Ravioli), 묽게 탄 옥수수, 조리되지 않은 스파게티, 카넬로니, 건조된 파스타, 곡물수프, 곡분제품, 소면국수, 신선한 파스타, 조리되지 않은 마카로니, 토스트, 도시

락밥, 밀기울, 식용 곡분제 페이스트, 요리되지 않은 당면, 인스턴트 우동, 쿠스  
 쿠스(Couscous), 베이킹파우더, 메주, 이스트엑기스, 누룩, 베이킹 소다[요리용  
 중탄산소다], 비의료용 이스트정제, 이스트파우더, 효모, 식용 이스트엑기스,  
 식품용 이스트, 페이스트용 효소, 식용 맥아, 식용 맥아엑기스, 감초과자, 막대  
 형 감초과자, 식용 캔디, 양갱, 파테, 과일빙과, 과일젤리과자, 디저트용 푸딩,  
 케이크의 식용장식품, 누가(Nougat), 눈깔사탕, 식빵용 가루반죽, 타트(Tarts),  
 아이스크림, 약과, 와플(Waffles), 인스턴트 도넛믹스, 캐러멜캔디, 과자, 생강  
 빵, 쇼트브레드, 스프링 롤(Spring rolls), 식빵, 잼빵, 참기름으로 만들어진 사  
 탕과자, 초콜릿바, 콩이 들어있는 빵, 크림빵, 퍼프드라이스, 햄버거용 빵, 건  
 빵, 도넛, 둥근 빵, 롤리팝, 비의료용 추잉껌, 아몬드과자, 카스텔라빵, 통밀가  
 루빵, 페티볼(Petit-beurre)비스킷, 핫케이크, 캔디, 바바로아, 건(乾)과자, 과  
 자용 가루, 냉동 요구르트{얼음과자}, 슈크림, 식용 웨이퍼스, 카스타드, 태피(T  
 affy), 단팥빵, 롤빵, 마지팬(Marzipan), 무발효빵, 사탕과자[캔디], 설탕입힌  
 단단한 캐러멜, 설탕입힌 커피콩, 속이 채워진 초콜릿, 아몬드케이크, 젤리과  
 자, 코코아캔디, 팬케이크, 호떡, 고기파이, 다식, 드롭스, 땅콩과자, 모나카용  
 페이스트리 껍질, 버터비스킷, 봉봉과자, 사탕조림, 콘칩, 쿠키, 페티스포(Petit  
 s fours), 편강, 할바(Halvah), 과일케이크, 마시멜로, 셔벗, 식용 빙과용 파우  
 더, 케이크페이스트, 토르티야(Tortillas), 팝콘, 맥아비스킷, 빙과용 셔벗, 산  
 자, 웨이퍼스, 초콜릿, 크레이프, 크리스마스트리장식용 과자, 러스크(Rusk),  
 로젠지과자, 머핀, 비스킷, 빵가루, 아이스크림 콘, 전과, 초콜릿캔디, 케이크,  
 케이크반죽, 아이스크림용 파우더, 옛, 크래커, 프랄린(Pralines), 빵, 강정, 껌,  
 마카롱(Macaroons), 식용 과일빙과, 쌀푸딩, 아이스캔디[얼음사탕], 아이스케  
 이크, 인스턴트 푸딩믹스, 파이, 패스틸(Pastilles), 페이스트리(Pastries), 푸  
 딕, 박하사탕과자, 아이스크림믹스, 인스턴트 팬케이크 믹스, 초콜릿페이스트,  
 풍당(과자), 설탕, 분말엿, 과당(果糖), 굵은 정백당, 봉밀, 식용 포도당, 식용  
 당(糖)류, 꿀, 맥아당, 백설탕, 식용 봉랍(蜂蠟), 당밀시럽, 각설탕, 대용꿀, 분  
 말물엿, 골덴시럽, 물엿,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식용 당밀, 천연감미료, 떡,  
 장(醬)류, 청국장, 자장, 간장, 된장, 춘장, 고추장, 핵산조미료, 글루타민산소  
 다, 복합화학조미료, 화학조미료, 샐러드소스, 토마토소스, 식초, 샐러드드레싱,  
 조미용 소스, 프렌치드레싱, 마리네이드, 소스, 조미료용 소스, 케첩, 마요네즈,

맥아식초, 향을 낸 식초, 과일향미료, 보존처리된 재배허브(향신료),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겨자가루, 깨소금, 바닐라대용 바닐린, 산초가루(향신료), 스타아니스 열매(향신료), 그레이비(Gravies), 생강(향신료), 양념용 수프, 조미료용 잡초, 커피향미료, 아몬드향미료, 차우차우(향신료), 처트니(Chutneys), 치즈용 향미료, 버섯가루(향신료), 식탁용 깨소금, 정향(丁香)가루, 후추, 아니스열매(향신료), 케이크용 향미료, 고춧가루, 과자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생강가루(향신료), 수프용 향미료, 정향(丁香), 바닐라(향신료), 향미료(정유는 제외), 계피가루, 후추가루(향신료), 버터용 향미료, 제빵용 양념, 과자용 박하, 마늘가루, 올스파이스(Allspice), 향신료, 겨자(향신료), 계피(향신료), 사프론(Saffron), 식품용 향료, 육계가루, 냉이가루, 식품향미료용 과일페이스트, 카레페이스트, 펠리쉬(향신료), 식용 심황(향신료), 식품용 에센스(정유는 제외), 카레가루, 향미료용 바닐라, 너츠멕[육두구], 차용 향미료, 샬러리(Celery)소금, 식용 소금, 식품보존용 소금, 맛소금, 요리용 해수, 요리용 소금, 인삼차, 비약제용 우려낸 즙, 홍차, 오가피차, 라임차, 차(茶), 보리차, 아이스티, 오롱차, 과일차, 녹차, 샬비어잎차, 석창포차, 구기자차, 대용차, 맥엽차, 차의 잎, 원기차, 밀크커피음료, 커피, 코코아, 커피대용품용 식물조제품, 코코아음료, 커피음료, 볶은 커피콩, 우유함유 초코렛음료, 밀크코코아음료, 무카페인 커피, 인스턴트 커피, 치커리(커피대용품), 가공된 커피, 밀크초콜릿, 대용커피, 코코아제품, 분말 커피콩, 천연커피원두, 인조커피, 코코아스프레드, 초콜릿음료,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음식물용 얼음, 천연 또는 인공얼음, 식용 얼음, 얼음, 얼음조각, 생크림용 안정제, 가정용 식육연화제, 식용빙과용 응고제, 소시지용 결착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요리용 농화제, 휘핑크림용 안정제

-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미가공 두류,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보리, 생잠두콩, 미가공 기장, 미가공 수수, 미가공 꽃가루[미가공 화분], 로커스트콩(신선한 것), 생렌즈콩, 미가공 곡물, 강낭콩, 배아, 미가공 귀리, 생완두콩, 미가공 조, 생콩, 생옥수수, 생팥, 호밀, 미가공 벼, 미가공 참깨, 벼, 미가공 들깨, 미가공 피, 부추(신선한 것), 생버섯, 치커리뿌리(신선한 것), 호박(신선한 것), 생감자, 신선한 재배허브, 대황[신선한 것], 상치(신선한 것), 오이(신선한 것), 신선한 송로버섯, 신선한 양파, 신선한 채소, 샬러드용 치커리(신선한 것), 식용 뿌리채소(신선한 것), 사탕수수찌꺼기, 신선한 사탕무, 사탕무, 사탕수수,

코프라(Copra),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동물용 식품, 사료용 콩가루, 애완동물용 먹이, 사료용 곡물, 사료용 어분(魚粉), 가금용 빵은 밀, 가축용 평지씨끼끼기, 고양이사료, 동물사료용 녹말덩어리, 동물용 씹는 과자[동물용 추], 배합사료, 보조사료, 사료용 곡물부산물, 사료용 증류찌꺼기, 새먹이용 오징어뼈, 가축비육용 삶은 사료, 개사육용 사료, 동물사료용 간장찌꺼기, 동물사료용 향미료, 비의료용 동물사료용 영양첨가제, 비의료용 사료첨가물, 사료용 싸라기, 애완동물용 사료, 가축사료, 동물사료용 천연버, 애완동물용 음료, 대두박(大豆粕) 사료, 비육용 사료, 새먹이, 단미사료, 사료용 아마부스러기, 사료, 동물용 땅콩가루, 사료용 단백질, 사료용 증류잔재물, 가축용 비육제, 가축용 소금, 동물용 효모, 사료용 깻묵, 맥주찌꺼기, 합성동물사료, 가금산란용 조합제, 금붕어사료, 동물용 비육제, 동물용 음료, 마초(말먹이), 사료용 겨, 사료용 밀짚, 사료용 알가로빌라(Algarovilla), 생선찌꺼기사료, 개사료용 비스킷, 개용 소화가능한 씹는 뼈, 사료용 포도찌꺼기, 쌀겨사료, 강화사료, 동물용 땅콩찌꺼기, 사료향미제, 양어사료, 혼합동물사료, 가축용 옥수수찌꺼기, 사료용 밀기울, 동물용 곡물가루, 사료용 건초, 사료용 석회, 종자(種子), 농산용 구근(球根), 묘종(苗種), 우루쉬나무 종자, 버섯균사, 미가공 곡물종자, 사과나무 종자, 솔방울, 꽃종자, 구근(球根), 원예용 구근(球根), 원예용 종자, 채유용(採油用) 종자, 식물종자, 식물육성용 배종(胚種), 종자류, 곡물종자, 꽃구근, 농작물종자, 파종용종자, 과일 및 채소용 종자, 과일종자, 농업용 종자 및 균사, 풀 종자, 포도(신선한 것), 신선한 과일, 키위프루트(Kiwifruit), 생밤, 수박(신선한 것), 오렌지(신선한 것), 노간주나무열매(신선한 것), 신선한 페이조아(Feijoa), 레몬(신선한 것), 잣(신선한 것), 파인애플(신선한 것), 생올리브, 자두(신선한 것), 감귤(신선한 것), 신선한 식용 소과실(berries), 신선한 과실, 개암(신선한 것), 생포도, 아몬드(신선한 것), 올리브(신선한 것), 콜라열매(신선한 것), 자몽(신선한 것), 참외(신선한 것), 호두(신선한 것), 앵두(신선한 것), 은행(신선한 것), 파파야(신선한 것), 코코넛(신선한 것), 견과(신선한 것), 생화(生花), 종려나무, 묘목, 살아있는 장미나무, 살아있는 후추나무, 나무, 사람 또는 동물용 잡초, 모, 포도나무, 살아있는 식물, 살아있는 잔디, 풀, 관목, 분재,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장미나무, 목초, 췌기풀, 천연잔디, 홉(Hops), 홉열매, 미가공 코코아원두, 부화용 수정란, 살아있는 엽조수(獵鳥獸), 살아있는 새, 사육용 가금, 살아있는 조(鳥)류, 살아있는 병아리, 동물원동물, 살아있는 가금, 살아있는 짐

승, 살아있는 가축, 사육용 동물, 살아있는 동물, 산란용 암탉, 사육용 가축, 종축용 가축, 살아있는 지렁이, 살아있는 굼벵이, 살아있는 벌레,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홍합, 생 갈치, 생 미꾸라지, 생 붕어, 생 새우, 살아있는 바다가재, 생 가오리, 생 광어, 생 굴조개, 생 대합, 생 뱀뱀이, 살아있는 잉어, 생 넙치, 생 농어, 살아있는 갑각류, 살아있는 가재, 살아있는 대합, 생 병어, 생 상어, 생 성게, 생보리멸, 생 고래, 생 콩치, 생 대구, 생 돔, 생 문어, 살아있는 어패류, 살아있는 왕바다가재, 생 가자미, 생 녹새치, 살아있는 굴, 살아있는 대구, 생 낙지, 생 방어, 생 복어, 생 볼락, 살아있는 해삼, 생 멸치, 생 굴, 생 도미, 생 바지락조개, 생 뱀장어, 어란(魚卵){살아있는 것}, 생 자라, 생 고등어, 생 삼치, 생 어란(魚卵), 생 은어, 살아있는 붕장어, 살아있는 조개, 생 가물치, 생 게, 활어(活魚), 신선한 해초,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신선한 것), 신선한 꼬시레기, 신선한 톳, 신선한 클로렐라, 신선한 파래, 신선한 다시마, 신선한 우뚝가사리, 신선한 미역, 신선한 청각, 신선한 감태, 신선한 김, 신선한 모자반,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애완동물용 향처리 모래, 깔집용 토탄, 깔집용 애완동물 모래종이, 깔집용 애완동물 향처리 모래, 뿌리뿔개용 짚, 깔짚, 식물보온용 짚, 동물용 깔짚, 나무줄기, 제재전(製材前) 목재, 껍질벗긴 목재, 통나무, 코코넛껍질, 미가공 나무껍질, 야자나무의 잎, 미가공 코르크, 종려나무잎, 나무펠프제조용 나무 조각,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낚시용 떡밥,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드라이플라워, 장식용 건조식물, 생화(生花) 화환, 드라이플라워, 혼상용 생화화환, 누에씨, 잠종(蠶種), 누에알, 누에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레몬스쿼시, 음료용 인삼엑기스, 사과주스음료,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용 시럽, 사이다, 크바스(비알콜음료), 땅콩즙음료, 오렌지주스, 음료용 과실액(果實液), 비알콜성 과일 넥타, 음료용 과실분말, 진저에일(Ginger ale), 비알콜성 아페리티프(Aperitif s), 셀처탄산수(Seltzer water), 음료용 셔벗, 음료용 시럽, 발포성 음료용 정제, 비알콜성 과일엑기스, 음료용 과실시럽, 음료제조용 에센스, 밀감수, 비알콜카테일음료, 아몬드즙음료, 탄산수, 과일주스, 냉동과일음료,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음료용 사르사파릴라(Sarsaparilla),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발포성 음료용 분말, 아몬드시럽, 유장(乳漿)음료, 인삼주스(음료), 과라나음료, 파인애플주스, 포도액, 발포성 음료용 재료, 소다음료, 음료용 인삼분말, 소다수, 청량음료,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비알콜성 사과즙, 비알콜성 음료, 사

과주스, 아이소토닉음료, 콜라시럽, 포도주스, 감주(음료), 과일맛음료, 음료수 제조제, 탄산수제조제, 토마토주스, 토마토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리튬염수, 무탄산수, 광천수 제조제, 광천수, 생수, 음료용 물, 음료용 광천수, 음료용 샘물, 식탁용 미네랄워터, 에일(맥주), 맥아즙, 리큐르제조제, 합성맥주, 라거비어, 스타우트, 유사맥주, 맥주, 진저비어, 맥주용 맥아즙, 맥아맥주, 흑맥주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청주, 쌀로 빚은 술, 법주, 합성청주, 인삼주, 약주, 탁주, 소주, 사과주, 막포도주, 머루주, 식탁용 포도주, 커피주, 큐라소(Curacao), 매실주, 와인쿨러, 각테일, 딸기주, 알콜에센스, 배술, 브랜디(brandy), 포도주, 아니스(Anise) 술, 알콜성 과일엑기스, 증류주, 버찌주, 아니스 리큐어, 알콜엑기스, 유자주, 스위트와인, 알콜함유 과일음료, 베르뭇, 보드카, 발포성 포도주, 비터즈(Bitters), 아페리티프(Aperitifs) 술, 리큐어(Liqueurs), 발포성 과실주, 아라크(Arak) 술, 위스키, 진(Gin), 샴페인, 아페리티프(Aperitifs), 우유함유 알콜각테일, 천연발포성 포도주, 럼주, 압상트, 독사주, 약용주(藥用酒), 벌꿀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고량주, 중국식 백주, 박하주, 노주(老酒), 보명주(保命酒), 약미주, 호골주, 오가피주, 송엽주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행물광고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문출판업, 광고물 제작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배포업, 광고물작성업, 광고물출판 및 업데이팅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배너광고업, 신문잡지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웹사이트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이동전화를 이용한 광고업, 인터넷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광고배포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통신매체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판촉대행업, 약제 판매대행업, 호텔경영지원업, 사진복사업, 가격비교서비스업, 사업관리업, 상품 및 서비스업 라이선싱의 상업적 관리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가공한 곡물/곡물가공식품 소매업, 가공한 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 소매업, 가방/지갑 판매알선업, 겂옷/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판매대행업, 귀금속제 기념컵/귀금속제 기념패/주화/구리토큰 소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보석제 액세서리 소매업, 그림물감 소매업, 낚시바구니/낚시의자 소매업, 낚시용 떡밥/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소매업, 냉동한 과실 소매업, 냉동한 두류 소매업, 냉동한 채소 소매업, 도자기 판매대행업, 도정(搗精)한 곡물/식용 곡분/식용 전분 소매

업, 두류가공식품(두부/두부가공식품은 제외)/보존처리한 두류 소매업, 두부/두부가공식품 소매업, 떡류 소매업, 모자 소매업, 목도리/넥타이/술/스카프/방한용귀마개/양말/스타킹/발싸개/방한용 장갑/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소매업, 목주 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살아있는 벌레 소매업,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소매업, 살아있는 어패류 소매업, 살아있는 짐승/살아있는 조류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벌레가공식품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소매업, 서화 소매업, 소주/약주/청주/인삼주/법주/탁주 소매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대행업, 식용 소금 소매업, 식용란/난가공식품 소매업, 식용유지/유지가공식품 소매업, 식육 도매업, 식육 판매대행업, 식품향미용 정유 소매업, 신발 판매대행업, 신선한 과일 소매업, 신선한 채소 소매업, 신선한 해초 소매업, 약기 판매대행업, 안경 판매대행업,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애완동물용 쿠션/애완동물용 침대 소매업,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 소매업, 액자 소매업, 완구 판매대행업, 요리용 채소주스 소매업, 분유 소매업,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소매업, 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기저귀/종이제 티받이 소매업, 자전거 판매대행업, 전자응용기기/컴퓨터 소프트웨어/전자관 소매업, 종이용지 소매업, 침구 판매알선업, 커피/코코아 판매알선업, 한복 판매대행업, 향료 소매업, 향신료 소매업, 화장품 구매대행서비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사무처리업,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복사업, 워드프로세싱 및 타이핑업, 워드프로세싱업, 경매서비스업, 연예인매니저업,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인터넷을 통한 의류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팬티/브라 판매대행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네일아트업, 대중목욕탕업, 마사지업, 문신업, 미용상담업,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발마사지업, 분장사의 서비스업, 사우나서비스업, 손톱미용업, 안마소업, 안마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이미용업, 이용업, 인공선텐업, 일광욕서비스업, 입욕시설제공업, 증기탕업, 지압업, 한증막업, 헬쓰스파서비스업, 화장(化粧)상담업, 화장(化粧)서비스업, 꽃꽂이업, 동물손질업, 물물교환소개업, 심리검사업, 심리학자의 서비스업, 안경사의 서비스업, 애완동물 목욕탕업, 애완동물 미용상담업, 애완동물 미용실업, 애완동물손질업, 잔디관리업, 정원 또는 화단관리업, 정원디자인업, 조경디자인업, 조경업, 화환제작업. 끝.



상 표 판 례  
(통권 제45호)

---

발 행 : 특허심판원

발행일 : 2016년 12월

편 찬 :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 481-8207

Fax : (042) 472-3474

---

ISSN 1975-3446